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2011. 11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머 리 말

보험산업은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실적도 부진한 상태에 있다. 국내 보험회사 해외법인 등의 총자산은 약 8억 달러에 그쳤고, 2010년 총수입보험료 대비 해외매출 비중은 0.22%에 불과하였다. 프랑스 AXA, 일본 동경해상 등은 전세계 50여 개 나라에 진출하였고 해외사업 비중은 20~70%에 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 인디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통계의 확보가 필수적이고, 규제, 문화, 관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에 대해 준비해 오지 못한 면이 있어서 정보 부족에 기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정보,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보는 획득하는 것이 어려운데다가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규제와 관례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본 자료는 최근 보험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해외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시장 현황 및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여 정보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험회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범위 및 방법 / 16

II. 보험시장 분석 / 20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 20
2. 성장성 프로파일 / 34

III.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 59

1. 인디아 / 59
2. 말레이시아 / 68
3. 인도네시아 / 71
4. 태국 / 73
5. 베트남 / 76

IV. 보험규제 현황 / 80

1. 인디아 / 80
2. 말레이시아 / 104
3. 인도네시아 / 127
4. 태국 / 143
5. 베트남 / 170

V. 결론 및 향후 과제 / 189

1. 결론 / 189
2. 향후 과제 / 193

| 참고문헌 | / 194

■ 표 차례

- 〈표 II-1〉 대륙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 / 21
- 〈표 II-2〉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 / 25
- 〈표 II-3〉 2009년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 28
- 〈표 II-4〉 아세안 주요국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 29
- 〈표 II-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 / 32
- 〈표 II-6〉 2009년 공·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 35
- 〈표 II-7〉 인디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 36
- 〈표 II-8〉 인디아 손해보험의 종목별 시장점유율 / 37
- 〈표 II-9〉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 38
- 〈표 II-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 39
- 〈표 II-1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 39
- 〈표 II-12〉 생명보험 신계약 내역 / 41
- 〈표 II-13〉 생명보험 유지계약 내역 / 41
- 〈표 II-14〉 손해보험 종목별 순보험료 / 42
- 〈표 II-15〉 손해보험 재보험산업 보험료 현황 / 43
- 〈표 II-16〉 인도네시아 2008년 국내·해외합작회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 44
- 〈표 II-17〉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자산현황(생명보험) / 45
- 〈표 II-18〉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투자현황(생명보험) / 46
- 〈표 II-19〉 인도네시아 보험종목별 손해보험료 현황 / 47
- 〈표 II-20〉 인도네시아 생명·손해보험 자산현황 / 48
- 〈표 II-21〉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 48
- 〈표 II-2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 49
- 〈표 II-23〉 태국 생명보험 종목별 실적 / 50
- 〈표 II-24〉 보험마스터플랜상의 태국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51
- 〈표 II-25〉 태국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 52
- 〈표 II-26〉 태국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 / 53
- 〈표 II-27〉 베트남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 추이 / 55
- 〈표 II-28〉 베트남 개인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 56
- 〈표 II-2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 56

■ 표 차례

- 〈표 Ⅱ-30〉 베트남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 57
- 〈표 Ⅱ-31〉 베트남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원수보험료 / 58
- 〈표 Ⅱ-32〉 베트남 손해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 58
- 〈표 Ⅲ-1〉 2010년 인디아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특징 / 61
- 〈표 Ⅲ-2〉 2010년 인디아 기타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특징 / 62
- 〈표 Ⅲ-3〉 2010년 인디아 국영손해보험회사의 주요 특징 / 65
- 〈표 Ⅲ-4〉 2010년 인디아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특징 / 66
- 〈표 Ⅲ-5〉 말레이시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 69
- 〈표 Ⅲ-6〉 말레이시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 70
- 〈표 Ⅲ-7〉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생명보험) / 72
- 〈표 Ⅲ-8〉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손해보험) / 73
- 〈표 Ⅲ-9〉 태국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주 현황 / 74
- 〈표 Ⅲ-10〉 태국 해외합작투자 손해보험회사 및 외국사 지점 / 75
- 〈표 Ⅲ-11〉 생명보험 주요 진출현황 및 주요 특징 / 77
- 〈표 Ⅲ-12〉 손해보험 주요 진출현황 및 주요 특징 / 78
- 〈표 Ⅳ-1〉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조건 / 91
- 〈표 Ⅳ-2〉 인디아 투자비율 규제 / 101
- 〈표 Ⅳ-3〉 말레이시아 개인소득 과세율 / 125
- 〈표 Ⅳ-4〉 인도네시아의 보험업에 관한 기타규정 / 128
- 〈표 Ⅳ-5〉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 131
- 〈표 Ⅳ-6〉 인도네시아의 특약재보험 납입규정 / 133
- 〈표 Ⅳ-7〉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자산투자에 관한 제한사항 / 133
- 〈표 Ⅳ-8〉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구성 / 144
- 〈표 Ⅳ-9〉 태국 예금자 보호한도의 단계적 축소 계획 / 163
- 〈표 Ⅳ-10〉 태국 보험회사의 투자유형별 투자한도 / 167
- 〈표 Ⅴ-1〉 아세안 주요국의 진입 매력도 평가 / 190
- 〈표 Ⅴ-2〉 아세안 주요국의 진입 현황 / 192

■ 그림 차례

- 〈그림 Ⅱ-1〉 생명보험밀도 추이 / 33
- 〈그림 Ⅱ-2〉 생명보험침투도 추이 / 33
- 〈그림 Ⅱ-3〉 손해보험밀도 추이 / 33
- 〈그림 Ⅱ-4〉 손해보험침투도 추이 / 33
- 〈그림 Ⅱ-5〉 베트남 보험회사 수 추이 / 54
- 〈그림 Ⅳ-1〉 말레이시아 금융감독체계 / 105
- 〈그림 Ⅳ-2〉 보험감독원 구성 / 171
- 〈그림 Ⅳ-3〉 보험회사 설립인가 절차 / 175
- 〈그림 Ⅳ-4〉 보험회사 사무소 설립인가 절차 / 175

A Study of Insurance Regulation In Asian Countries

Korean insurance industry has not been active in starting business abroad and the performance from foreign business has been low so far. Recently, the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is increasing especially in Asian countries such as Thai, Vietnam, and India. For insurance business, it is essential to obtain relevant statistics for pricing to make insurance products and it is also required to deeply understand the on-going convention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culture behind them. However, Korean insurance industry did not prepare with the time enough to have sufficient information for business abroad and consequently has difficulties in start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The information on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on Asian countries, is hard to come by and the regulation and convention in those countries change so rapid that the study on these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in continuing basis. This study intends to help those insurance companies that plan to enter foreign markets but have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foreign business by providing current market and regulatory situation of insurance industries in major Asian countries. We hope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on business abroad to Korean insurance companies and help them succeed in do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요 약

I. 서론

-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은 유럽, 북미, 일본은 물론 신흥국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적 또한 부진한 상태에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신흥국 중에서도 전문성이나 코리아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선정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시장은 보험시장 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보험산업의 침체 현상은 아프리카(-11.1%), 오세아니아(-9.6%), 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남.
 - 반면에 많은 신흥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5.8%, 아시아에서는 2.8%의 실질성장을 기록함.
- 본 보고서는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의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러니와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당국가의 진출시 해당국에 대한 이해를 도와 성과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 진출대상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 보험산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knowledge)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
 - 해당국가의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근의 규제 동향은 어떠한지를 병행해서 조사하여 향후 진출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보험시장 분석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 현재의 성장성

■ 세계의 2009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40,661억 USD로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줄어들었으나 아시아는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3,315억 USD로 전년에 비해 2.0%, 손해보험은 17,345억 USD로 0.1% 실질적으로 감소하였음(〈요약 표 1〉 참조).
- 생명보험은 오세아니아(-19.4%), 아프리카(-15.0%), 북미(-13.5%)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난 반면에 남미(5.8%), 유럽(3.5%), 아시아(1.8%)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음.
- 손해보험은 북미(-1.5%)와 유럽(-1.2%)에서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아시아(5.6%), 남미(4.3%), 오세아니아(2.9%)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음.

■ 아세안 주요국 중 인디아(20.3%), 인도네시아(11.9%), 태국(6.3%)의 생명보험이 최근 5년간 실질적으로 성장하였음.

- 인디아는 저축성보험의 확대, 인도네시아는 해외합작회사의 시장점유확대와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 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은 빠른 경제성장(평균 9.0%)에 기인함.

■ 아세안 주요국 중 베트남(12.7%), 인디아(5.7%), 태국(2.8%)의 손해보험이 최근 5년간 높은 실질성장률을 보였음.

- 베트남 손해보험의 성장은 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부문의 성장, 태국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 신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인디아의 경우 민영화에 기인함.

〈요약 표 1〉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 성장률

(단위: 억 USD, %)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보험료 (2009)	실질성장률
한국	574.4	3.0	345.3	10.4	919.6	5.4
인디아	571.1	20.3	79.7	5.7	650.8	18.0
말레이시아	56.8	0.6	31.6	2.4	88.4	1.2
인도네시아	50.6	11.9	22.2	-1.6	72.8	6.3
태국	62.1	6.3	42.3	2.8	104.6	4.7
베트남	6.7	-1.5	7.7	12.7	14.4	4.8

〈요약 표 2〉 아세안 주요국의 성장배경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인디아	• 1999년 민영보험 허용 • 경제성장 • 저축성보험이 급성장 - 보장성보험, 전문가, 데이터 부족 - 금융위기로 변액보험이 저축성으로 집중	• 1999년 민영보험 허용 • 경제성장
인도네시아	• 해외합작회사 적극적 진입 • 방카슈랑스 허용(2003년)	• 해외투자 적극 유치
태국	• 미국, 일본의 투자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9% • 활발한 상품개발 • 보험료 세제혜택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마스터플랜 추진	• 경제성장 • 신상품 개발 활발 • 방카슈랑스 확대 • 자동차 산업 발전
베트남	n. a.	• 경제개방으로 교역 규모 확대 • 방카슈랑스 확대 • 자동차 산업 발전

나. 잠재성장성

-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잠재시장 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인디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7.2%, 도로포장률은 47.0%, 인도네시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11.1%, 도로포장률은 55.0%에 불과해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기업환경이 우리나라의 15위에 훨씬 못 미치는 135위와 115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나라들은 특정 전략지역 혹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태국은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각각 1.5배, 1.8배가량 크고 GDP도 우리나라의 35% 수준이므로 잠재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0.0%, 도로포장률은 99.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16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진입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국토 면적이 커서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GDP가 우리나라의 10.4% 수준에 불과하여 보험산업의 잠재성장성은 높다고 할 수 없음.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1% 정도로 이 지표로 볼 때 상호교류가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88위에 머무르고 있어 기업환경개선의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는 인구와 GDP 기준으로 볼 때 잠재성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음.

-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55.7%, 도로포장률은 78.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환경지수는 23위로 양호한 편임.

〈요약 표 3〉 2009년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지역/국가	인구(백만 명)	면적(km ²)	GDP(USD, bn)	기업환경지수
한국	48.7	221,336	882	15
인디아	1,198.0	3,287,590	1,255	135
말레이시아	27.5	329,750	199	23
인도네시아	230.0	1,919,440	541	115
태국	67.8	514,000	264	16
베트남	88.1	329,560	92	88

자료: 1) Swiss Re(2010), Sigma No. 3/2010.

2)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의 보험밀도는 인디아(30.2%), 인도네시아(25.4%), 태국(13.8%), 베트남(10.0%)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여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침투도는 인디아(18.7%), 인도네시아(6.3%), 태국(5.2%)이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손해보험밀도 증가율은 태국(18.3%), 베트남(16.6%), 인도네시아(13.0%), 인디아(11.4%)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음.

- 손해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4.6%)이 우리나라(6.3%)와 함께 양(+)의 성장을 달성하였고, 다른 나라들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요약 표 4〉 보험밀도 및 침투도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한국	0.1	-3.3	9.8	6.3	3.1	-0.3
인디아	30.2	18.7	11.4	-0.4	26.7	15.4
말레이시아	4.1	-3.3	4.1	-3.4	4.1	-3.9
인도네시아	25.4	6.3	13.0	-12.3	16.1	-1.5
태국	13.8	5.2	18.3	-0.3	11.7	2.8
베트남	10.0	-7.5	18.6	4.6	12.7	-0.2

주: 1) 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침투도=수입보험료/GDP.

2) 괄호 안은 증가율이고, 평균은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Swiss Re, Sigma, 각 연도.

2. 성장성 프로파일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진입매력도: 상 - 규모 급성장 - 높은 잠재성 - 국영보험 대비 MS 확대 - 높은 외국기업 자산규모 증가율 - 경쟁도 증가 추세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주춤 - 낮은 잠재성 - 국영보험 종목별 분리과정에서 마찰 - 경쟁도 증가 추세	- 다양한 문화와 언어 • 낮은 기업환경지수 등급 • 전문가, 통계 부족 • 외국인 투자제한: 26%
말레이시아	- 진입매력도: 하 - 낮은 규모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강화	- 진입매력도: 중 - 낮은 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하강	- 다양한 인종과 종교 • 세계 혜택 •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70% •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인도네시아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성장성 - 높은 해외합작회사 자산규모 증가율 - 해외합작회사가 주도	- 진입매력도: 하 - 규모성장세 하락 - 낮은 잠재성장성 - 생명보험보다 자산비중 감소 - 국내회사가 주도	- 외국기업의 생명보험에 대한 활발한 투자 • 외국기업은 보험사와 합작 형태만 가능 • 외국기업의 지분한도: 80%
태국	- 진입매력도: 상 - 미국, 일본의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상: 9% - 활발한 상품개발 - 보험료 세계혜택 - 보험마스터플랜 추진	- 진입매력도: 상 - 경제성장 - 신상품 개발 활발 - 자동차 산업 발전	• 해외기업 유치에 적극적 • 해외기업의 지분소유 한도: 25%에서 49%로 확대 • 방카슈랑스 확대
베트남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변동 심함 - 생명보험 저변 확대 - 경제에서 비중 감소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력	•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장 • 비합작 외국기업 진입 가능 • 외국기업에 대한 세계 혜택

Ⅲ.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1개의 국영생명보험 • 22개의 회사 중 20개가 해외 합작회사 • 인디아 회사는 은행, 자동차, 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업, 철강, 화학, 통신 등 다양한 업종 회사가 보험에 진출 • 은행의 보험영업 조건이 까다로움	• 6개의 국영손해보험사 • 18개의 회사 중 17개가 해외 합작회사 • 인디아의 다양한 업종 회사가 보험산업에 진출	• 1999년 민영보험사 허용 • 모두 주식회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외국기업의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투자한도 완화를 추진 중
말레이시아	• 8개 외국사 • 미쓰이, 프루덴셜, AIG, AmLife 등이 진출	• 15개 외국사 • 일본제회사가 3개사 • 미국제회사가 3개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해외회사의 투자제한 완화에 따라 진입증가 추세 • 재보험사도 해외합작 회사 형태로 진입 • Swiss Re는 재타카폴 진입
인도네시아	• 45개사 중 18개사가 해외합작사 • 해외합작사가 50.1% 시장 점유	• 5개사 • 일본제가 2개사	• 글로벌 보험사가 진출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태국	• 24개사 중 13개사가 해외합작사 • 10위 내 해외합작사가 7개	• 5개 해외보험사 지점 • 13개 해외합작회사 • 25개 해외기업 간접 참여	• 해외기업유치에 적극적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베트남	• 삼성생명, 대한생명 (현지법인) • 해외합작사가 우세 • 100% 해외지분사가 9개사	• 삼성화재(현지법인), LIG, 현대해상이 진출 • 내국사가 우세	• 민영화 추세 • 100% 해외기업의 투자 허용 • 서울보증보험이 진출

IV. 보험규제 현황

1. 인디아

■ 감독은 영국의 「보통법」, 1950년 「헌법」, 1999년 「보험감독원법」에 근거함.

○ 보험감독원

- 재무부 산하, 조세와 수수료, 80여명 직원
- 인가, 가입자 보호, 보험중개인 관리, 보험전문기관 관리, 재무건전성 규제

○ 보험정보원

- 보험감독원의 업무를 지원
- 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

○ 의료보험감독부서

- 보험감독원의 별도의 부서
- 2010년 현재 자율규제기구 형태로 독립을 논의 중

○ 퇴직연금감독원

- 2003년 「재무부장관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
- 2005년 「퇴직연금감독원법」을 의회에 제출
- 데이터 관리, 퇴직연금운영자 관리, 건전성 기준, 투자 기준, 연금펀드 매니저 기준, 가입자 보호

■ 면허

○ 주식회사만 허용

- 생·손보, 의료보험이 별도의 면허 필요
- 지주회사는 생·손보, 의료보험 포함 가능

■ 재무건전성

- 원수사 최소요구 자본량: USD 22M, 재보사 USD 44M
- 정부소유 생보공단(LIC): USD 1.1M에서 USD 22M로 개정 추진 중
- 사업비율 제한: 규정은 19.5%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러나 대부분 20%를 초과하고 있어 완화를 요청 중
 - 제재규정 없으나 규정준수를 권고
- 솔벤시 마진
 -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
 - 요구 솔벤시 마진을: 1.5%

■ 투자

- 보험사의 투자를 제한
 - 공채: 25% 이상
 - 공채 혹은 승인유가증권: 50% 이상
 - 승인된 투자 그리고 다른 투자: 35%를 넘지 못함.
 - 기간산업투자: 15% 이상

■ 소비자보호

- 상품
 - 소비자 혼동 최소화: 보장범위, 보장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설명
 - 불만구제절차에 대해서 증권에 명시(옴부즈만, 관할법원 등)
- 보험감독원 중재
 - 보험감독원은 중재의 권한을 가짐.
 - USD 44,004 이하 분쟁은 옴부즈만 제도를 통하여 해결
- 옴부즈만
 - 1998년에 소비자 불만 신속처리 위해 정부가 설립
 - 옴부즈만은 조정, 지급판정의 권한을 가짐.

- 보험사에 구속력, 소비자는 선택
- 활성화 추세에 있음.

■ 영업규제

○ 보험료 납부 방법

- 인터넷, 전산이체, 자동이체, 은행환어음 등 다양함.
- 보험료 수령 뒤부터 보장 개시
- 납부기간 지연에 대한 그레이스 기간은 관행상 30일

○ 독립대리점 및 회사대리점

- 자격요건 강화 추세
- 생·손보 겸영대리점 허용: 신청서는 보험감독원 홈페이지, 수수료는 250루피
- 독립대리점: 시험통과, 교육이수(독립대리점 100시간, 겸영대리점 150시간)
- 회사대리점: 허용지침 빈번히 변경되고 있고, 은행과 대부업체에 허용
- 중개인의 대리점 이동은 제한적: 이동 시 보험사로부터 비반대증명서를 획득해야 하고, 한 대리점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중개사

- 보수를 목적으로 계약자편에서 보험사와 계약 체결
- 생·손보, 재보 각각 면허 취득
- 자본납입: 원수 중개사(5,000,000루피), 재보험 중개사(20,000,000루피), 겸영 중개사(25,000,000루피)

■ 광고 및 공시

- 모든 매체 광고 허용
- 재무제표, 구체적 재정상태 공시해야 함.
- 감사결과와 공시내용 다를 경우 해명을 의무화함.

■ 외국인규제

- 외국인 투자한도를 26%로 규제하고 있으나, 2010년 현재 49%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
- 외국인 지점을 불허하고, 합작만이 가능
- 기타규제는 내국사와 동일하나 계약자의 펀드 해외유출을 금지하고 있음.

■ 특별계정

- 변액보험 가입자 보호 강화 추세
- 수수료 한도: 총수익과 순수익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규제
- 고착화전략(lock-in period)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모든 변액상품은 사망보장을 의무화
- 대출을 금지함.

■ 조세

- 위험보험료의 10.3%(서비스세 10%, 교육세 0.3%)를 보험사에 부과
- 서비스세 예외: 자영여성에 대한 상해보험
- 법인세: 소득의 30%, 외국사는 40%, 법인세의 3%를 교육세로 납부
- 총소득이 USD 220,022 이상인 경우 내국사는 7.5%, 외국사는 2.5%의 추가적인 조세 부과

2. 태국

■ 주요 법률로는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법들이 존재함.

- 「민상법」,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 「예금자보호기구법」, 「자동차 사고 피해자보호법」, 「생산물배상책임법」, 「적립기금법」, 「증권거래법」 등
- 생명보험은 금융투자업이나 금융업의 일부를 겸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법」이나 「금융기관법」 등의 적용을 받기도 함.

■ 금융감독체계는 분야별 감독기관(모두 재무부 산하기관)을 별도로 설치함.

- 은행업: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OT: Bank of Thailand)
- 금융투자업: 증권거래위원회(SEC)
- 보험업: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 보험산업은 보험위원회(OIC)의 창설과 더불어 일련의 개혁을 추진함.

- 태국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확대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 25% → 49%, 외국인 이사의 수: 25% → 50%)
- 2008년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보험회사의 상장 의무화
- 기업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허가 절차 간소화

■ 면허

-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재보험업의 3가지로 구분
- 1992년 「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생·손보 겸영 금지
- 태국 내에서의 재보험인수에 대해서는 면허 불필요
-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인수

■ 재무건전성

- 자본 및 지급능력 요건과 상장요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강화
-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월말보고서의 보고를 의무화
- 신설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상향 조정
- RBC 제도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 예금자보호

- 은행은 예금보호기금,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발전기금, 보험회사는 생명/손해보험기금을 운용
- 보험기금의 재원은 주로 보험회사의 분담금(생보 0.5%, 손보 1% 범위 내)

■ 광고 및 공시

-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재무제표, 자본현황표, 주요 금융지표 등
-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의 비율 등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수,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계약에 관한 정보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보험산업은 계리적인 데이터와 인문사회적인 정보가 많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 주요국에 비교해서 유·무형자산 소유(Ownership)의 우위(Advantage)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진출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보험료 및 자산 규모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유의 우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보험산업은 수출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의해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확보하면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므로 각국의 진입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어느 형태의 직접투자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진출대상국 내의 외국보험회사의 특징과 투자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직접투자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국가마다 외국회사의 자국투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 보험영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조사하였음.

- 각국은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었고,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었음.
-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투자지분한도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정책들을 통해 해외기업의 자국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향후 과제

■ 진출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위해서 규제, 정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고,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함.

■ 보험산업은 상품개발에 필요한 계리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개척의 선결 조건이므로 데이터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것임.

■ 아세안 리스크의 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아세안 리스크에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사업 리스크(Business Risk), 구조적 리스크(Structural Risk) 등이 있을 수 있음.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외지향적인 발전정책으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개척이 필수적이다. 1900년대에는 구미 일의 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해왔다고 본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흥국의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신흥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그동안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들은 신흥국의 진출에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은 유럽, 북미, 일본은 물론 신흥국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고, 실적 또한 부진한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유럽, 북미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자산규모나 전문성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진출하여 개척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신흥국 중에서도 지리적 여건이나 코리아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선정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세안 시장은 보험시장 규모나 성장률 면에서 볼 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비해 해당 국가의 보험산업에 대한 정보 및 이해(knowledge)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충분한 정보의 확보와 이해는 시장진출 및 마케팅 전략 구상을 위한 선행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의 성장성 평가는 물론이러니와 보

험산업에 대한 규제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당국가의 진출 시 해당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더불어, 해당국가의 외국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내용은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보고 외국보험회사의 진출현황을 파악하여 진출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규제 동향은 어떠한지를 병행해서 조사하여 향후 진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가. 연구범위

전통적인 다국적기업(Multinationals)과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관한 이론은 수출과 직접투자 같은 해외진출의 동인을 OLI(Dunning 1977)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OLI는 소유(Ownership), 위치(Location), 내부화(Internalization)에 의한 우위(advantage)를 의미한다.

소유우위(Ownership advantage)란 기업고유(firm-specific)의 유·무형 자산의 소유로 인해 그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갖게 되는 우위를 말한다. 해외진출에는 매몰비용(sunk cost)이 따른다. 매몰비용을 감내할 만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진출을 한다. 생산성이 높더라도 매몰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가 없다면 해외진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매몰비용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지지만 국제경쟁력을 가진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을 모색한다(Helpman, Melitz, Yeaple 2004).

매몰비용의 감내능력이나 보험전문성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형보험회사는 아세안 주요국에 대해서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대상 국가를 아세안 주요 진출대상국(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에 국한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의 확보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

이 되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위치우위(Location advantage)란 기업이 판매나 생산 활동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위를 뜻한다. 즉, 판매나 생산 활동의 위치만 변경함으로써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위치의 우위는 해외 소비자에 대한 접근에서 오는 우위인 수평적 우위(horizontal FDI advantage)와 국내보다 낮은 해외 생산비용에서 오는 우위인 수직적 우위(vertical FDI advantage)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이며, 수직적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 같은 낮은 생산비용을 이용하여 부품생산 현지공장을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위치우위에 관해서는 제조업에 적합하고 보험·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 관련성이 적어 연구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란 해외진출의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 수출이나 면허대여 같은 국경 간(cross-border) 무역 또는 서비스 형태보다 지점 또는 자회사 형식의 직접투자에 의한 직영(in-house) 방식을 취하면 우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 방식에는 현지에 지점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초원(greenfield) 방식과 현지법인 인수합병(cross-border M&A) 방식이 있다. 현지법인 인수합병의 경우 비용절감이나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synergy) 효과와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를 통해 산업 내 경쟁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strategic)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구의 범위에 일반적인 보험산업의 현황 조사와 성장잠재력 평가를 포함하여 진출대상국에 대해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진입 규제내용과 진입 후 영업활동에 요구되는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고자 한다. 실제 진입 및 영업규제 내용을 제시하여 보험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진출대상국 내의 외국보험회사의 특징과 투자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써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직접투자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규제관행에 대한 조사 연구는 제외한다. 규정상으로 알 수 없는 규제 및 거래 관행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아세안 주요국에 진입할 경우 전략 마련에 필요한 사항 및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집중적인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구환경상 어려움이 많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나. 연구방법

직접투자의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3단계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시장 규모 및 성장성의 평가이다. 현재까지의 성장 정도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먼저 현재의 시장 규모 및 잠재 시장 규모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얻을 수 있어서 진입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진출대상국의 잠재시장 규모가 작다면 진출해야 할 유인이 작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은 진출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의 과거성장도 및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성장이 부진했다면 그 시장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제도적 혹은 문화적인 장애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미래의 보험산업 성장가능성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인구와 면적이 클수록 성장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당 수입보험료인 보험밀도와 소득에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보험침투도를 이용하여 향후 보험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험밀도와 침투도가 낮은 수준에 있으나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면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험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즉, 보험밀도의 증가율이 양(+)의 값을 취한다는 것은 보험료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과 저변확대가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침투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의 증가보다도 보험료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 해당 나라에서 보험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밀도 및 침투도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잠재성장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진입 효율성의 평가 단계이다. 진입 대상국의 사업 환경을 평가하고 상대적 진입비용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자유무역협약(FTA)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사업 환경의 용이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인 'Doing Business' 순위가 높을수록 진입의 효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환경으로 해당국가의 보험산업 규제내용 및 해외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내용은 중요한 변수이다. 해외회사들에게 요구하는 수수료나 투자제한 등은 진입에 따른 효율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단계는 종합적 평가의 단계이다. 대상국의 잠재시장 규모나 진입효율성을 평가하여 진출여부 및 진출대상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종합적 평가를 통하여 진출 전략을 구상해 보는 단계이다. 이상의 방법은 거점(Gateway) 국가 혹은 진출대상 국가를 정성적으로 선정하고 계량적으로 평가해 보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단계에 걸친 직접투자의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을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최근 다수의 신흥국 정부들은 자국어는 물론 영어로 자국의 보험산업 실적현황 및 규제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때로는 자국어로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워 각종 국제기구의 홈페이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현장감 있는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금융감독원 및 기존 진출회사의 연락망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문헌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규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보험시장 분석

1.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가. 현재의 성장성

국가 간 교역이나 투자의 대상국을 선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시장 규모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장정도 및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진출대상국의 시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시장의 과거 성장도 및 미래의 성장가능성이 높을수록 진입 매력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현재의 규모 및 성장성을 다루고 이어서 잠재성장성을 다루고자 한다.

1) 대륙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성

2009년에 세계 보험산업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듯하다. 세계의 2009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1.1% 줄어들었다. 생명보험은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 2.0%, 손해보험은 0.1% 감소하였다(〈표 Ⅱ-1〉 참조).

대륙별로 보면 보험산업의 침체현상은 아프리카(-11.1%), 오세아니아(-9.6%), 북미(-7.1%)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많은 신흥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남미에서는 5.8%, 아시아에서는 2.8%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가) 생명보험

〈표 II-1〉 대륙별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¹⁾

(단위: 억 USD, %)

대륙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전세계	'09	23,315	-2.0(-4.4)	17,345	-0.1(-2.6)	40,661	-1.1(-3.7)
	'08	24,368	-5.8(-0.3)	17,814	-0.6(5.8)	42,181	-3.7(2.2)
	'07	24,431	n.a.	16,831	n.a.	41,262	n.a.
유럽	'09	9,535	3.5(-4.3)	6,571	-1.2(-7.1)	16,106	1.8(-5.5)
	'08	9,959	-15.8(-10.6)	7,070	0.2(8.9)	17,030	-9.9(-3.4)
	'07	11,143	n.a.	6,490	n.a.	17,634	n.a.
북미	'09	5,360	-13.5(-14.2)	7,026	-1.5(-2.3)	12,386	-7.1(-7.9)
	'08	6,250	-3.5(-0.1)	7,189	-3.0(0.7)	13,439	-3.2(0.4)
	'07	6,246	n.a.	7,141	n.a.	13,386	n.a.
남미	'09	436	7.8(4.3)	673	4.3(4.4)	1,109	5.8(4.3)
	'08	340	6.8(14.2)	660	8.8(20.6)	1,059	8.0(18.1)
	'07	350	n.a.	547	n.a.	897	n.a.
오세 아니아	'09	336	-19.4(-23.5)	336	2.9(-2.9)	672	-9.6(-14.4)
	'08	439	17.4(22.3)	346	-0.3(3.1)	785	-3.7(13.0)
	'07	359	n.a.	336	n.a.	695	n.a.
아프리카	'09	326	-15.0(-10.3)	167	0.4(1.1)	493	-11.1(-6.7)
	'08	363	0.9(-3.7)	167	4.4(7.1)	503	1.8(-0.6)
	'07	377	n.a.	156	n.a.	533	n.a.
아시아	'09	7,322	1.8(5.2)	2,572	5.6(7.9)	9,895	2.8(5.9)
	'08	6,956	7.8(16.8)	2,381	2.2(10.2)	9,337	6.3(15.0)
	'07	5,956	n.a.	2,161	n.a.	8,117	n.a.

주: 1) Calendar Year 2009년 실적임.

2) 괄호 안은 명목성장률임.

자료: Swiss Re, Sigma No. 3/2010.

대륙별 생명보험산업은 오세아니아(-19.4%), 아프리카(-15.0%), 북미(-13.5%)에서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표 II-1〉 참조). 반면에 남미(7.8%), 유럽(3.5%), 아시아(1.8%)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진입대상 대륙을 선정한다면 남미, 유럽, 아시아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통화가치의 상승에 기인한 면이 커서 유럽시장 자체가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나) 손해보험

대륙별 손해보험산업은 북미(-1.5%)와 유럽(-1.2%)에서 음(-)의 성장을 보인 반면에, 아시아(5.6%), 남미(4.3%), 오세아니아(2.9%)는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2009년의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진입대상 대륙을 선정한다면 아시아와 남미, 유럽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남미(8.0%), 아시아(6.3%), 아프리카(1.8%)의 보험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였고 여타의 대륙은 음(-)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우는 2009년에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진입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진출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진입의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남미와 아시아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와 남미는 진출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륙 간 비교이므로 규모는 의미가 없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성

가)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인디아(20.3%), 인도네시아(11.9%), 태국(6.3%)이 실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 태국(4.8%)이 실질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대상국 모두가 고전했지만 2009년에 태국(14.9%), 인도네시아(10.6%), 인디아(10.1%)가 높은 성장률을 보여 위기극복능력을 보여 주었다. 실

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해당산업의 위기극복 능력 면에서 볼 때 진출대상국으로 고려할 수 있다(〈표 II-2〉 참조).

인디아의 생명보험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저축성보험의 확대에 기인한다. 1999년에 이르러서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 허용¹⁾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업에 관한 전문가와 적절한 상품모델, 계리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계리적 데이터를 비교적 얻기 쉽고, 상품개발이 용이한 저축성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감독정책의 변화도 저축성보험의 활성화를 부추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액보험(ULIP: Unit-Linked Plans)이 주식시장의 성장에 따라 잠재적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시장에서 대중적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의 최근 변동성은 보험회사가 판매한 변액보험상품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염려는 순수투자형 상품으로부터 이탈하여 예금과 저축성 상품으로 이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변액보험 수수료에 대한 한도를 부과하려고 함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고 전통적 저축성 상품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생명보험이 성장한 주된 원인으로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진 해외합작회사(joint venture)의 시장점유 확대와 망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에서 상위 10개 회사의 시장점유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해외합작회사이다. 해외합작회사는 큰 자본규모, 강력한 정보력, 높은 기술수준을 통해 생명보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규정²⁾에 따라 2003년부터 보험회사가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 외에도 보험회사들이 금융고객의 은행업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혁신은 생명보험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1) IRDA(1999).

2) Decree No.426/KMK 06/2003.

태국의 경우 수출 지향적 산업정책과 일본·미국의 투자 증대에 힘입은 빠른 경제성장(평균 9.0%)이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을 견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 보험료 수입과세의 경감액 증가 등 보험 산업 환경의 개선도 빠른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마스터플랜 및 보험마스터플랜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보험제도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도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험종목별로는 단체보험종목과 의료보험종목이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다.

나)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최근 5년간 베트남(12.7%), 인디아(5.7%), 태국(2.8%)이 높은 실질성장률을 보였다.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 베트남(8.3%), 태국(1.3%)이 실질 성장을 기록한 것 외에는 조사대상국 모두가 고전했지만, 2009년에 베트남(17.0%), 태국(14.9%)이 위기극복능력을 보여 주었다.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고 해당산업의 위기극복능력 면에서 볼 때 베트남과 태국이 진입매력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표 II-2〉 참조).

베트남의 손해보험 성장은 주로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개방과 아울러 베트남 경제 전체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는 성장세가 뒤쳐져 있다. 2005~07년 사이의 고성장에 비해 2008~09년에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장성을 기준으로 진입매력이 있지만 그 정도는 줄어든고 있는 것이다. 1999년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보험감독원법(IRDA)」이 제정되기 전에는 4개의 자회사(New India, United India, Oriental, National)를 둔 정부소유의 국영손해보험회사(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가 유일한 손해보험회사였다. 「보험감독원법(IRDA 1999)」의 제정으로 국영손해보험회사

<표 II-2> 아세안 주요국의 수입보험료 규모 및 실질성장률¹⁾

(단위: 억 USD, %)

지역/국가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보험료	실질성장률
한국 ²⁾	'09	574.4	-5.8(-5.2)	345.3	14.2(14.9)	919.6	0.8(1.5)
	'08	605.8	-6.4(-24.7)	300.5	6.6(-14.2)	906.2	-2.5(-21.5)
	'07	804.4	10.2(15.4)	350.2	11.1(16.3)	1,154.6	10.5(15.7)
	'06	702.7	5.7(15.8)	303.4	13.5(16.0)	1,006.1	8.0(18.2)
	'05	606.8	11.3(25.1)	244.1	6.8(9.8)	850.9	10.1(23.8)
	평균	-	3.0(5.3)	-	10.4(8.6)	-	5.4(7.6)
인디아 ²⁾	'09	571.1	10.1(18.4)	79.7	1.6(9.2)	650.8	9.0(17.2)
	'08	482.3	1.0(-3.7)	73.0	-1.6(-6.2)	555.3	0.6(-4.1)
	'07	501.9	24.4(48.4)	76.0	3.2(23.1)	577.8	21.2(44.6)
	'06	358.7	44.4(49.7)	57.3	14.6(21.2)	416.0	39.4(44.5)
	'05	225.5	21.7(28.8)	48.3	10.9(15.6)	274.2	19.9(26.9)
	평균	-	20.3(28.3)	-	5.7(12.6)	-	18.0(25.8)
말레이시아	'09	56.8	-1.4(-3.2)	31.6	1.3(-0.5)	88.4	-0.4(-2.3)
	'08	58.7	0.0(3.8)	31.8	2.6(6.5)	90.4	0.9(4.7)
	'07	56.5	0.1(7.9)	29.8	1.6(9.5)	86.3	0.6(8.5)
	'06	49.3	1.6(9.6)	26.8	-0.4(3.2)	76.2	0.9(9.1)
	'05	44.9	2.6(6.6)	24.9	6.7(10.0)	69.8	4.1(8.1)
	평균	-	0.6(4.9)	-	2.4(5.7)	-	1.2(5.6)
인도네시아	'09	50.6	10.6(7.7)	22.2	3.6(0.9)	72.8	8.4(5.5)
	'08	47.1	-4.4(-0.5)	22.0	-4.4(-0.5)	69.0	-4.4(-0.5)
	'07	47.3	35.5(44.8)	22.1	-0.7(6.0)	69.4	21.4(29.7)
	'06	28.2	10.5(32.4)	20.3	-11.1(0.5)	48.5	0.3(20.2)
	'05	21.3	7.2(9.0)	19.0	4.4(15.3)	40.4	5.8(7.7)
	평균	-	11.9(18.7)	-	-1.6(4.4)	-	6.3(12.5)
태국	'09	62.1	14.9(9.4)	42.3	3.2(-1.7)	104.6	9.8(4.6)
	'08	56.8	4.8(14.5)	43.2	1.3(10.7)	100.0	3.2(12.8)
	'07	49.1	3.7(16.3)	38.6	3.5(16.2)	87.7	3.6(16.2)
	'06	38.9	-0.6(10.5)	32.4	1.9(6.6)	71.3	0.5(11.7)
	'05	35.2	8.6(13.6)	28.6	3.9(8.6)	63.8	6.4(11.3)
	평균	-	6.3(12.9)	-	2.8(8.1)	-	4.7(11.3)
베트남	'09	6.7	8.6(6.2)	7.7	17.0(14.5)	14.4	12.9(10.5)
	'08	6.3	-11.3(7.9)	6.7	8.3(31.7)	13.0	-2.2(19.0)
	'07	5.9	2.3(10.2)	5.1	18.1(27.3)	11.0	9.2(17.7)
	'06	5.2	-4.1(2.1)	4.2	11.7(20.0)	9.4	2.4(9.0)
	'05	5.1	-2.8(4.5)	3.5	8.3(17.3)	8.6	1.5(9.1)
	평균	-	-1.5(6.2)	-	12.7(22.2)	-	4.8(13.1)

주: 1) Calendar Year 2009년 실적임.

2) Financial Year 2009~10년 실적임.

3) 괄호 안은 명목성장률임.

자료: Swiss Re(각 연도), Sigma.

(GIC)는 2003년 보유한 모든 지분을 4개의 자회사들에게 이양을 완료하였다. 4개의 자회사들은 정부소유이지만 국영손해보험회사(GIC)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국영손해보험회사(GIC)는 재보험에 집중하게 되었다.³⁾

국영손해보험회사(GIC)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민영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가와 데이터의 부족으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태국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신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외에도 자동차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은 전체 손해보험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 산업경제청(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은 향후에도 자동차산업이 가장 빨리 성장할 산업 중의 하나로 예측하고 있어, 이러한 손해보험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음(-)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09년 3.6%의 실질성장을 달성하였다. 위기극복 면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이다.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산업은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하여 성장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증가이다. 2003년 방카슈랑스를 허용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손해보험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잠재성장성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성장정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향후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구와 면

3) 정부 소유인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GIC Re)은 2000년 이후 GIC로부터 독립하여 professional reinsurer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인 재보험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공사보험회사는 원수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재보험료를 GIC Re에 지급해야 한다.

적이 클수록 성장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당 수입보험료인 보험밀도와 소득에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인 침투도가 낮은 수준에 있으나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면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인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잠재성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표 II-3〉 참조). 그러나 인디아와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일 경제단위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디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7.2%, 도로포장률은 47.0%, 인도네시아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11.1%, 도로포장률은 55.0%에 불과해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표 II-4〉 참조). 이러한 내용이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⁴⁾에 반영되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들 국가의 기업환경이 우리나라의 15위에 훨씬 못 미치는 135위(인디아)와 115위(인도네시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은 특정 전략지역 혹은 언어권을 중심으로 시장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태국은 인구와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각각 1.5배, 1.8배가량 큼에도 불구하고 GDP도 우리나라의 35% 수준이어서 잠재성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진출의 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0.0%, 도로포장률은 99.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어 보험산업을 위

4) ① 창업(starting a business), ② 건축 관련 인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③ 재산권등록(Registering Property), ④ 자금조달의 용이성(Getting Credit), ⑤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⑥ 세금납부(Paying Taxes), ⑦ 국제교역(Trading across Borders), ⑧ 채권회수절차(Enforcing Contracts), ⑨ 퇴출절차(Closing a Business). 이상 9가지의 세부항목에 대한 백분위 순위를 기반으로 산술평균을 산출한 후 높은 순서대로 1부터 183까지 순위를 부여한 지수이다.

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환경지수는 16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진입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II-3〉 2009년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 면적, GDP, 기업환경지수

지역/국가	인구(백만 명)	면적(km ²)	GDP(USD, bn)	기업환경지수
한국	48.7	221,336	882	15
인디아	1,198.0	3,287,590	1,255	135
말레이시아	27.5	329,750	199	23
인도네시아	230.0	1,919,440	541	115
태국	67.8	514,000	264	16
베트남	88.1	329,560	92	88

자료: 1) Swiss Re, Sigma No. 3/2010.

2) World Bank(2010), 「Doing Business 2010」.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나 국토 면적이 커서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GDP가 우리나라의 10.4% 수준에 불과하고 기업환경지수가 88위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성장성과 기업환경개선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21.0% 정도로 이 지표로 볼 때 상호교류가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와 GDP 기준으로 볼 때 잠재성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넷이용자 비율은 55.7%, 도로포장률은 78.0% 정도로 상호교류와 접근이 어느 정도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기업환경지수는 23위를 기록하여 기업환경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표 II-4> 아세안 주요국의 주요 사회경제지표

구분	인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종교	힌두/ 이슬람	이슬람/ 불교/힌두교	이슬람	불교	불교
정치형태	연방공화	입헌군주	공화	입헌군주	독재
기대수명(세)	64.9	74.6	68.5	70.5	72.4
가구당 인구수(명)	5.3	4.4	3.5	3.6	2.5
인구 증가율(연평균, %)	1.3	1.7	1.2	0.7	1.2
여성 1인당 출산자녀 수(명)	2.7	2.6	2.2	1.8	2.1
5세 미만 사망자 수(1,000명당, 명)	72.0	11.0	31.0	7.0	15.0
1차 교육이수율(%)	84.0	98.0	105.0	101.0	96.0
1, 2차 교육 받는 학생 중 남성 대비 여성비율(%)	91.0	104.0	98.0	104.0	93.0
농경지율(국토대비, %)	60.6	24.0	26.4	36.4	30.9
도시인구율(%)	29.2	62.1	50.3	32.9	27.5
상수로 보급률(%)	82.0	98.0	77.0	97.0	77.0
도시하수도 보급률(%)	49.0	95.0	69.0	94.0	78.0
연간 GDP 성장률(%)	9.1	6.3	6.3	4.9	8.5
연간 인플레이션률(%)	4.9	5.2	11.3	3.4	8.2
GDP 대비 농업부가가치율(%)	18.0	10.0	14.0	12.0	20.0
GDP 대비 공업부가가치율(%)	30.0	48.0	47.0	46.0	42.0
GDP 대비 서비스업부가가치율(%)	52.0	42.0	39.0	43.0	38.0
총수출 대비 GDP 비율(%)	21.0	110.0	29.0	76.0	77.0
총수입 대비 GDP 비율(%)	25.0	90.0	25.0	68.0	90.0
이동통신 가입률(%)	21.0	88.0	41.0	118.0	28.0
인터넷이용자 비율(%)	7.2	55.7	11.1	20.0	21.0
도로포장률(%)	47.0	78.0	55.0	99.0	n.a.
첨단제품수출 비중	5.0	52.0	11.0	n.a.	n.a.
GDP(십억 달러)	1176.9	186.7	431.9	236.6	68.6
인구(백만 명)	1124.8	26.0	225.6	67.0	85.2
2009년 연소득 10만 달러 인구 수(천 명)	357	97	224	89	41

주: 대부분 2007년 기준임.
 자료: 복득규 et al.(2010)을 재구성함.

2) 보험밀도 및 침투도

보험밀도 및 침투도는 보험산업의 발전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중의 하나이고, 보험밀도 및 침투도의 증가율은 보험산업의 잠재성장성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가) 보험산업 발전수준

아세안 주요국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발전수준은 높지 않은 상태에 있다. 2009년 생명보험밀도는 말레이시아가 206.9 USD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1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침투도는 인디아가 4.6%로 나타나 우리나라(6.5%) 다음으로 높지만 우리나라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표 II-5〉 참조).

2009년 손해보험밀도는 말레이시아가 115 USD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16.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침투도는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1.6%로 나타나 우리나라(3.9%) 다음으로 높지만 우리나라의 4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험밀도 및 침투도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지표를 통해서 잠재성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준의 평가와 병행해서 두 지표의 증가율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장률이 높다면 잠재성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나) 보험산업 잠재성장성

① 생명보험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의 보험밀도는 인디아(30.2%), 인도네시아(25.4%), 태국(13.8%), 베트남(10.0%)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생명

보험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II-1〉 참조).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침투도는 인디아(18.7%), 인도네시아(6.3%), 태국(5.2%)이 양(+)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그림 II-2〉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생명보험산업은 인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순으로 현재의 산업발전 수준은 낮지만 보험의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손해보험

최근 5년간 연평균 손해보험밀도 증가율은 태국(18.3%), 베트남(16.6%), 인도네시아(13.0%), 인디아(11.4%)가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손해보험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국은 보험밀도가 우리나라의 9%, 다른 두 국가는 1%를 밀도는 수준에 있는 반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II-3〉 참조).

손해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4.6%)이 우리나라(6.3%)와 함께 양(+)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다른 나라들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해당나라에서 손해보험산업의 비중이 축소되었다.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GDP)의 정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태국은 최근 2년간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잠재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4〉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대상국의 손해보험산업은 보험밀도의 증가율은 높은 반면 보험침투도 증가율은 베트남을 제외하고 음(-)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므로 저변 확대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변확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경제성장의 정도보다도 보험료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진입매력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국가는 태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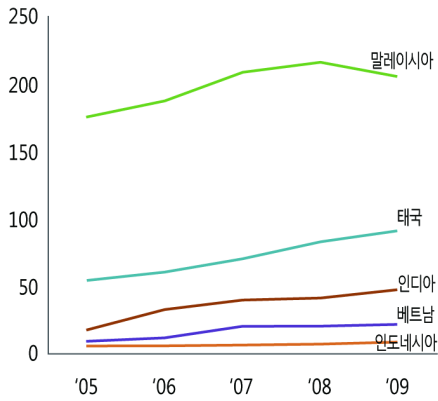
지역/ 국가	연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산업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밀도(USD)	침투도(%)
한국	'09	1,180.6(-5.4)	6.50(-9.8)	709.7(14.7)	3.90(8.9)	1,890.3(1.3)	10.40(-3.6)
	'08	1,247.6(-24.5)	7.21(-11.5)	618.8(-14.0)	3.58(0.8)	1,866.5(-21.3)	10.79(-7.8)
	'07	1,652.3(15.3)	8.15(5.8)	719.3(15.8)	3.55(6.9)	2,371.6(15.1)	11.70(6.2)
	'06	1,433.5(14.8)	7.70(2.3)	621.1(22.6)	3.32(8.5)	2,059.7(17.4)	11.02(4.1)
	'05	1,248.2(-)	7.53(-)	506.8(-)	3.06(-)	1,755.0(-)	10.59(-)
	평균	0.1	-3.3	9.8	6.3	3.1	-0.3
인디아	'09	47.7(15.8)	4.60(15.0)	6.7(8.1)	0.60(0.0)	54.3(14.6)	5.20(13.0)
	'08	41.2(2.0)	4.00(0.0)	6.2(0.0)	0.60(0.0)	47.4(1.7)	4.60(-2.1)
	'07	40.4(21.7)	4.00(-2.4)	6.2(19.2)	0.60(0.0)	46.6(21.4)	4.70(-2.1)
	'06	33.2(81.4)	4.10(62.1)	5.2(18.2)	0.60(-1.6)	38.4(69.2)	4.80(52.9)
	'05	18.3(-)	2.53(-)	4.4(-)	0.61(-)	22.7(-)	3.14(-)
	평균	30.2	18.7	11.4	-0.4	26.7	15.4
말레이 시아	'09	206.9(-4.7)	2.9(3.6)	115.0(-2.1)	1.60(5.3)	321.8(-3.8)	4.4(1.9)
	'08	217.2(3.6)	2.80(-3.8)	117.5(6.2)	1.52(-0.7)	334.6(4.5)	4.32(-2.7)
	'07	209.7(11.0)	2.91(-9.1)	110.6(7.6)	1.53(-12.1)	320.3(9.7)	4.44(-10.1)
	'06	189.0(6.8)	3.20(-3.9)	102.8(4.6)	1.74(-5.9)	291.9(6.0)	4.94(-4.4)
	'05	177.0(-)	3.33(-)	98.3(-)	1.85(-)	275.3(-)	5.17(-)
	평균	4.1	-3.3	4.1	-3.4	4.1	-3.9
인도네 시아	'09	22.0(6.3)	0.90(-2.2)	9.6(-45.8)	0.40(-7.0)	31.7(4.3)	1.30(-3.0)
	'08	20.7(1.5)	0.92(-15.6)	17.7(86.3)	0.43(-15.7)	30.4(1.3)	1.34(-16.3)
	'07	20.4(65.9)	1.09(41.6)	9.5(6.7)	0.51(-8.9)	30.0(41.5)	1.60(20.3)
	'06	12.3(28.1)	0.77(1.3)	8.9(4.7)	0.56(-17.6)	21.2(17.1)	1.33(-7.0)
	'05	9.6(-)	0.76(-)	8.5(-)	0.68(-)	18.1(-)	1.43(-)
	평균	25.4	6.3	13.0	-12.3	16.1	-1.5
태국	'09	91.7(10.0)	2.40(16.5)	62.7(-42.6)	1.6(2.6)	154.4(5.2)	4.0(10.5)
	'08	83.4(17.8)	2.06(12.0)	109.3(85.6)	1.56(2.0)	146.8(13.2)	3.62(7.4)
	'07	70.8(15.5)	1.84(-2.1)	58.9(15.3)	1.53(-2.5)	129.7(15.5)	3.37(-2.3)
	'06	61.3(12.1)	1.88(-5.5)	51.1(14.8)	1.57(-3.1)	112.3(13.1)	3.45(-4.4)
	'05	54.7(-)	1.99(-)	44.5(-)	1.62(-)	99.3(-)	3.61(-)
	평균	13.8	5.2	18.3	-0.3	11.7	2.8
베트남	'09	8.7(19.2)	0.70(0.0)	7.6(-1.3)	0.80(8.1)	16.4(9.3)	1.60(11.1)
	'08	7.3(12.3)	0.70(-12.5)	7.7(30.5)	0.74(1.4)	15.0(21.0)	1.44(-5.9)
	'07	6.5(8.3)	0.80(-5.9)	5.9(20.4)	0.73(5.8)	12.4(13.8)	1.53(-0.6)
	'06	6.0(0.0)	0.85(-11.5)	4.9(16.7)	0.69(3.0)	10.9(6.9)	1.54(-5.5)
	'05	6.0(-)	0.96(-)	4.2(-)	0.67(-)	10.2(-)	1.63(-)
	평균	10.0	-7.5	16.6	4.6	12.7	-0.2

주: 1) 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침투도=수입보험료/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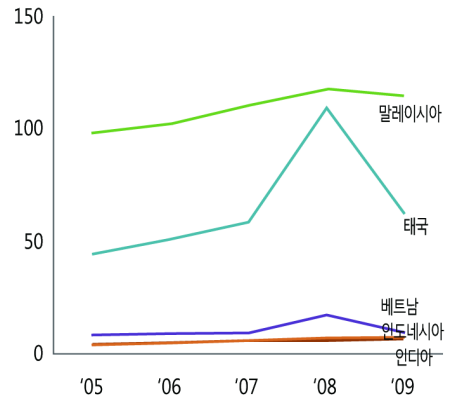
2) 괄호 안은 증가율이고, 평균은 증가율의 평균임.

자료: Swiss Re(각 연도), Sig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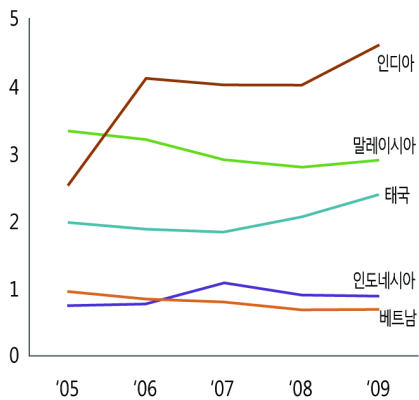
〈그림 II-1〉 생명보험밀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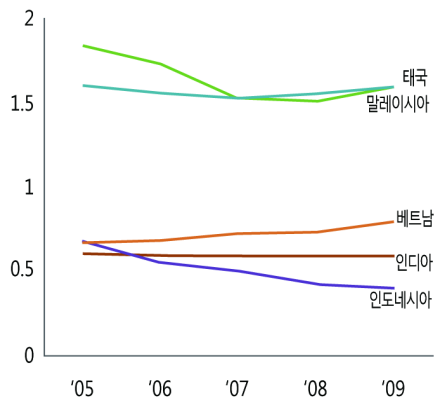
〈그림 II-2〉 생명보험침투도 추이



〈그림 II-3〉 손해보험밀도 추이



〈그림 II-4〉 손해보험침투도 추이



2. 성장성 프로파일

가. 인디아

인디아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20.3%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는 성장세가 뒤쳐져 있고 최근 2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인디아의 생명보험밀도는 낮은 수준에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30.2%의 증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인디아가 18.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진입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음(-)의 성장을 기록하여 손해보험의 성장이 경제성장(GDP)의 정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디아 생명보험시장의 진입 매력도는 높은 반면, 손해보험의 매력도는 생명보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해보험은 종목별 분석을 통하여 성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존재하고 기업환경지수가 낮은 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본다.

1) 생명보험 성장성

가) 공·사 생명보험 성장성

인디아의 생명보험시장이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디아에는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와 민영생명보험회사가 있다. 1999년 민영생명

보험의 영업이 허용된 이후에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⁵⁾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민영생명보험회사들이 잠식해가고 있다. 2009년 민영생명보험회사는 수입보험료 규모가 전체의 29.1%이지만 신계약(new business production)은 38.9%를 점유하여 급속도로 생명보험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II-6〉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6〉 2009년 공·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단위: USD, INR, bn)

회사	수입보험료			초회보험료		
	INR	USD	%	INR	USD	%
LIC	1,572.9	32.49	70.9	531.79	10.98	61.1
민영보험회사	645.0	13.32	29.1	338.27	6.99	38.9
합계	2,217.9	45.82	100.0	870.06	17.97	100.0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재구성함.

나)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인디아에서 자산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국영생명보험회사(LIC)이다. 다음으로 민영생명보험회사인 ICICI Prudential Life가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규모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모든 보험회사가 자산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에 전년 대비 자산증가율이 국영생명보험회사(LIC)의 경우는 8.3%에 그쳤지만 ICICI Prudential Life는 16.8%에 이른다. 나머지 회사는 자산 증가율이 모두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II-7〉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한편, 2010년 8월 국영생명보험회사(LIC)에 따르면 2009~10년 초회보험료 실적은 14,77bn USD(INR 708,91bn)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하였다. 총보험료는 전년도 32,49bn USD(INR 1,572,88bn)로부터 38,75bn USD(INR 1,860bn)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II-7〉 인디아 생명보험회사의 자산 규모

(단위: USD, INR mn, %)

회사		2006	2007	2008	2009	2009 증가율
합계	INR	5,602,618	6,789,993	8,776,787	9,761,379	11.2
	USD	123,928	150,193	194,140	215,919	-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LIC)		5,313,903	6,259,569	7,769,049	8,412,729	8.3
ICICI 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95,685	172,926	313,338	366,050	16.8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Company		35,430	67,632	136,287	175,788	29.0
SBI Life Insurance Company		20,987	46,330	100,099	140,247	40.1
HDFC Standard Life Insurance Company		29,991	54,419	97,522	117,130	20.1
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6,346	17,207	50,358	86,196	71.1
Birla Sun Life Insurance Company		28,384	44,335	77,850	107,254	37.8
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13,130	23,179	43,199	67,935	57.3
Tata AIG Life Insurance Company		14,888	25,327	44,645	61,871	38.6
Kotak Mahindra Old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13,025	20,660	33,777	43,041	27.4
Aviva Life Insurance Company India		11,452	21,367	35,612	50,222	41.0
Bharti AXA Life Insurance Company		98	1,942	5,394	10,745	99.2
Future Generali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	-	1,858	6,195	233.4
IDBI Fortis Life Insurance		-	-	2,105	7,515	257.0
ING Vysya Life Insurance Company		10,899	17,943	28,779	36,969	28.5
MetLife India Insurance Company		5,214	12,227	27,181	44,451	63.5
Shriram Life Insurance Company		1,274	2,592	5,423	7,421	36.8
Canara HSBC Oriental bank of Commerce Life Insurance Company		-	-	-	7,701	-
AEGON Religare Life Insurance Company		-	-	-	3,206	-
DLF Pramerica Life Insurance		-	-	-	1,397	-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		-	-	-	1,893	-
Sahara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1,912	2,338	4,311	5,423	25.8
IndiaFirst Life Insurance Company		-	-	-	-	-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http://www.irda.gov.in>).

2) 손해보험 성장성

가) 보험종목별 성장성

인디아의 손해보험시장 진출매력도는 침투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음(-)의 침투도 성장을 보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종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민영의료보험시장은 진출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보험종목은 2008~09년 43.9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다(〈표Ⅱ-8〉 참조). 자동차보험은 2009~10년 12.83%(2008~09년: 5.13%)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2008~09년 20.0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다. 의료보험은 2009~10년 20.09%가 성장하여 손해보험에서 시장점유율이 21.12%로 상승하였다.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어 진입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Ⅱ-8〉 인디아 손해보험의 종목별 시장점유율

종목	2008~09	2009~10
화재	11.14	11.18
해상	6.44	6.26
자동차	43.94	43.46
의료	20.06	21.12
기타	18.41	17.98
계	100.00	100.00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를 재구성함.⁶⁾

6)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http://www.irda.gov.in>).

나)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인디아의 손해보험산업은 실질적으로 음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수입보험료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자산의 경우도 2007년에 4.3%의 성장에 그쳐 실질적으로 음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표 II-9〉 참조). 인디아에서 손해보험 산업은 성장이 주춤하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II-9〉 손해보험회사의 자산현황

구분	2005~06	2006~07	증가율(%)
투자	570	587	3.0
대출	23	21	-8.7
고정자산	5	6	20.0
Deferred tax assets	8	6	-25.0
현금 및 은행잔고	65	76	17.0
Advances and other assets	65	72	10.8
총자산(INR, bn)	736	767	4.3
총자산(USD, bn)	16.24	16.95	-

자료: IRDA Annual Report(2008).

3) 집중도

국영생명보험회사(LIC)를 포함한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9년의 경우 상위 5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88%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산업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영보험회사의 진입과 활발한 영업 활동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표 II-10〉 참조). 민영생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국영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한 손해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7년의 경우 상위 5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77.2%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산업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의 영향 등으로 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표 II-11〉 참조).

〈표 II-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상위 5개사(%)	92	95	94	91	88
상위 10개사(%)	98	99	98	98	97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를 재구성함.

〈표 II-11〉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위 5개사(%)	89.4	84.4	79.9	81.4	77.2
상위 10개사(%)	98.5	96.3	95.2	95.3	98.0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를 재구성함.

나. 말레이시아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의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앞의 〈표 II-5〉에서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9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경제규모에서 보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다가 2009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보아도 공통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으로 말레이시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보험산업의 비중이 어떻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생명보험 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2008년까지는 연 평균 7%대의 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1인당 보험료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약간 낮은 1인당 보험료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최근 5년간 보험시장의 규모나 성장률로만 평가한 말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입 매력도는 다른 아세안 비교대상국에 비해 높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수입보험료 규모로 본 산업의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존재하고 다른 문화에 수용도가 높아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며, 특히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면에서 진입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생명보험 성장성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은 2008년까지 꾸준히 신계약건수가 증가하여 158만 건을 넘어섰으나 2009년 들어 계약건수가 감소하여 140만 건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계약 연납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009년에 급증하여 9억 달러(32억 링깃)를 넘었으나, 신계약 일시납보험료는 2007년까지 증가하여 14억 달러(52억 링깃)를 넘어선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약 13억 링깃(43억 링깃)에 그치고 있다. 연납과 일시납을 더하여 계산된 총보험료는 2008년에 일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연납보험료의 급증에 힘입어 증가하여 22억 달러(75억 링깃)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계약의 경우 계약건수 및 보험료가 모두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185만 건에 51억 달러(173억 링깃)를 넘어섰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말레이시아 생명보험시장에서 일시납 신계약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연납 신계약과 유지계약의 경우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2〉 생명보험 신계약 내역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계약건수	보험금액	보험료		
			연납보험료	일시납보험료	총보험료
2005	1,365,037 (-)	47,672.8 (-)	550.4 (-)	1,213.2 (-)	1,763.5 (-)
2006	1,303,727 (-4.5)	49,319.2 (3.5)	570.1 (3.6)	1,319.6 (8.8)	1,889.6 (7.2)
2007	1,337,514 (2.6)	50,426.7 (2.2)	645.9 (13.3)	1,421.4 (7.7)	2,067.3 (9.4)
2008	1,585,846 (18.6)	63,682.2 (26.3)	738.3 (14.3)	1,364.9 (-4.0)	2,103.1 (1.7)
2009	1,403,562 (-11.5)	69,874.3 (9.7)	954.7 (29.3)	1,278.0 (-6.4)	2,232.8 (6.2)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표 II-13〉 생명보험 유지계약 내역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계약건수	보험금액	연납보험료
2005	10,144,771 (-)	169,551 (-)	3,239 (-)
2006	10,534,525 (3.8)	248,787 (46.7)	3,516 (8.6)
2007	10,909,842 (3.6)	196,915 (-20.8)	3,962 (12.7)
2008	11,522,202 (5.6)	224,208 (13.9)	4,490 (13.3)
2009	11,850,981 (2.9)	242,784 (8.3)	5,154 (14.8)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2) 손해보험 성장성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9년 수입보험료가 27억 달러(93억 링깃)를 상회하고 있지만, 각 보험종목별로 보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상, 항공 및 운송보험, 기술 및 종합보험, 산재보험 등은 2008년까지 성장하다가 2009년에 와서 다소 감소하여 종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손해보험 재보험의 경우 해상 및 운송, 기술 및 종합 등 대부분의 종목에서 2009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은 재보험료가 2009년에 소폭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재보험료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9년도 재보험료 수입은 3억 4500만 달러(11억 6420 린깃)에 이르렀다.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 규모도 유사한 트렌드를 보이며 순보험료는 2009년에 2억 8700만 달러(9억 6800만 린깃)를 상회하였다.

전체적인 말레이시아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시장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말레이시아 보험시장이 외부 경제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4〉 손해보험 종목별 순보험료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99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401.8 (-)	1,987.5 (26.3)	2,049.0 (3.1)	2,230.7 (8.9)	2,611.4 (17.1)	2,775.3 (6.3)
해상항공운송	24.3 (-)	90.1 (18.1)	95.3 (5.8)	109.8 (15.2)	128.0 (16.6)	115.2 (-10.0)
화재	78.5 (-)	319.4 (20.4)	331.1 (3.7)	359.5 (8.6)	410.1 (14.1)	419.9 (2.4)
자동차 전체	205.8 (-)	1,137.3 (30.2)	1,135.1 (-0.2)	1,196.8 (5.4)	1,405.5 (17.4)	1,541.8 (9.7)
자동차 책임	46.1 (-)	130.4 (12.2)	127.6 (-2.2)	143.5 (12.5)	169.1 (17.8)	171.8 (1.6)
자동차기타	159.7 (-)	1,006.8 (35.4)	1,007.5 (0.1)	1,053.3 (4.5)	1,236.4 (17.4)	1,370.0 (10.8)
기술 및 종합	n.a. (-)	53.7 (-)	50.8 (-5.3)	58.7 (15.6)	66.3 (12.9)	67.4 (1.6)
건강 및 상해	n.a. (-)	228.5 (-)	267.7 (17.1)	302.6 (13.0)	374.8 (23.9)	407.4 (8.7)
배상책임	n.a. (-)	37.8 (-)	40.2 (6.5)	47.8 (18.9)	53.0 (10.8)	56.5 (6.6)
산재	n.a. (-)	30.7 (-)	33.4 (8.7)	37.7 (13.0)	41.5 (9.8)	42.0 (1.4)
기타	93.2 (-)	90.1 (-)	95.4 (5.9)	117.8 (23.5)	132.3 (12.3)	125.1 (-5.5)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표 II-15〉 손해보험 재보험산업 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해상/항공/운송		26.4 (-)	31.3 (18.5)	38.2 (22.0)	44.4 (16.2)	50.5 (13.7)
기술/종합		27.2 (-)	25.8 (-5.0)	28.9 (11.8)	37.8 (30.9)	39.4 (4.2)
화재		91.7 (-)	92.2 (0.6)	110.5 (19.8)	128.7 (16.4)	124.7 (-3.1)
건강/상해		14.5 (-)	16.3 (12.3)	16.3 (0.1)	21.9 (34.2)	24.2 (10.9)
운송	사고	5.7 (-)	3.4 (-40.3)	5.6 (66.2)	6.7 (20.2)	7.2 (6.9)
	기타	41.6 (-)	58.3 (40.0)	54.1 (-7.2)	62.2 (14.9)	66.2 (6.5)
	합계	47.3 (-)	61.6 (30.4)	59.7 (-3.1)	68.9 (15.4)	73.4 (6.5)
배상		6.0 (-)	5.3 (-12.5)	5.9 (11.6)	11.7 (99.5)	10.3 (-11.9)
산재		1.4 (-)	1.7 (23.0)	2.0 (17.6)	2.3 (12.5)	2.6 (12.5)
기타		13.0 (-)	15.2 (16.5)	16.3 (7.6)	19.9 (21.8)	20.4 (2.5)
합계		227.5 (-)	249.5 (9.7)	280.8 (12.6)	335.5 (19.5)	345.5 (3.0)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http://www.bnm.gov.my>).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은 최근 5년간 성장률의 평균이 -1.64%를 기록하며 조사대상국 중 가장 침체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생명보험밀도의 최근 5년간 평균은 25.4달러로 인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25.4%의 증가율을 보여 조사대상국 중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잠재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생명보험 침투도는 인도네시아가 6.3%의 증가율을 보이며,

조사대상국 중 인디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의 증가율은 -12.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치로서 진입매력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은 손해보험보다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생명보험 성장성

가) 생명보험 성장성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시장의 잠재성 및 진입매력도의 상대적 우수성은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취급하는 해외합작회사의 높은 활동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45개 사이고, 이 중 18개사가 해외합작회사인데, 그 중 해외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0.1%로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약 2.1%p 증가한 것으로서 해외합작회사의 진출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II-16〉 인도네시아 2008년 국내·해외합작회사 생명보험시장점유율

(단위: 십 억 IDR, USD, %)

순위 ¹⁾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2008)	
	IDR	USD
해외합작회사	25,226,0(50.1) ²⁾	25.4
국내회사	25144,0(49.9)	25.2
합계	50,370(100.0)	50.6

주: 1) 순위는 2008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설정임.

2)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나) 자산현황

인도네시아의 국내회사 및 해외합작회사의 자산보유현황은 <표 II-17>과 같다.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외합작회사의 총자산은 54조 2,573억 루피아(56억 달러)이며, 총자산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과 비교하면 해외합작회사의 자산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회사보다 더 큰 자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17>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자산현황(생명보험)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자산	증가율
국내회사	2.8 (58.9)	11.1	4.2 (50.5)	29.8	5.2 (47.2)	34.5	5.0 (47.0)	-0.2
해외합작회사	2.4 (46.1)	18.2	4.1 (49.5)	48.9	5.8 (52.7)	53.2	5.6 (52.9)	0.7
총자산	5.2 (100.0)	14.2	8.3 (100.0)	38.6	11.0 (100.0)	43.8	10.6 (100.0)	0.3

주: 괄호 안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또한 2008년을 제외하고는 해외합작회사의 자산보유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합작회사의 성장률이 국내회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II-17> 참조). 해외합작회사의 진출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투자 현황

2008년 말 기준으로 해외합작회사의 투자비중은 54.7%로서 국내 회사보다 약 9.5%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II-18> 참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합작회사가 국내회사보다 투자비중이 높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국내회사 및 해외합작회사의 투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증가율은 해외합작회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합작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18〉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투자현황(생명보험)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투자	증가율
국내회사	2.1 (45.8)	16.0	3.4 (46.8)	40.1	4.4 (44.8)	41.2	4.2 (45.3)	-0.1
외자합작회사	2.5 (54.2)	33.4	3.9 (53.2)	34.6	5.5 (55.2)	53.0	5.1 (54.7)	-2.0
총투자	4.6 (100.0)	24.8	7.3 (100.0)	37.1	9.9 (100.0)	47.5	9.3 (100.0)	-1.1

주: 괄호 안은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2) 손해보험 성장성

가) 보험종목별 성장성

인도네시아의 낮은 보험침투도로 미루어보면 손해보험시장의 진출매력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네시아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규모가 가장 큰 보험종목은 2008년 33.6%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재물보험이며, 자동차보험이 30.1%로서 그 뒤를 잇고 있다(〈표 II-19〉 참조).

종목별 시장점유율의 분포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신용보험의 연평균 성장률이 34.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신용보험의 진출매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9〉 인도네시아 보험종목별 손해보험료 현황

(단위: 십 억 USD, IDR, %)

종목	2005		2006		2007		2008	
	IDR	USD	IDR	USD	IDR	USD	IDR	USD
재물	5,410.4 (36.1)	0.5	5,377.5 (34.7)	0.6	6,787.3 (38.5)	0.7	7,388.6 (33.6)	0.8
기술	617.7 (4.1)	0.1	587.6 (3.8)	0.7	608.7 (3.5)	0.1	864.6 (3.9)	0.1
자동차	4,625.0 (30.8)	0.5	5,062.0 (32.6)	0.6	5,397.2 (30.6)	0.6	6,630.0 (30.1)	0.7
책임	306.4 (2.0)	0.1	317.6 (2.0)	0.1	297.8 (1.7)	0.1	326.9 (1.5)	0.1
신용	324.0 (2.2)	0.1	418.4 (2.7)	0.1	518.9 (2.9)	0.1	781.1 (3.5)	0.1
해상 및 운송	3,402.7 (22.7)	0.3	3,616.9 (23.3)	0.4	3,554.0 (20.1)	0.4	4,331.8 (19.7)	0.4
기타	318.8 (2.1)	0.1	125.5 (0.8)	0.1	478.2 (2.7)	0.1	1,684.8 (7.7)	0.2
전체	15,005.0 (100.0)	1.5	15,505.5 (100.0)	1.8	17,642.1 (100.0)	1.9	22,007.8 (100.0)	2.3

주: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Axco(2010), p. 170.

나) 자산현황

인도네시아의 2009년 자산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33.6% 증가한 136조 7,860억 루피아(13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대비 15.0% 증가한 38조 1,288억 루피아(3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자산비중의 추이에 있어서는 생명보험의 자산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손해보험의 자산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진출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최근 5년간 총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4.1%이며, 이 중 생명보험이 26.2%, 손해보험이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높아서 보다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0〉 인도네시아 생명·손해보험 자산현황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생명보험	5,4(72,0)	8,3(74,8)	11,0(78,0)	10,6(75,7)	13,0(78,3)	26,2
손해보험	2,1(28,0)	2,8(25,2)	3,1(22,0)	3,4(24,3)	3,6(21,7)	15,7
계	7,5(100,0)	11,1(100,0)	14,1(100,0)	14,0(100,0)	16,6(100,0)	24,1

주: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Laporan Tahunan 2009 Annual Report.

3) 집중도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8년의 경우 상위 10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71.7%를 차지하고 있어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집중도 추이도 큰 변화가 없는데, 해외합작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생명보험시장에서 해외합작회사의 높은 활동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생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시장의 집중도는 2007년의 경우 상위 10개사가 총수입보험료의 56.4%를 차지하는 등 집중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시장의 집중성은 생명보험시장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대한 자본력과 정보기술력을 가진 해외합작회사보다는 국내회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손해보험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21〉 인도네시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위 5개사(%)	53,4	48,4	52,5	47,4	48,6
상위 10개사(%)	73,9	70,5	71,5	72,6	71,7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표 II-22〉 인도네시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집중도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상위 5개사(%)	40.3	39.3	40.1	40.9	40.0
상위 10개사(%)	59.3	55.5	56.8	57.1	56.4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라. 태국

태국은 사회·경제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보험시장도 규모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2009년 4월과 2010년 4월의 소요사태 및 그로 인한 경기회복의 지체에도 불구하고 강한 보험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회복, 새로운 보험상품의 출시, 방카슈랑스 판매의 증가, 보험료 수입과세의 경감액 증가 등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생명·손해보험시장 모두 태국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보험부문의 개혁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

최근 5개년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6.3%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의 측면에서도 최근 5개년 평균이 각각 11.7%와 2.8% 증가하여 생명보험산업이 태국 내에서 그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진입의 매력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개년 태국 손해보험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8%로 생명보험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느 한 해도 음(-)을 기록하지 않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침투도의 평균 증가율이 -0.3%로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2개년 동안 각각 2.0%와 2.6%의 증가율을 시현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7) Asia Insurance Review(2010)(<http://www.asiainsurancereview.com>).

1) 생명보험 성장성

〈표 II-23〉 태국 생명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1,000 Baht/USD)

구분	2009			2008		
	Baht	USD	비중	Baht	USD	비중
개인 생명보험	214,234,019	6,391,840	82.9%	184,330,495	5,254,216	83.2%
주계약	180,213,730	5,376,818	69.7%	152,852,975	4,356,970	69.0%
상해특약	7,002,663	208,930	2.7%	6,858,793	195,505	3.1%
의료보험특약	21,407,671	638,715	8.3%	19,486,482	555,449	8.8%
기타특약	5,609,955	167,377	2.2%	5,132,245	146,291	2.3%
노동자 생명보험	9,067,343	270,531	3.5%	9,104,360	259,514	4.1%
주계약	9,053,439	270,116	3.5%	9,094,223	259,225	4.1%
특약	13,904	415	0.0%	10,137	289	0.0%
단체 생명보험	30,982,565	924,389	12.0%	24,036,752	685,151	10.8%
주계약	24,900,304	742,920	9.6%	18,260,106	520,492	8.2%
상해특약	1,208,726	36,063	0.5%	1,587,740	45,257	0.7%
의료보험특약	4,848,620	144,662	1.9%	4,161,101	118,609	1.9%
기타특약	24,915	743	0.0%	27,805	793	0.0%
개인 상해보험	4,248,599	126,760	1.6%	4,126,567	117,625	1.9%
계	258,532,526	7,713,521	100.0%	221,598,174	6,316,506	100.0%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최근 5개년 동안 규모면에서 76.4%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 세계 보험시장에서 32번째로 큰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생명보험 종목별로 살펴볼 경우, 2009년도에 개인생명보험(ordinary life)의 실적은 2,142억 바트(64억 달러)로 전체 생명보험의 약 83%를 차지하였고, 단체보험은 310억 바트(9.24억 달러)로 약 1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개인상해보험과 노동자생명보험(industrial life)이 각각 42억 바트(1.27억 달러)와 91억 바트(2.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상해 및 의료보험 담보(주계약 및 특약 합산)는 총 387억 바트(11.55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15.0%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전체 생명보험시장에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

만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보험시장은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최근 5년 동안 두 배나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태국 생명보험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개인보험은 단체보험의 절반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에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개인상해보험은 정체상태를 담보하고 있다. 상해와 후유장해특약을 첨부한 단체정기보험은 피고용자에게 가장 보편적인 보험급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용주들에 의한 개인의료보험의 구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보험마스터플랜(National Insurance Masterplan)에 의해 정하여진 목표에 따라 생명보험산업의 성장률 추정치가 태국생명보험협회에 의해 예측제시되었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실적치는 목표치보다 각각 2.1%와 8.3%가 초과 달성되었다. 향후 전망치도 마스터플랜상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24〉 보험마스터플랜상의 태국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연도	태국 바트(THB bn)	미국 달러(USD bn)
2011	288.9	8.9
2010	262.6	8.1
2009	238.7	7.4
2008	217.0	6.7

자료: TLAA(태국생명보험협회).

2) 손해보험 성장성

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보험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1998년과 1999년의 2년 동안 손실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전의 폐쇄된 산업의 개혁이 앞당겨지

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0년도 이후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09년 손해보험실적을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59.5%로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상해·의료보험(12.6%), 화재보험(7.1%), 재산종합보험(6.3%), 해상보험(3.3%)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5〉 태국 손해보험 종목별 실적

(단위: 1,000 Baht/USD)

구분	2009			2008		
	Baht	USD	비중	Baht	USD	비중
화재보험	7,786,560	232,318	7.1%	7,501,472	213,824	7.1%
해상보험	3,633,838	108,418	3.3%	4,196,042	119,605	3.9%
자동차보험	65,429,545	1,952,142	59.5%	64,215,198	1,830,411	60.4%
재산종합보험	6,981,571	208,301	6.3%	5,759,788	164,179	5.4%
배상책임보험	832,369	24,834	0.8%	722,163	20,585	0.7%
기술보험	2,665,272	79,520	2.4%	2,120,473	60,443	2.0%
개인상해보험	10,363,389	309,200	9.4%	8,534,382	243,267	8.0%
의료보험	3,518,889	104,989	3.2%	2,878,430	82,048	2.7%
기타	8,829,614	263,438	8.0%	10,392,723	296,238	9.8%
계	110,041,047	3,283,161	100.0%	106,320,671	3,030,599	100.0%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보험종목별 성장세는 화재·해상·자동차보험 등 전통적 보험종목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재·해상보험 분야는 비중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향후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신종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종합·기술·개인상해·의료보험 종목의 경우에는 10~20%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향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개인상해 등 신종보험시장의 진입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집중도

태국 생명보험시장에는 25개의 생명보험회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위 5개사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상위 10개사의 경우에는 그 추세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IA(American International Insurance)는 이러한 추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9% 감소하였다.⁸⁾

〈표 II-26〉 태국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 보험	상위 5개사(%)	81.09	78.57	76.42	73.38	70.52
	상위 10개사(%)	95.21	99.46	93.87	93.49	93.16
손해 보험	상위 5개사(%)	35.9	37.2	36.9	37.2	39.4
	상위 10개사(%)	51.4	51.6	51.2	52.9	54.8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손해보험시장은 62개의 현지 법인, 5개의 외국 지점 및 5개의 민영의료보험회사(현재 4개사만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개년 동안 상위 5개사와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의 경우 큰 변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보험사를 제외한 71개의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상위 10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고 있고, 상위 20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9.4%에 이른다.

태국 손해보험시장의 특징은 상당수가 중소형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손해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이 1%를 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난립과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8) 태국 생명보험시장에서 AIA가 전체 생명보험시장의 3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타이생명(Thai Life Insurance)이 13.8%, 망타이생명(Maung Thai Life)이 9.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1위인 AIA와 타이생명과과의 시장점유율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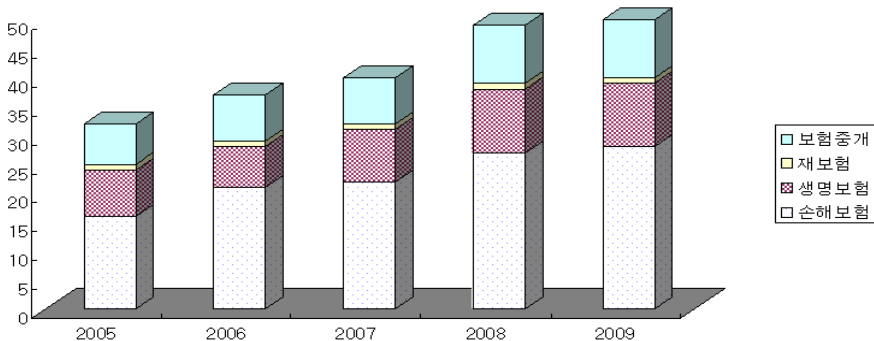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태국 생명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진입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손해보험시장은 72개사가 난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구조도 매우 집중적이어서 진입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손해보험 중 시장점유율의 가장 높은 자동차보험이나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종손해보험시장에의 진입매력도는 상존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베트남

베트남의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과의 쌍무무역협정을 비준하고 2008년 WTO 회원국이 되면서 시장 자율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해외로부터 새로운 보험회사들이 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들이 도입되어 베트남 보험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비합작 해외자본 보험회사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외국 보험사에 대한 3년간의 세제혜택 등이 베트남 보험시장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보험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회계기준과 감사관례(auditing practices) 등의 도입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림 II-5〉 베트남 보험회사 수 추이



자료: OECD(2010).

1) 생명보험의 성장성

2008년 기준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약 39조 7천 억 VND이며, 생명보험 부분의 총자산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다.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2005년 대비 2008년 자산증가율은 62%로 나타났다.

〈표 II-27〉 베트남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 추이

(단위: 십 억 VND)

구분	2005	2006	2007	2008
생명보험	24,455	30,584	39,417	39,678

자료: AXCO(2010).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년 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실질성장률도 다소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으나, 2008년 대비 2009년 수입보험료 실질성장률은 8.6%로 보고되었다. 생명보험 보험밀도는 5년간 10%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여 저변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생명보험 침투도는 5년간 -7.5%를 기록하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종목 중에서 2009년 기준으로 개인생명보험의 약 83%를 차지하는 양로보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 투자연계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새롭게 등장한 투자연계 변액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베트남시장 내 보험밀도와 보험침투도를 높이는 데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회사(Fund Management Company)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투자연계변액보험은 외국자본 보험회사인 Prudential과 Manulife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표 Ⅱ-28〉 베트남 개인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USD, VND)

상품	2008		2009	
	수입보험료 (VND)	수입보험료 (USD)	수입보험료 (VND)	수입보험료 (USD)
정기보험(Term)	237,278.0	14.55	80,310.2	4.51
투자연계변액보험(Unit-Linked)	429,174.2	26.33	1,066,220.7	59.90
순수 양로보험(Pure Endowment)	n.a.	n.a.	10,147.0	0.57
종신보험(Whole Life)	160,494.1	9.84	159,521.0	8.96
양로보험(Endowment)	7,645,580.6	468.98	8,590,969.5	482.65
연금보험(Annuity)	46,300.2	2.84	44,702.2	2.51
Riders	338,436.4	20.76	423,451.7	23.79
계	8,857,263.3	543.3	10,375,322.3	582.9

주: AXCO(2010)에서 재인용함.

자료: AVI.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생명보험 부문에는 총 11개 보험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9개 회사가 100% 해외지분 보험회사이다.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주요 5개사는 Prudential, Bao Viet Life, Manulife, AIA, Dai-ichi Life 인데, Bao Viet은 재무부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합자회사(Joint Stock)이며 나머지 4개사는 모두 100% 해외자본 회사이다. 2005년부터 5년간 이들의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집중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생명보험 상위 5개사	99.9	99.2	97.7	n.a.	94.2

자료: Association of Vietnamese Insurers 재구성함.

2) 손해보험의 성장성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약 22조 8천 억 VND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2005년 대비 2008년 자산증가율은 248%로 손해보험 부문에서의 자산규모 확대가 두드러진다.

베트남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비교적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5년 평균 실질성장률은 12.7%, 2008년 대비 2009년 실질성장률은 17.0%로 나타났다. 보험 밀도는 연평균 16.6%, 침투도는 4.6% 성장률을 보였다. 규모의 성장세나 잠재력 면에서 진입의 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손해보험 상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품은 자동차보험으로 약 3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비중이 큰 해상, 항공, 교통보험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32%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각각 10%와 15%에 해당하는 재산보험과 건설 및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도 경제개방 이후 경제교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30〉 베트남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USD, VND, %)

상품	2008			2009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재산보험(property)	1,057,020	64.8	20.7	1,191,546	66.9	45.8
건설 및 기술보험 (construction & engineering)	1,428,458	87.6	13.8	1,727,174	97.0	17.9
자동차보험(motor)	3,182,808	195.2	57.5	4,375,229	245.8	47.7
종업원 상해보험 및 고용주 배상책임 (worker'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n.a.	n.a.	n.a.	n.a.	n.a.	n.a.
책임보험(liability)	185,683	11.4	5.6	314,291	17.7	3.8
신용보증보험 (surety, bonds & credit)	28,532	1.8	0.2	7,590	0.4	0.8
기타(miscellaneous)	97,239	6.0	159.2	378,837	21.3	44.5
해상, 항공, 교통보험 (marine, aviation & transit)	3,309,750	203.0	41.6	3,688,958	207.2	33.4
계	9,289,490	569.8	n.a.	11,683,625	656.4	n.a.

주: 1) AXCO(2010)에서 재인용함.

2)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과 의료보험 제외함.

자료: AVI.

〈표 II-31〉 베트남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USD, VND, %)

구분	2008			2009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원수보험료 (VND)	원수보험료 (USD)	손해율
개인상해 및 건강보험	1,597,688	98	45.3	1,960,336	110.1	46.8

주: 1) AXCO(2010)에서 재인용함.

2) 생명보험부문에서 '특약으로 판매되는 부분'은 제외함.

자료: AVI.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손해보험 부문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27개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5개 회사는 점유율 순서대로 Bao Viet, PVI insurance, Bao Minh, PJICO, PTI이다. 〈표 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손해보험 산업의 집중도도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성장성으로 볼 때 손해보험에 시장진입 및 투자확대의 매력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32〉 베트남 손해보험산업 집중도 추이

(단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손해보험	상위 5개사	90.8	89.9	84.3	80.2	73.5
	상위 10개사	98.6	97.8	94.1	90.6	85.7

자료: Association of Vietnamese Insurers(AVI)를 재구성함.

Ⅲ. 외국기업의 진입현황

1. 인디아

가. 생명보험

1999년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법(IRDA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의 개정 이전까지 국영생명보험회사(LIC)⁹⁾가 생명보험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었다. 그 후 2010년 1월 현재 22개의 민영생명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입하였다. 이들 중 20개사는 인디아와 다국적 보험회사들 사이의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s)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디아의 생명보험회사는 해외기업과의 합작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인디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한 회사는 사하라 인디아 생명(Sahara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Ltd), 릴라이언스 생명(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Ltd)이다.

모든 민영보험회사는 주식회사(stock companies)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Insurance(Amendment) Act 2002)」는 협동조합도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상호회사와 해외회사의 지점은 시장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9) 국영생명보험회사(LIC)는 전국 8개 지역에 법인 사무소, 109개의 분사무소, 2,048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현재에도 국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인디아 내에서는 민영생명보험회사들이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국영생명보험회사(LIC)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페르시아만(Persian Gulf) 지역, UK, Fiji, Kenya, Mauritius, Nepal, Singapore, Sri Lanka에 진출해 있으며, Saudi Arabia와 Arabian Gulf에 진출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수입보험료 규모 순으로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주요 특징을 표에 정리하였다 (〈표 Ⅲ-1〉 참조). 생명보험산업에 진출한 인디아의 회사는 은행, 자동차, 자산 관리, 상호펀드, 증권중개업, 철강, 화학,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고 해외회사들은 모두 글로벌 보험회사(Old Mutual은 제외)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인디아의 다양한 업종에서 보험산업에 진입하는 것은 은행의 보험영업에 대해서는 대형금융그룹의 형성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이 적어도 USD 108.69mn(INR 5bn)의 순자산(net worth)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은 3년간 순이익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5% 이상의 보험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표 Ⅲ-2〉에 있는 회사들의 수입보험료 실적은 미미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첫째, 2008년 전후로 하여 신설된 회사들이 많다는 점, 둘째, 인디아의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회사와 합작을 하고 있지만 해외회사의 인디아 투자제한 규정(26%)으로 인하여 확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IRDAA 1999). 현재 지분소유자들은 49%까지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통과할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표 Ⅲ-2〉 참조).

〈표 Ⅲ-1〉 2010년 인디아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특징

(단위: 백만 USD)

회사명	회사 형태	수입보험료 (백만 USD)	주요 특징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인디아 정부 소유	32,494	• 100% 정부 소유 • 시장점유율 축소 • 해외시장개척에 주력
ICICI ¹⁾ 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Ltd	ICICI Bank와 영국 Prudential Life의 합작회사	3,172	• 2000년에 면허를 획득하여 최초의 민영회사 • 변액보험을 주상품으로 하고 6개 은행과 연계
Bajaj Allianz Life Insurance Company Ltd	Bajaj Capital Ltd와 독일의 Allianz의 합작회사	2,194	• Bajaj는 자동차 생산 회사 • 2001년 영업 시작
SBI Life Insurance Company Ltd	State Bank of India(74%)와 BNP Paribas Assurance(26%)	1,490	• SBI는 인디아에 16,0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
HDFC Standard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72.43%)와영국의 Standard Life Plc(26%)의 합작회사	1,149	n. a.
Reliance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 민간 자본	1,019	• Reliance Capital Limited(RCL)의 계열사 • RCL은 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중개업, 생·손보업을 겸영 • Reliance Life는 2005년 AMP Sanmar Assurance Company Ltd를 인수
Birla Sun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Aditya Birla와 캐나다의 Sun Life Financial의 합작회사	923	• Birla group은 인디아의 multi-product groups임 • 2000년에 합작 • Birla의 자회사가 Sun Life의 상호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음 • BSLI는 인디아 전역에 600 개의 지점을 보유
Max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Ltd	Max India Ltd와 미국의 New York Life International Inc의 합작회사	796	• Max India Ltd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 • New York Life는 US 밖에서는 동아시아와 남미에서 활동
Tata AIG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Tata와 미국 AIG의 합작회사	567	• Tata는 철강, 화학, 통신, 자동차업, 사업용 건물이 주요 사업
Kotak Mahindra Old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Kotak Mahindra와 남아공 Old Mutual의 합작회사	484	• Kotak Mahindra Finance는 인디아의 금융회사이고 Old Mutual은 남아공 회사

주: 1) Industrial Credit and Investment Corporation of India.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표 Ⅲ-2〉 2010년 인디아 기타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특징

회사명	회사 형태	주요 특징
Aviva Life Insurance Company India Ltd	인디아의 의료기 회사 Dabur와 Aviva의 합작 회사	• 2002년 영업을 시작함 • 인디아의 5대 은행, 협동조합, 지역 은행과 밀접한 결속관계를 형성 • 195개의 지점과 30,000명의 재무설 계사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Bharti AX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Bharti Enterprises(74%)와 AXA Asia Pacific(26%)의 합작회사	• Bharti Enterprises는 통신, 농업, 기간산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임
Future Generali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 Future Group과 이탈리아의 Generali Group의 합작회사	• Future Group은 소매, 금융, 유통업 을 하는 회사 • Generali Group은 40여개 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국제적 기업
IDBI Fortis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IDBI Bank (48%), Federal Bank of India(26%), Fortis(26%)	• IDBI Fortis는 2007년 출범함 • 정부 출자회사
ING Vysy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Exide Industries(50%) 그리고 기타회사와 Dutch 의 ING insurance(26%)의 합작회사	• 2001년 ING와 Vysya Bank Limited, GMR Industries Limited의 합작 • 2002 ING가 GMR group 보유 Vysya주식을 매입 • 인디아 은행에서 해외회사지분이 20%를 상회한 첫 번째 사례
MetLife India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Jammu and Kashmir Bank, M Pallonji and Co Private Limited, other private investors와 MetLife	• MetLife는 600개 지역에서 영업 중 이며 Bangalore에 본사가 있음
Shriram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Chennai-based Shriram Group과 남아공 보험회사인 Sanlam Group	• 2005년 12월부터 영업 시작

〈표 Ⅲ-2〉 계속

Canara HSBC Oriental bank of Commerce Life Insurance Company Ltd	Canara Bank (51% holding), HSBC Insurance(Asia Pacific) (26%) & Oriental Bank of Commerce(23%)	• 2008년에 출범 • 고액금융자산가(high net-worth individuals), 전문직, 중소기업, 농부,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마켓 등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함
AEGON Religare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Religare(44%), Bennett, Coleman and Company Ltd(30%)와 네덜란드의 AEGON(26%)	• AEGON은 세계시장에서 영업하고 1844년에 창설됨 • BCCL Times Group의 일부임 • Religare는 주식거래, 투자, 보험, 은행업,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임
DLF Prameric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DLF Limited와 미국의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 DLF는 부동산과 병원사업을 함
Star Union Dai-Ichi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Bank of India (51%), Union Bank of India(26%)와 일본의 Dai-Ichi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23%)	• 2008년에 등록
Sahara India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 자본	• 2004년 출범 • Sahara India Pariwar Group이 Lucknow에 설립
IndiaFirst Life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Bank of Baroda (44%) and Andhra Bank (30%)와 UK의 Legal and General Group(26%)	• 2009년 출범 • 7년 내에 3위권 생보사를 목표

나. 손해보험

1) 국영손해보험회사

1999년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보험감독원법(IRDA 1999)」이 제정되기 전에는 4개의 자회사(New India, United India, Oriental, National)를 둔 정부소유의 국영손해보험회사(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가 유일한 손해보험회사였다(〈표 Ⅲ-3〉 참조).

「보험감독원법(IRDA 1999)」의 제정으로 국영손해보험회사(GIC)는 2003년 보유한 모든 지분을 4개의 자회사들에게 이양을 완료했다. 4개의 자회사들은 정부소유이지만 국영손해보험회사(GIC)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국영손해보험회사(GIC)는 재보험에 집중하게 되었다.¹⁰⁾ 이들은 민영화의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영손해보험회사들이 시장을 점유해 오고 있지만 인디아의 4대 손해보험회사는 국영보험회사이다. 4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07에 65%를 차지하였지만 이는 전년의 74%에 비해 줄어든 비중이다.

그 외에 국영보험회사로 수출신용보증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출보증보험회사(ECGC: Export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of India)가 있다. 주요 특징은 인디아의 수출업자에게 정치적 리스크(political risks)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농업보험회사(AIC: Agriculture Insurance Company of India Ltd)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국영손해보험회사(GIC)가 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영손해보험회사(GIC)가 담당하던 농업보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정부소유인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GIC Re)은 2000년 이후 GIC로부터 독립하여 professional reinsurer로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적인 재보험회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공사보험회사는 원수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재보험료를 GIC Re에 지급해야 한다.

〈표 Ⅲ-3〉 2010년 인디아 국영손해보험회사의 주요 특징

회사명	회사 형태	주요 특징
New India Assurance Company Ltd	국영	• 1919 Sir Dorab Tata에 의해 설립 • 인디아 최초 인디아자본 보험회사 • 21,000명 고용 • 17개국에서 영업 • 2007~08년 조세 후 이윤 INR 14.01bn (USD 304mn)
Oriental Insurance Company Ltd	국영	• 1947년에 설립 • 23개 지역 사무소, 900개 운영사무소 • Nepal, Kuwait and Dubai에 지사 • 16,000명의 직원 • power stations, petrochemical, steel and chemical plants 등도 보장 • 2007~08년 조세 후 이윤 INR 93mn (USD 2.02mn)
National Insurance Company Ltd	국영	• 1906년 Kolkata (Calcutta)에 설립 • 1,000개의 사무소 • 16,000명의 직원 • Nepal and Hong Kong에 지사 • 2007~08년 조세 후 이윤 INR 4.18bn (USD 101.21mn)
United India Insurance Company Ltd	국영	• 1938년 설립 • 18,300명의 직원 • 1,340 offices • 2007~08 조세 후 이윤 INR 6.32bn (USD 137.39mn)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2) 민영손해보험회사

「보험감독원법(IRDA 1999)」의 제정 이후 민영손해보험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2010년 1월 현재 의료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모두 18개사이고 모두 주식회사이다.¹¹⁾ 이들 중 Reliance를 제외하고 모두 해외회사와 합작주식회사

11) 「Insurance(Amendment) Act 2002」에 따라 협동조합은 특수한 경우에 보험영업을 할 수 있다.

(joint stock operations)의 형태를 띠고 있다(〈표 Ⅲ-4〉 참조). 특이한 것은 생명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다는 것이다. 해외회사와 합작주식회사들도 자본규제, 솔벤시 마진 등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인디아의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 의료기, 통신, 농업, 유통업, 주식거래, 투자, 부동산과 병원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또한 인디아의 지주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표 Ⅲ-4〉 2010년 인디아 주요 손해보험회사의 특징

회사명	회사 형태	주요 특징
ICICI Lombard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ICICI Bank(74.26%)와 캐나다의 Fairfax Financial Holdings(26%)	• 2001년 8월 설립 • ICICI Bank는 인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 • Fairfax는 보험, 재보험, 은행업을 영위 • 2007~08년 조세 후 이윤 INR 1.03bn (USD 22.37mn)
Bajaj Allianz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Bajaj Auto Ltd(74%)와 독일의 Allianz	• 2001년 설립 • 의료보험을 경영 • 2007~08년 조세 후 이윤 INR 1.06bn (USD 22.96mn)
Tata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Tata 복합기업과 미국의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AIG)	• Tata는 철강, 화학, 통신, 자동차업, 사업용 건물이 주요 사업
Bharti Axa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Bharti Enterprises와 프랑스의 Axa	• 2008년 설립 • Bharti Enterprises는 통신, 농업, 기간산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거대 기업임
Reliance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손해보험 유일의 인디아 자본	• Reliance Industries는 textiles, shipping and petrochemical fields가 주력사업 • 2005년 면허 취소

〈표 Ⅲ-4〉 계속

SBI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State Bank of India와 Insurance Australia Group	• 2009년 12월 출범
Raheja QBE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Prism Cements Ltd of India와 오스트레일리아의 QBE Holdings (AAP) Pty Ltd	• 2008년 12월 출범
Future Generali India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Future Group과 이탈리아의 Assicurazioni Generali	• 2007년 설립 • Future Group은 소매업이 주력업종
Universal Sompo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Allahabad Bank, the Indian Overseas Bank, Karnataka Bank and Dabur Investments와 일본의 Sompo Japan Insurance Inc	—
Shriram General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Shriram Financial Services Holdings Pvt Ltd와 남아공의 Sanlam Ltd	—

주: 의료보험 전문회사로는 Star Health&Allied Insurance Company Ltd, Apollo Munich Health Insurance Company Ltd, 인디아의 Max India Ltd와 영국의 BUPA Finance plc의 합작회사인 Max Bupa Health Insurance Company Ltd가 있음.

자료: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다. 민영의료보험

인디아는 2개¹²⁾의 의료보험회사가 있는데 지역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다. Star Health and Allied Insurance Company Ltd는 오만(Oman)의 보험회사와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UAE)의 개인 사업가의 합작회사이다. 그리고 Apollo DKV가 있는데, 이는 인디아의 Apollo Hospital group과 독일의 DKV의 합작회사이다.

12) 2010년 2월 기준이다.

의료보험 신상품이 정기적으로 출시되고 있고 생명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에 진입하고 있다. TaTa AIG는 최초로 포괄적으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였고 HealthFirst는 입원, CI, 수술, 퇴원 후 간병, 사망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보험금 지급률은 105.9%로 나타나 수익성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보험감독원(IRDA), GIC(General Insurance Council)와 연합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준가격(benchmark pricing)을 설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기준의료서비스 가격으로 인해 보험회사는 과잉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보험금지급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보험업법」 수정안은 순수민영의료보험회사의 요구자본량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자본비용이 경감되어 수익성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인디아는 공적으로 의료보장을 시작하였다. 근로자의 대다수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장법(Unorganized Sector Workers Social Security Bill 2008)」이 2008년 1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건강보장, 단체상해 및 가족보장, 고령자보장을 포함한다.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자본의 보험회사 및 타카풀 회사의 주식보유는 70%까지 허용되며 보험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그 이상도 허용될 수 있다. 보험과 타카풀의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법인화된 외국보험 및 타카풀 회사는 제한 없이 국내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방카타카풀 규제도 없다.

〈표 Ⅲ-5〉 말레이시아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현지회사	모회사	국가
Great Eastern Life	Great Eastern Holdings	Singapore
Prudential	Prudential	UK
AIA	AIG	US
ING	ING	Netherlands
Allianz Life Insurance	Allianz Group	Germany
MCIS Zurich Insurers	Zurich Financial Service Group	Switzerland
AXA Life Insurance	AXA	France
Cimb Aviva	Aviva	UK

자료: AXCO.

생명보험에서 외국계회사의 활동이 활발한데 2008년 말 수입보험료 규모로 Great Eastern Life가 30.6%, Prudential이 17.7%, AIA가 13.4% ING가 10.4%를 차지하는 등 외국계 생명보험회사가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손해보험 부문에서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이 두드러지는데 24개 원수보험회사 중 외국계 보험회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은 〈표 Ⅲ-6〉와 같다. 이들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말 기준으로 45%를 차지한다.

최근 외국 보험회사의 말레이시아 보험산업 진입과 관련된 변화로, Mitsui Suminoto는 Hong Leong Financial Group(HLFG)와 합작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허가를 취득하였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Sompo Japan은 말레이시아 현지 재보험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표 III-6〉 말레이시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현지회사	모회사	국가
MSIG Insurance	Mutsui Sumitomo Insurance	Japan
Allianz General Insurance	Allianz Group	Germany
Tokio Marines Insurance	Tokio Marine Holdings	Japan
Berjaya Sampo Insurance	Sampo Japan Insurance	Japan
AXA Affin General Insurance	AXA	France
Etiqua Insurance	Fortis	Belgium
AIG Genenral	AIG	US
AmG Insurance	IAG	Australia
ACE Synergy Insurance	ACE Synergy	US
MCIS Zurich Insurers	Zurich Financial Service Group	Switzerland
MUI Continental Insurance	CAN	US
QBE Insurers	QBE	Australia
ING Insurance	ING	Netherlands
Prudential Assurance	Prudential	UK
Oversees Assurance Corporation	Great Eastern Holdings	Singapore

자료: AXCO.

또한 2010년 3월에 AIG는 Alico를 MetLife에 매각하기로 동의하였고 2010년 말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mAssurance는 보험종합면허를 2008년 12월 1일부로 반납하고 생명보험회사인 AmLife Insurance와 손해보험회사인 Berhad와 AmG Insurance Berhad를 2개의 분리된 회사로 설립하였다.

타카풀 및 리타카풀과 관련한 최근의 변화로 Prudential BSN과 Affin Islamic Bank는 가족 타카풀 상품의 유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Swiss Re는 이슬람 보험의 재보험격인 재타카풀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종합면허를 취득하여 쿠알라룸푸르에 리타카풀 영업을 개시하였다.

3. 인도네시아

1994년 외국인투자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작기업(joint venture)을 통한 외국기업의 진출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이 허용되고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의 허용비율도 최고 95%까지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진출환경이 조성되었다.¹³⁾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진출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¹⁴⁾ 특히, 보험산업에서 외국기업의 보험산업 진출은 오직 현지 보험회사(local insurance company)와의 합작(joint venture)만 허용하고 있다.

대다수의 자국보험회사가 은행(bank) 혹은 거대사업조직(large business organization)과 연관되거나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합작회사도 이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보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¹⁵⁾

가. 생명보험

2008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45개사이고, 이 중 18개사가 해외합작회사이다. 해외합작회사의 2008년 수입보험료는 254억 USD로 50.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외합작회사 중 PT Prudential Life Assurance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13.9%)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은 약 37.4%로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Ⅲ-7〉 참조).

13) 손민선(1997), pp. 100~101.

14)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금지함. (「대통령령」 NO.77/2007).

15) AXCO(2010), p. 58.

〈표 Ⅲ-7〉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생명보험)

(단위: 십억 USD, %)

순위	보험회사 (Local company)	해외합작파트너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수입보험료 (2008)
1	PT Prudential Life Assurance	영국의 Prudential life	0.7(13.9)
2	AIA Indonesia	미국 버뮤다에 본사를 둔 AIG life	0.4(7.9)
3	Allianz Life Indonesia	독일의 Allianz Life	0.3(6.1)
4	Jiwa Manulife Indonesia	캐나다의 Manulife Financial	0.3(5.7)
5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프랑스의 AXA	0.2(3.8)

주: 순위는 2008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설정,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나. 손해보험

2008년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업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는 94개이며, 이중 해외합작회사는 19개이다. 2008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자국회사가 79.1%, 해외합작회사가 20.9%로서 해외합작회사의 영업활동이 자국회사에 비해서 높지 않다.

해외합작회사 중에서는 ASURANSI MSIG INDONESIA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4.8%)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로 본다면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표 Ⅲ-8〉 참조).

생명보험과 대조적으로 손해보험에는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진출 기업은 삼성화재(PT. ASURANSI SAMSUNG TUGU), LIG손보(PT. LIG INSURANCE INDONESIA), 메리츠화재(ASURANSI HANJIN KORINDO)이다.¹⁶⁾ 해당기업의 2009년 수입보험료 현황은 각각 113,624백만 루피아(12위), 68,956백만 루피아(13위), 48,001백만 루피아(15위)이다.

16) 모두 현지법인의 형태로 자카르타에 설치되어 있다.

〈표 Ⅲ-8〉 인도네시아 해외합작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현황(손해보험)

(단위: 십억 USD, %)

순위	보험회사 (Local company)	해외합작파트너 (Foreign joint venture partner)	수입보험료 (2008)
1	ASURANSI MSIG INDONESIA	일본의 MSIG	868,210(4.8)
2	ASURANSI ALLIANZ UTAMA INDONESIA	독일의 ALLIANZ	801,353(4.4)
3	ASURANSI TOKIO MARINE INDONESIA	일본의 TOKIO	766,805(4.3)
4	ZURICH INSURANCE INDONESIA	스위스의 ZURISH	259,280(1.5)
5	ASURANSI AXA INDONESIA	프랑스의 AXA	259,280(1.5)

주: 순위는 2008년 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설정, 괄호 안은 시장점유율임.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

4. 태국

태국정부는 2008년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생명보험 시장 및 손해보험시장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의 지침에 의거하여 새로운 소유권 규정은 태국 보험회사 내의 외국인 주식소유를 25%에서 49%로 상향조정하였다. 외국인 이사의 수도 25%에서 5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국가협의회(Council of State)의 결정에 따라 태국회사(Thai company)로 간주되기 위해 보험회사는 태국인이 최소한 거래된 주식의 75% 이상, 총 투표권의 7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태국인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 태국인 주주가 있는 지주회사는 비태국인 기관으로 간주된다.

단기적으로 현재의 소유구조를 존치시키도록 하는 조치들이 비명시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경제적·법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투자를 수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식소유한도의 확대와 같은 개

혁은 태국에서의 산업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생명보험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총 13개로 전체 24개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표 Ⅲ-9〉 참조). 또한 동 회사들 중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0위 이내에 속해 있는 회사는 7개로 외국인 투자 생명보험회사들의 실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합작회사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삼성생명이 합작투자의 형태로 태국에 진출하여 Siam Samsung Life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Ⅲ-9〉 태국 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주 현황

(단위: USD mn)

생명보험회사	외국인 대주주	수입보험료
AIA(지점)	AIG	2,056.1(1위)
Muang Thai Life	Fortis	628.3(3위)
Bangkok Life	Nippon Life	580.8(4위)
Siam Commercial New York Life	New York Life	567.8(5위)
Ayudhya Allianz CP Life	Allianz Group	452.5(6위)
Krungthai AXA Life	AXA Insurance	370.3(7위)
ING Life	ING	230.1(10위)
Prudential TS Life	Prudential Group, UK	88.0(11위)
ACE Life Assurance	ACE Group	51.8(14위)
Thai Cardif Life	Cardif Life(BNP Paribas)	48.4(16위)
Generali Life Assurance	Generali Group	41.2(17위)
Tokio Marine Life(Millea Life)	Tokio Marine	30.7(18위)
Siam Samsung Life	Samsung Life Insurance	25.7(19위)
Manulife(Thailand)	Manulife	14.2(20위)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2) 손해보험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총 72개 보험회사 중 외국계 회사는 18개이다. 지점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ACE, New Hampshire 등 5개 회사이고, 합작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Tokio Marine, Allianz, AXA, Chubb 등 13개 회사이다(〈표 Ⅲ-10〉 참조). 이외에도 간접적인 주식소유 등을 통하여 25개 이상의 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 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⁷⁾ 전통적으로 외국인 소유권은 25%로 제한되어 왔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명의대여인(nominees)이나 일련의 지주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회사 내에 외국인 주식소유량이 실질적으로 전통적인 상한선인 25%를 초과하고 있다.

〈표 Ⅲ-10〉 태국 해외합작투자 손해보험회사 및 외국사 지점

(단위: USD mn)

구분	손해보험회사	외국인 대주주	수입보험료(USD mn)
지점	ACE INA Overseas	ACE Group	88.1(9위)
	Mitsui Sumitomo	Mitsui Sumitomo	82.7(12위)
	New Hampshire	Chartis Inc.	69.9(14위)
	AIA	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2.9(60위)
	New India Assurance	New India Assurance	0.9(65위)
합작 투자	Safety Insurance	Insurance Austraila Group	117.4(6위)
	Tokio Marine Sri Muang	Tokio Marine & Nichido Fire	100.4(8위)
	MSIG Insurance	Mitsui Sumitomo	62.2(15위)
	Allianz C.P. General	Allianz Group	54.9(18위)
	AXA Insurance	AXA Group	46.0(24위)
	IAG Insurance	Insurance Austraila Group	25.8(32위)
	QBE Insurance	QBE Insurance Group	19.1(37위)
	Kurnia Insurance	Kurnia Group, Malaysia	18.5(38위)
	Sompo Japan Insurance	Sompo Japan Insurance	14.0(44위)
	CIGNA Insurance	CIGNA International	9.2(52위)
	Liberty Insurance(LMG)	Liberty Mutual Insurance Group	7.8(53위)
	Generali Insurance	Generali Group	7.6(54위)
	Chubb Insurance	Chubb Group	5.9(55위)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17) AXCO(2010), p. 59.

Lloyd's는 태국에서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Lloyd's 언더라이터들은 보험을 인수를 위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태국의 피보험자들은, 태국 내에 보험을 인수할 매개자가 없거나 외국 매개자가 태국 매개자와 제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Lloyd's 언더라이터들에게 자유롭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 베트남

1975년 이전에는 3개의 베트남 회사와 70여 개의 프랑스, 영국, 미국 회사들이 보험을 판매했으나, 1975년 이후 모든 사유 보험회사는 영업을 중지했으며, Bao Viet만이 유일한 보험회사로 존재하였다.¹⁸⁾ Bao Viet은 1994년까지 보험시장에서 독점기업으로서 20여 개의 전통적 손해보험상품만을 취급하였으며, 보험침투도는 GDP의 0.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1994년 Bao Minh이 설립되었고, 1995년에는 합자기업(Joint Stock)인 Pjico가, 1996년에는 Bao Viet과 Tokio Marine Nichido Fire가 최초의 합작기업(Joint Venture)인 VIA(Vietnam International Assurance Company)를 설립했다. 아울러 1999년에는 영국계 회사인 Prudential이 100% 해외자본 회사로서 베트남 내 생명보험 사업면허를 취득하였다.¹⁹⁾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외국 보험회사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베트남 회사들이 우세하다.²⁰⁾ 생명보험 부문의 경우 총 11개 회사 중 9개 회사가 100% 해외 지분 보험회사이다. 이외에도 2010년 8월 기준으로 중국계 보험회사인 Ping An 등이 설립면허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생명보험 부문의 주요 3개사는 Prudential, Bao Viet Life, Manulife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Prudential과 Manulife는 100% 해외자본 회사이며, Bao Viet의 경우에도 HSBC

18) Vietnam Financial Review(2010).

19) OECD(2010).

20) 포보스(<http://forbes.com>)(2010. 5. 5).

Insurance Holdings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HSBC Insurance Holdings는 2009년 보험 및 금융서비스 그룹인 Bao Viet Holdings의 지분을 10%에서 18%로 확대하였으며, 2012년까지 추가적인 7%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다.

한편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투자연계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100% 외국자본회사가 제공하고 있다. 투자연계변액보험 영업을 하려면, 보험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자산운용회사(Fund Management Company)를 설립해야 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2008년부터 투자연계변액보험 영업을 시작한 Prudential과 Manulife만이 투자연계변액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급여력비율 규정 외에도 유니버설기금을 운용할 고도의 IT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 보험회사는 ACE Life와 AIA이다.

〈표 Ⅲ-11〉 생명보험 주요 진출현황 및 주요 특징

회사명	합자 여부	특징
Prudential	영국 Prudential 100% 해외 지분	• 1999년에 생명보험 사업면허 취득 • 영국 Prudential 그룹은 이 밖에도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Prudential Vietnam Fund management Company를 소유하고 있음
Bao Viet Life	합자기업(Joint Stock) 재무부가 일부 주식을 소유	• 1965년에 설립됨 • Bao Viet Finance-Insurance Group에 속해있음 •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유화되었으며, 주요 주주는 HSBC Insurance Holdings임 • Bao Viet Holdings는 상업은행 사업면허를 인가받았음
Manulife	캐나다 Manulife Financial 100% 해외 지분	• 대만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로 시작되었으나, 2001년에 동업관계가 끝이 남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AXCO(2010).

손해보험 부문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27개 회사 중 7개 회사가 100% 외국자본 회사, 3개 회사가 합작회사(Joint Venture)이다. 또한 국내사에 해당하는 17개 회사 중 15개는 합자회사(Joint Stock) 형태를 띠고 있다.²¹⁾ 2003년 재무부가 Bao Viet, Bao Minh, Petrovietnam Insurance 등 정부 소유 회사의 지분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HSBC Insurance, AXA Insurance, Temasia Capital Limited of Hong Kong, Swiss Re 등 해외회사들이 주요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손해보험 부문에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Bao Viet, PVI(PetroVietnam Insurance), Bao Minh이다. 이 중 PVI의 경우 2010년에 Oman Investment Fund가 12.6%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PVI의 유일한 해외 전략 파트너가 되었다.

〈표 Ⅲ-12〉 손해보험 주요 진출현황 및 주요 특징

회사명	합자 여부	특징
Bao Viet	합자기업 (Joint Stock) 재무부가 일부 주식을 소유	• 1965년에 설립됨 • Bao Viet Finance-Insurance Group에 속해 있음 • 2007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유화 되었으며, 주요 주주는 HSBC Insurance Holdings임 • Bao Viet Holdings는 상업은행 사업면허를 인가받았음
PetroVietnam Insurance	PetroVietnam의 자회사	• Petrovietnam은 2006년 말에 부분적으로 사유화됨
Bao Minh	정부소유 (부분 사유화)	• 정부에 소유되어 있었으나, 2004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유화됨 • 2006년에 Bao Minh GMG를 Dai-ichi Life에 매각하여, 현재는 손해보험영업만을 영위 • 2007년에는 AXA group이 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입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AXCO(2010).

21) 나머지 2개 회사인 BIDV Insurance Company와 Bao Ngan(Vietinbank Insurance Company)은 국유회사이다.

한편 보험중개회사 10개 중 6개사(Viet Quoc, A Dong, Dai Viet, Pacific Joint Stock Insurance Broker, Cimeico, Sao Viet Broking)는 합자회사(Joint Stock) 형태로 설립된 국내 중개회사이며, 나머지 4개사(Aon Vietnam, Gars Savoye Willis, Jardine Lloyd Thompson Ltd, Marsh)는 100% 해외지분회사이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진출 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6개사가 현지법인과 사무소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해 있다.²²⁾ 하노이에는 서울보증보험, 삼성생명, LIG손해보험이, 호치민에는 LIG손해보험, 삼성화재, 대한생명, 현대해상이 진출하였다. 이 중 대한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현지법인 형태로 진입해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2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4.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6. 9).

IV. 보험규제 현황

1. 인디아

가. 감독체계

인디아의 법체계는 영국의 「보통법(English common law)」과 1950년의 「헌법(1950 constitution)」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산업은 일반적으로 「보험감독원법(IRD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영국의 관행을 따르고 있다. 고아주(Goa: 인도 중서부 아라비아 해에 면한 주)²³⁾는 1961년까지 포르투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분야에서는 포르투갈의 「시민법(Portuguese Civil Code)」이 적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푸두체리주(Puducheri)와 소수민족거주지에는 프랑스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주도(州都)는 파나지(옛 이름은 판집)이다. 마하라슈트라주(州), 카르나타카주(州)와 각각 접한다. 1510년 포르투갈의 아폰수 달부케르케가 점령한 이래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어 포르투갈과 동양 각국과의 상업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하는 한편, 품질이 우수한 철광석, 망간광석의 산출지로서 유명해졌다.

평야지대에서는 쌀, 코코야자, 캐슈너트, 빈랑나무, 망고 등의 산출이 많으며 해안에서는 제염업도 성하다. 따라서 티크, 코프라, 어류, 캐슈너트, 소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의 독립과 더불어 고아의 반환문제가 표면화되었는데, 인도 정부는 1961년 12월에는 무력행사로 이를 인도 영토에 편입하였다. 다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디우와 함께 연방정부 직할의 직할주를 이루고 있다. 언어는 말라티어의 방언인 콘크니어와 구자라트어를 모어(母語)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40% 이상이 가톨릭교도이다. 철도는 이곳의 마르간을 기점으로 인도 각지에 통한다.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1) 보험법규

인디아에서 최초의 보험관련 법규는 1912년 제정된 「생명보험회사법(Life Assurance Companies Act)」이다. 계리사에게 보험료와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 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규제를 포괄하는 「보험업법(The Insurance Act 1938)」이 제정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법은 보험산업을 규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56년에는 「생명보험회사법(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 1956)」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동 법은 해외기업의 출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을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단(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에 소속되도록 하였다.

1972년에는 손해보험규제에 해당하는 「일반보험영업법(General Insurance Business(Nationalization) Act 1972)」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73개의 인디아 민영손해보험회사와 33개의 해외투자자의 손해보험회사가 정부에 인수되었다. 이 법규는 정부소유 손해보험회사인 일반보험공단(GIC: General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1999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괄하는 「보험감독원법(IRDA: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Chapter 2는 인디아 보험회사의 입법부인 새로운 보험감독원(IRDA)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보험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소유 생명보험회사(LIC)와 손해보험회사(GIC)의 독점을 폐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열었다.

가) 「보험감독원법」의 주요 내용

보험감독원(IRDA)은 의장(chairman), 5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10년 현재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재원은 주로 정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of the Ministry of Finance)로부터 조달되고 일부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충당된다.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산업을 규제하고 성장을 촉진할 의무를 지닌다.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갖는다(IRDAA: Chapter 4 Section 14).

- 1) 보험회사의 인가, 등록 갱신, 등록사항의 수정, 등록 취소, 등록 연기
- 2) 보험가입대상, 보험금지급, 해약, 보험기간, 보험가입조건 등에 관한 보험 가입자 보호
- 3)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²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활동, 자격조건에 관한 규정의 제정
- 4) 감정인(surveyor)과 손해사정사(loss assessors)에 대한 관리
- 5) 보험영업행위의 효율성 촉진
- 6) 보험영업과 관련한 전문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의 규제
- 7) 수수료의 징수 및 범칙금 부과
- 8) 보험회사,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 전문기관에 대한 감사
- 9)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급부, 각종기간, 보험조건의 통제
- 10) 재무제표에 관한 요구사항 및 양식에 관한 규정의 제정
- 11) 보험회사의 펀드투자에 관한 규제
- 12) 지급여력 마진(margin of solvency)의 유지에 관한 규제

24) 중계인(intermediaries)은 insurance brokers, re-insurance brokers, insurance consultants, surveyors and loss assessors를 말한다.

- 13) 보험회사와 보험중계인(insurance intermediaries) 사이의 분쟁조정
- 14) “Tariff Advisory Committee”의 활동에 대한 감독
- 15) 농촌지역과 취약부문(the rural or social sector)²⁵⁾에 대한 보험영업 비율규제

2000년 7월 이후 보험감독원(IRDA)은 민간보험회사 면허 절차, 소비자권익 보호, 보험회사 연차보고서의 제출 방식,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 생명보험시장으로 모집인과 은행의 진입 등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보험감독원(IRDA)의 활동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으로 보험산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보험정보국

2009년 10월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효율적 기능을 위하여 보험정보국(IIB: Insurance Information Bureau)²⁶⁾을 설립하였

- 25) 인도 손해보험사는 농촌 및 소외계층 의무판매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판매 조항 위반 시 최소 500,000 Rs의 과징금이 추정된다. IRDA에서 과거 위반사례와 고의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 추정여부를 결정한다. IRDA는 2006년 New India와 Shriram Life에 조항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본 의무판매 조항에는 농작물 보험도 포함되며, IRDA에서는 5년 주기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있다.

구분	적용 대상	의무 사항
농촌지역 (Rural Community)	- 인구 5,000명 미만 지역 400명/m² 미만의 인구밀도를 나타내는 지역 - 농업종사자가 지역인구의 25%를 상회하는 지역	5년차까지 의무 판매 - 1년차: 매출의 2% 이상 - 2년차: 매출의 3% 이상 - 3~5년차: 매출의 5% 이상
소외계층 (Social Sector)	- IRDA Act 1938(Sec.4) 및 1999(Sec. 41)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소외계층 및 빈곤층 - 저소득 자영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 등	5년차까지 의무 판매 - 1년차: 5,000건 이상 - 2년차: 7,000건 이상 - 3년차: 10,000건 이상 - 4년차: 15,000건 이상 - 5년차: 20,000건 이상

- 26) 보험정보국(IIB)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Insurance Information Bureau

IRDA Data Center United India Tower, 9th floor, 3-5-817/818, Hyderguda,

다.²⁷⁾ 보험정보국(IIB)은 인디아의 주로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 영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독립기구이다. 보험정보국(IIB)은 국장, 부국장 그리고 8명의 다양한 보험전문가들과 정보기술 전문가로 관리자를 구성하고 있다. 보험정보국(IIB)은 감독자와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정책연구 개발활동을 하고, 보험회사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관리하며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1)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험감독원(IRDA)에 제공하여 자문자의 역할을 한다.
- 2) 전체 보험산업의 데이터를 한 곳에 집적하는 기능을 한다.
- 3) 데이터의 가공과 배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 4) 보험정보국(IIB)의 직원은 보험감독원(IRDA)의 대리인의 지위를 가지며 보험감독원(IRDA)의 의무를 기능적으로 할당받아 수행한다.

다) 의료보험 감독

보험감독원(IRDA)은 모든 보건의료를 감독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어 의료보험을 감독하고 있다.

2008년 보험감독원(IRDA)과 정부는 의료보험회사를 위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고려하는 논의를 하였다. 자율규제기구는 의료보험위원회(HIC: Health Insurance Council)로 불릴 것이지만 2010년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1983년 「보험업법」의 수정 후에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Basheerbagh, Hyderabad, 500-029

Phone: 040-66820964

Email: datacenter@irda.gov.in

27) IRDA, Circular No,IRDA/TAC/ORDER/Admn/042/10/2009.

2) 퇴직연금감독

공사퇴직연금산업을 감독할 연금감독원(PFRDA: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정부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2003년 8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법적 권한을 가지고자 2005년에 「연금감독원법(PFRDA Bill 2005)」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령(executive ordinance)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2008년 11월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는 임시적인 퇴직연금감독기구가 연금감독원(PFRDA)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했다.²⁸⁾ 퇴직연금 데이터 관리기관(CRAs: Central Record keeping Agencies)의 연금감독원(PFRDA)에 등록조건 및 역할, 펀드매니저와 계약 조건, 감사요구 조건, 투자포트폴리오의 한도, 전산 데이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정보보호 기준 등이 의회에 계류 중인 연금감독원(PFRDA)의 설립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연금감독원(PFRDA)은 연금운영자의 수, 건전성 기준, 투자 기준, 연금 펀드매니저(PFMs: Pension Fund Managers)의 요구자본량에 관해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금감독원(PFRDA)은 사기나 불공정 거래,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연금감독원(PFRDA)을 설립하면서 새로운 퇴직연금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주요 개혁 내용은 첫째,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Defined Benefit pension)으로부터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pension)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²⁹⁾ 이 시스템에서 신입 중앙정부공무원(군인 제외)은 확정기여형 연금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피용자와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한다.

둘째, 새로운 퇴직연금시스템은 연금보험료를 수납하기 위해서 은행과 우체

28) Resolution F No.1(6)2007-PR.

29) PFRDA(<http://pfrda.org.in>).

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이나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투자에 대한 선택과 펀드매니저의 선택을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자발적인 퇴직연금을 관리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tier-II)이 있다. 이 연금은 의무가입 연금과 같이 관리된다. 그리고 이 연금은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은 통상적으로 60세에 퇴직연금 체계에서 벗어난다. 이 때 개인은 퇴직연금액(pension wealth)의 적어도 40%를 연금(annuity)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시스템을 벗어날 경우 퇴직연금액(pension wealth)의 80%를 투자해야 한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연금(annuity)은 피용자와 배우자, 피부양부모의 생애에 걸쳐서 지급된다.

3) 금융안정개발위원회

금융안정개발위원회(FSDC: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uncil)가 재무부 장관(finance minister)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될 것이다. 금융안정개발위원회(FSDC)는 보험감독원(IRDA), 연금감독원(PFRDA: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연방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의 구성원들로 구성될 것이다. 금융안정개발위원회(FSDC)는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할 것이다.

나. 면허(절차, 요구서류)

1) 면허회사의 형태

모든 보험회사는 현행법상 「Insurance Act 1938」, 「Insurance(Amendment) Act 2002」는 주식회사이다. 「Insurance(Amendment) Act 2002」는 특별한 경우 보험협동조합(Insurance Co-operative Societies)이 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2월에 보험감독원(IRDA)은 상호보험회사(Mutual companies)와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는 향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 면허의 업종별 구분

변액연계형 및 비연계형(linked business, non-linked business)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 영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은 손해보험영역으로 간주된다. 생명보험회사는 개인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을 특약(rider basis)으로 판매할 수 있다.

생·손보 복합면허는 허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의료보험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최근 몇몇 의료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출하였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ies)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국내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3) 면허 절차

인디아에서 보험영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회사법(Companies Act 1956)」에 따라 주식회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등록처(ROC: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고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

회사명 선택 → 중복 여부 확인 → ROC등록(500루피) → 회사정관 작성 및 직인신고 → 등록양식 작성 및 제출 → 등록비 납부(1000루피) → ROC에서 법인증명서 수령

다음으로 보험감독원(IRDA)에 인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먼저 IRDA/R1을 제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인가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IRDA/R2를 작성한다.³⁰⁾

보험감독원(IRDA)은 인가신청 시에 그 회사와 관련된 서류들의 공인된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류는 회사명, 주소, 관리자(directors and principal officer)의 직업, 보험영업부문의 설명서, 자본의 출처(sources of the share capital), 기획자에 관한 공인된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는 회사가 납입자본(paid-up share capital)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납입자본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USD 22mn(INR 100 crore)³¹⁾이고 재보험은 USD 44mn(INR 200 crore)이다. 또한 신청자는 세부사업계획서(details of its business plan)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업지역, 판매상품, 각종 비율, 판매채널, 계약인수 절차, 투자, 채용 및 교육훈련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는 보험감독원(IRDA)에 각 사업당 등록비 USD 1,100(INR 50,000)도 지급해야 한다. 면허갱신을 위해서는 인디아 내에서 거수된 원수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지급해야 한다. 최소 한도액은 USD 1,100(INR 50,000)이고 최고 한도액은 USD 1,1mn(INR 5 crores)이다. 갱신주기는 1년이고 12월 31일이 마감일이다.

30) 신청 절차는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이하 'IRDA'라고 함) (Registration of Indian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2000」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를 참조한다.

31) crore는 화폐단위로 천만 루피를 말한다.

다. 재무건전성규제

1) 요구자본량

최근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험감독원(IRDA)은 자본량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보험회사가 최소요구자본량(minimum solvency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험감독원(IRDA) 규정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원수보험사의 최소요구자본량은 USD 22mn(INR 100 crores)이고 재보험회사는 USD 44mn(INR 200 crores)이다.³²⁾ 2010년 현재 이 규정은 변화의 움직임이 없다.

2009년 「생명보험주식회사법(The 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Amendment) Bill 2009)」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다. 주요내용은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단(LIC)의 최소요구자본량을 USD 1.1mn(INR 5 crore)에서 USD 22mn(INR 100 crore)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감독원(IRDA)은 향후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보험업법」 section 40C에서 사업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 section 40C에서 사업비율(expense ratio)이 GWP(Gross Written Premium)의 19.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손보사들이 20%를 상회하는 사업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IRDA에 지속적으로 규정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본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IRDA에서 명시하는 제재는 없으며, IRDA에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 준수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2)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를 참조한다.

2)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s)

「보험업법(Section 64VA of the Insurance Act 1938)」과 보험감독원(IRDA)에 따르면 모든 보험회사는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의 가치를 솔벤시 마진이라고 하고 이것은 보험감독원(IRDA)이 규정한다.

보험회사는 솔벤시 마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원(IRDA)이 제시한 평가 방법과 양식에 따라 자산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³³⁾³⁴⁾ 그리고 보험회사는 부채의 양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의료보험의 양식은 다르다.

생명보험회사는 a) USD 11mn(INR 50 crores)과 b) 규정된 산출식에 기초해서 계산된 자본량 중에서 많은 양을 보유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이용해야 하는 수학적 준비금 산출식에 관한 기준은 보험감독원(IRDA)에서 제시하고 있다.³⁵⁾

요구 솔벤시 마진율은 1.5이다. 2009년 3월 보험감독원(IRDA)에 보고된 생명보험회사의 솔벤시 마진율은 정부소유의 생명보험공단(LIC: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이 1.54로 가장 낮았고, Aviva가 5.91로 가장 높았다.

인디아 보험회사가 인디아의 밖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나라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요약보고서를 보험감독원(IRDA)에 제출해야 한다.³⁶⁾ 이 경우 지정계리사가 추가적인 준비금(additional reserves)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다.

2008년 보험감독원(IRDA)은 변액보험 그리고 비변액보험상품(linked and non-linked life business)의 솔벤시 마진 계산에 이용되는 요소들을 조정했다.³⁷⁾

33) IRDA(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Insurers) Regulations 2000.

34) IRDA(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or's Report of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2000.

35) IRDA(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Insurers) Regulations 2000.

36) IRDA(Actuarial Report and Abstract) Regulations 2000.

라. 투자

투자에 관한 규정은 2000년에 틀을 잡았다.³⁸⁾ 그 후 2001년, 2002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2008년에 보험감독원(IRDA)이 발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³⁹⁾

퇴직연금과 일반연금 사업(Pension and general annuity business), 그리고 변액보험 사업(Unit linked business)이 아니라면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이 다음의 조건하에서 투자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표 IV-1〉 참조).⁴⁰⁾

〈표 IV-1〉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조건

No	투자 형태	비율
I	Government securities	Not less than 25%
II	Government securities or other approved securities	Not less than 50% (incl the above)
III	Approved investments and other investments	Not exceeding 35%
	(a) Other investments specified under 27A(2) of the Insurance Act 1938	Not exceeding 15%
	(b) Investment in housing and infrastructure by way of subscription or purchase of bonds/debentures of specified financial institutions. Certain asset backed securities	Not less than 15% (b and c taken together)
	(c)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Not less than 15% (b and c taken together)

자료: 현지 출장 자료.

37) Circular No.029/IRDA/ACTL/RSM/2008-09 of 1 January 2009;
Circular No.025/IRDA/ACTL/RSM/2008-09 of 17 December 2008.

38) IRDA(Investment) Regulations 2000, 8.

39)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of 30 July 2008.

40)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of 30 July 2008(Section 3 (1)).

변액생명보험사업(unit-linked life insurance business)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펀드를 언제든지 계약자의 승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⁴¹⁾ 이것은 투자계좌가 자산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경우이다. 투자의 승인된 범주 이외에 대한 총투자는 펀드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 두 명의 비상근 이사(non-executive directors)와 고용된 지정계리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에 관한 공시 기준에 따라 공시를 하여야 한다.⁴²⁾

마. 소비자보호제도

1) 상품

모든 보험상품의 내용 설명서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급부의 범위, 보장의 정도, 담보, 예외, 보장조건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⁴³⁾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설명서나 보험증권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1) 보험 기간 및 조건
- 2) (보험의) 증액 배당(reversionary bonus), 현금 보너스(cash bonus), 지연이자(deferred bonus)
- 3) 급부의 조건 및 범위
- 4) 특약의 세부내용(details of any riders)
- 5) 보장개시일 및 만기일
- 6) 보험료, 보험료 납입 주기, 보험료 납입 면제 기간, 보험료의 마지막 분납금, 보험료 미지급의 결과, 해약환급금

41) IRDA(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with Schedule 1.

42) IRDA(Investment) Regulations 2008(Section 5), Exposure/Prudential Norms.

43)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 7) 보험증권을 보험료가 완납된 보험증권(paid-up policy)⁴⁴⁾으로 전환, 해약, 해지증권의 부활(non-forfeiture)
- 8) 면책사항
- 9) 명목가치, 약관대출, 대출 이자율
- 10) 보험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⁴⁵⁾

모든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보험증권에 표준적인 중재조항 및 보험옵부즈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⁴⁶⁾ 보험증권은 분쟁의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관할법원이 분쟁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재판관할조항(jurisdiction clause)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어와 힌두어로 되어 있고 특정지역에서는 지역 언어로 되어있으며, 분쟁에서는 영어의 사용을 우선한다.

2010년 7월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회사에 대한 불만의 구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불만의 분류와 정의 통일 그리고 불만구제를 위한 총 처리시간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불만구제 정책을 보험감독원(IRDA)에 제출해야하고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44)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지급을 중단해도 기본예치금이 보험금을 감당하면 계속 종신보장을 해주는 양로보험 증권, 혹은 예치금이 잔여기간의 보험료를 충당할 정도로 충분하면 만기 시 남은 예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증권이다.

45) Further requirements were provided under the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Amendment) Regulations 2002 of 16 October 2002.

46)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2) 보험감독원의 중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감독원(IRDA)은 중재의 권한을 갖는다.⁴⁷⁾ USD 44,004(INR 2mn) 이하의 분쟁에 대해서는 보험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⁴⁸⁾ 보험감독원(IRDA)은 옴부즈만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3) 보험옴부즈만

보험옴부즈만 기구는 1998년 보험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해결하고 불만의 보상과 관련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1998년 정부가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만은 보험감독원(IRDA), 생명보험공단(LIC), 손해보험공단(GIC), 중앙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가 보험산업, 시민단체, 법조계로부터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운영비용은 보험위원회 참여회사로부터 충당된다. 전국에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에서 지역별로 임명한 12명의 옴부즈만이 있다.

보험옴부즈만은 조정(conciliation)과 지급판정(Award making) 기능을 갖는다. 보험옴부즈만은 보험회사에 대한 개인보험의 불만사항을 접수받는다. 이의제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불만의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부분 혹은 전체적인 지급거절(repudiation of claims), 2) 보험기간 중 보험료에 관한 분쟁, 3)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분쟁과 같은 경우에 보험증권 문구의 법적 이해에 관한 분쟁, 4) 보험금 청구건 해결의 지연, 5) 보험료의 수령 후 소비자에게 보험서류의 미발급 등이다.

47)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48) 관련 자료는 IRDA(<http://www.irda.gov.in/Ombudsman>)로부터 얻을 수 있다.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ombudsman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안을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제시한다. 소비자는 중재안이 만족스러울 경우 15일 이내에 문서로 답장을 한다. 보험계약자가 ombudsman의 결정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민사법원(civil court) 혹은 소비자법정(Consumer Court)⁴⁹⁾에 제소를 할 수 있다(Consumer Protection Act 1986).

ombudsman의 결정은 보험회사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ombudsman의 결정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면 불만접수가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ombudsman에 불만 접수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 생명보험에서 5,753건의 불만이 ombudsman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4) 냉각기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간의 free look으로 알려진 냉각기(cooling off period)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⁵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15일간의 냉각기 동안에 보험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검진료와 같은 계약당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

49) 인디아에 있는 특별한 목적의 법정으로 소비자 불만을 담당한다.

50) IRDA(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Section 6 (2)).

바. 영업규제

1) 보험료 지급방법

보험료 납부방식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양하게 허용되어 있다.⁵¹⁾ 인디아는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산이체(e-transfer), 자동이체(direct debit), 은행환어음(banker's draft)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령한 뒤부터 보장이 시작되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송금액이 보험회사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부터 무효(void ab-initio)인 계약으로 간주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의 계속은 보험계약 조건에 달려있다.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은 대개 인디아 화폐(INR)로 표기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인디아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경우 보험증권은 다른 나라의 화폐단위로 표기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인디아 화폐(INR)로 보험료를 지급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에서 거주를 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화폐로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은 거주기간에 기초하여 '비례배분방식(pro rate basis)'으로 지급한다.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그레이스(grace) 기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시장 관행으로는 30일이다.

2) 독립대리점 및 회사대리점

대리점에 관한 규정은 대리점 자격요건의 강화, 시장의 안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2000년에 보험감독원(IRDA)은 독립대리점(Insurance Agents)에 관한 규정을 제정⁵²⁾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립대리점 혹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51) IRDA(Manner of Receipt of Premium) Regulations 2002.

52) IRDA(Licensing of Insurance Agents) Regulations 2000.

IRDA(<http://www.irda.org.in>)에서 신청양식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리점(composite insurance agent) 영업면허를 얻고자 하는 자, 면허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감독원(IRDA)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보험감독원(IRDA)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고 수수료는 250루피(rupees)이며, 최근 수수료가 인상되었다.⁵³⁾

독립대리점 면허의 발급 및 갱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독립대리점의 경우 승인된 기관에서 적어도 100시간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겸영대리점의 경우는 150시간이다.

회사대리점(corporate agents)⁵⁴⁾ 면허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⁵⁵⁾ 회사대리점을 위해 요구되는 면허조건, 교육요건을 규정하고, 은행과 대부업체(lending institutions)에게 회사대리점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회사대리점의 면허에 관한 지침이 빈번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⁵⁶⁾

보험감독원(IRDA)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계인 시장(intermediary market)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들 사이에 독립대리점(agent)과 회사대리점(corporate agents)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⁵⁷⁾ 보험감독원(IRDA)은 이동이 있을 경우 현재의 보험회사로부터 '비반대 증명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받도록 하였다. 비반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한 보험회사에 적어도 3년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⁵⁸⁾ 그리고 보험상품과 보험계약의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자 목록을 현재의 보

53) Circular No,011/IRDA/Brok-Comm/Aug-08 of 25 August 2008.

54) "Corporate Agent" means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as specified in clause (i);
(i) "Person" means~
(i) an individual; (ii) a firm; or (iii) a company formed under the Companies Act, 1956 (1 of 1956), and includes a banking company as defined in clause (4A) of section 2 of the Act.

55) IRDA(Licensing of Corporate Agents) Regulations 2002.

56) Circular No,IRDA/CAGTS/CIR/LCE/039/03/2010 of 2 March 2010;
Circular No,IRDA/CAGTS/CIR/LCE/48/03/2010 of 10 March 2010.

57) Circular No,31/IRDA/CA/CIR/Sep-09 of 2 September 2009.

58) Circular No,31/IRDA/CA/CIR/Sep-09 of 2 September 2009;
Circular No,IRDA/CAGTS/CIR/LCE/092/06/2010 of 7 June 2010.

험회사로부터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0년 11월부터 보험증권의 첫 면에 큰 글씨(14 of Times New Roman)로 대리점의 세부사항을 표기해야 한다.⁵⁹⁾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2) 중개사

인디아에서 보험 중개사(insurance broker)란 보수를 목적으로 보험계약자 편에서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⁶⁰⁾ 원수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겸영보험 중개사(composite broker), 재보험 중개사가 있다. 겸영보험 중개사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는 중개사를 말한다.

원수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그리고 겸영 중개사(composite broker)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계약자의 사업 및 리스크관리 성향에 대한 세부정보의 획득
- 2) 계약자의 사업 및 계약인수 정보의 숙지 및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
- 3) 적절한 보험보장 범위 및 조건의 조언
- 4) 보험시장에 대한 세부 지식의 숙지
- 5) 보험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요구계약인수 정보 제공
- 6) 계약자로부터 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 7) 보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지원
- 8) 보험컨설팅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
- 9) 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상 지원
- 10) 보험금 청구기록에 관한 관리

59) Circular No,IRDA/CAD/CIR/AGN/137/08/2010 of 25 August 2010.

60) IRDA(Insurance Brokers) Regulations 2002.

재보험 중개사의 경우 계약자가 원수보험회사라는 점, 그리고 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라는 점이 원수보험 중개사와 다를 뿐 내용은 다른 점이 없다. 다만, 재보험회사의 선정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될 뿐이다.

원수보험 중개사(direct broker), 겸영 중개사(composite broker), 재보험 중개사의 면허는 각각 취득해야 한다. 면허는 보험감독원이 중개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보험중개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요구자본을 충족시켜야 한다. 원수보험 중개사는 5,000,000루피, 재보험 중개사는 20,000,000루피, 겸영 중개사는 25,000,000루피이다. 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의 경우는 자본(equity shares)의 형태로 충족시킬 수 있다.

3) 보험계약의 불연속 혹은 철회

보험감독원(IRDA)은 보험계약의 철회 혹은 불연속, 갱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발표하였다.⁶¹⁾ 이 규정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보험기간, 해약, 갱신(해약 후 최소 2년), 대출 기간 및 조건, 가격, 보험계약의 고려사항 등 보험감독원(IRDA)에 제출해야 할 세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사. 광고 및 공시

광고 및 공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가고 있다. 보험회사는 신문, 옥외광고, 라디오, 텔레비전, 전단지, 웹사이트 등 모든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⁶²⁾

보험감독원(IRDA)은 2010년 1월 보험회사의 공시제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

61) IRDA(Treatment of Discontinued Linked Insurance Policies) Regulations 2010 of 1 July 2010.

62) IRDA(Insurance Advertisements and Disclosure) Regulations 2000;
IRDA(Insurance Advertisements and Disclosure)(Amendment) Regulations of 1 July 2010.

였다.⁶³⁾ 이 공시지침은 궁극적으로 산업 성장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시장규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profit and loss account), 수입계정(revenue account), 주요 분석적 비율을 1년에 2번 전국에 발간되는 신문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가적으로 보험회사의 구체적 재정상태를 자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회계감사 결과와 공시된 재정상태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아. 지배구조

보험감독원(IRDA)은 2009년 1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2010년 1월 수정안을 발표하였다.⁶⁴⁾ 이 최종안은 보험회사의 ‘좋은 지배구조’에 관한 척도(measures)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자.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점차 완화될 조짐에 있다. 1999년 법률은 해외 투자자의 인디아 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26%로 설정하였다. 이규제로 인해 인디아에 있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재경부장관(finance minister)은 2010년 9월 해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도를 49%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2010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외보험회사의 인디아 지점(branches)은 인디아 시장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Insurance (Amendment) Act 2002). 인디아는 보험영업을 위해서는 합

63) Circular No,IRDA/F&I/CIR/F&A/012/01/2010 of 28 January 2010.

64) Circular No,IRDA/F&I/CIR/F&A/014/01/2010 of 29 January 2010.

작회사의 형태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주식회사만이 허용되고 있다.

이외에 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급여력규제, 영업활동규제, 조세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등은 모두 인디아 자국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표 IV-2〉 인디아 투자비율 규제

투자 대상	투자 비율
1. 중앙, 주정부 및 기타 인가 채권/증권	30%
(a) 주정부	20%
(b) 주정부 및 기타	10%
2. Infrastructure, Social Sectors	10%
3. Housing(주택)	5%
4. Private Sector	55%
(a) Equity, Preference Share	30%
(b) Other than approved investment	25%

「보험감독원법(IRDA)」은 계약자의 펀드가 인디아 외부로 유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IRDA Regulation 2000). 추가적인 세부규정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규정으로 인하여 해외의 인디아 투자회사들은 펀드의 투자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변액보험(ULIP) 상품의 투자내역서를 분석해 보면 규정된 투자비율 대로 펀드가 투자되고 있다.

차. 특별계정

보험감독원(IRDA)은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 가입자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디아의 보험회사들이 변액보험보다는 저축성보험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변액보험상품의 수수료 한도를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총수익(gross yield)과 순수익(net yield)의 차이가 300 basis points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⁶⁵⁾ 그리고 펀드 운영수수료가 135 basis points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10년이 넘는 계약의 경우 총수익(gross yield)과 순수익(net yield)의 차이가 250 basis points를 넘지 않아야 하고, 펀드 운영수수료가 135 basis points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변액보험계약이 5년차 이후에 있을 경우 해약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보험감독원(IRDA)은 2010년 6월 변액보험의 고착화 전략기간(lock-in period)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⁶⁶⁾ 그리고 모든 변액보험상품은 사망보장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대출은 금지하였다.⁶⁷⁾

한편, 2010년 인디아 증권위원회(SEBI: 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14개의 생명보험회사에게 변액보험의 광고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권위원회(SEBI)는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이라기보다는 투자상품이므로, 「SEBI Act 1992」에 따라 등록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감독원(IRDA)은 이러한 조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정에서 보험감독원(IRDA)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권위원회(SEBI)의 금지조치를 효력 상실하게 하였다.⁶⁸⁾

카. 조세

1) 보험료에 대한 조세

인디아에서 생명보험료와 의료보험료의 세율은 2009년 현재 위험보험료의 10.3%이다.⁶⁹⁾ 이것은 서비스세 10%와 서비스세의 3%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합한 비율이다. 서비스세는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에게 부과된다. 이것은 피보험자로부터 거수되고 보험회사는 이를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을 진다.

65) Circular No.20/IRDA/Actl/ULIP/09-10 of 22 July 2009;

Circular No.29/IRDA/Actl/ULIPs/2009-10 of 20 August 2009.

66) Circular No. IRDA/ACT/CIR/ULIP/102/06/2010 of 28 June 2010.

67) Circular No. IRDA/ACTL/CIR/ULIP/071/05/2010 of 3 May 2010.

68) Order Ref 56/IRDA/Legal/ULIP-MF.

69) Government Notification 8/2009-ST.

서비스세는 예외가 있다. 주로 손해보험상품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자영업 여성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

해외에 지급된 원수 혹은 재보험료에 대한 면세규정(Withholding Taxes)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자문료, 위임수수료(commission payments) 등으로 지급한 부분은 면세이다. 보험위임수수료 한도는 현재 INR 5,000(USD 110)이고 2010년 동안에 INR 20,000(USD 440)로 상승할 전망이다.

2) 보험회사에 대한 조세

인디아의 보험회사들은 다른 부문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세 대상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외 회사는 40%의 법인세를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세율의 3%에 해당하는 교육세(education cess)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 총소득이 USD 220,022(INR 10mn)를 초과할 경우 인디아 회사는 7.5%의 부가금을 내야한다. 해외회사는 이보다 낮은 2.5%를 지급해야 한다.

타. 예금자보호제도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펀드에 관한 내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2. 말레이시아

가. 감독체계

1)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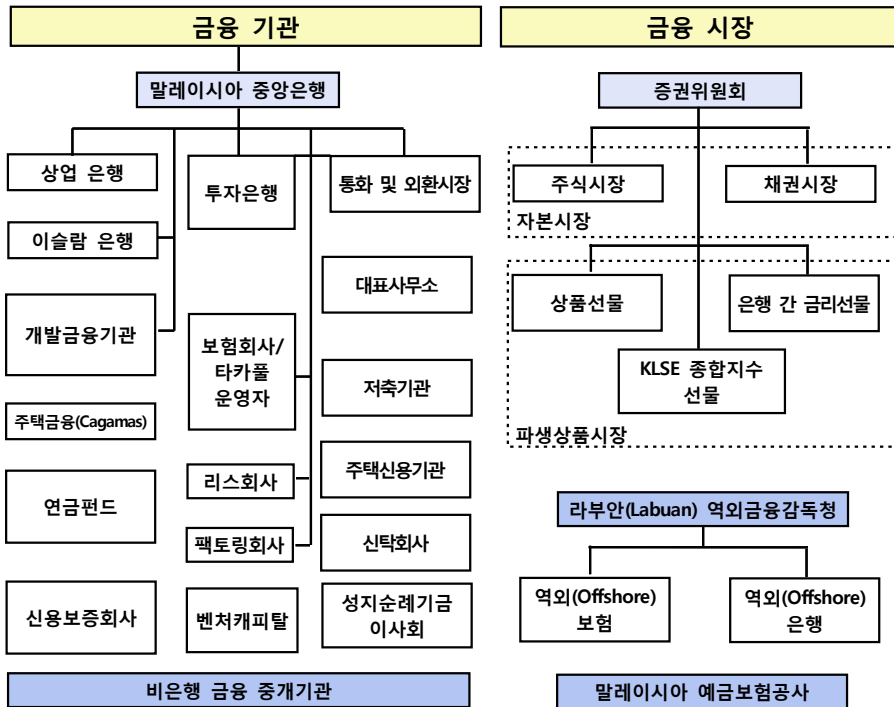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금융감독체계는 크게 중앙은행(BNM: Bank Negara Malaysia)과 증권위원회(Malaysia Securities Commissions)가 양분하고 있다(〈그림 IV-1〉참조). 1958년 1월 26일 설립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06년 11월부터 금융 부문별 분리규제에서 기능별 통합 규제로 이행하여 보험업 및 금융업의 규제 및 감독을 맡고 있다. 중앙은행 설립의 근간이 되었던 1958년에 제정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1958)」은 효력을 상실하고 2009년 11월 25일 제정된 새로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법(Central Bank of Malaysia Act 2009)」으로 대체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중앙은행법」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 및 금융 안정성의 강화를 중앙은행의 주된 목적으로 명시하였다. 중앙은행은 정부 출자로 세워져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에게 통화 및 금융정책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한편 증권위원회는 1993년 3월 1일 「증권위원회법(Securities Commission Act 1993)」으로 설립되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권한을 행사한다. 재무부 장관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2010년 제정된 「라부안 금융서비스 및 증권법(Labuan Financial Services and Securities Act; Act 704)」은 1996년 개정된 「역외보험법(OIA: Offshore Insurance Act 1990; Act 444)」을 대체⁷⁰⁾하여 동부 말레이시아 북부해안에서 떨어진 라부안 경제자유구역(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ial Center)에 대한 면허와 규제를 관장한다. 라부안 경제자유구역에서 금

70) 「역외보험법」 외에도 「라부안 신용회사법(Labuan Trust Companies Act 1990, Act 442)」, 「역외은행법(Offshore Banking Act 1990; Act 443)」, 「라부안 역외증권법(Labuan Offshore Securities Act 1998; Act 579)」 등을 대체한다.

용감독은 라부안 금융감독청(LFSA: Labuan Offshor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담당한다. 라부안 금융감독청의 면허를 갖고 활동하는 보험회사는 2011년부터는 소정의 규정을 만족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외의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IV-1〉 말레이시아 금융감독체계



주: KLSE 종합지수(Kuala Lumpur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
자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2009년 4월 중앙은행은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1년 발표된 금융산업 종합계획(Financial Sector Master Plan)의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의 점진적 개방과 일치하고 지방보험회사의 외국인 주식보유 제한의 완화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산업 종합계획에는 보험산업 개발을 위한 10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준비된 보험회사의 인터넷 판매채널 사용을 허가하여 보험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도를 제고-현재 실행 면에서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 보수체계에 관한 융통성 있는 규제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채널로서의 방카슈랑스 채널의 성장을 촉진-주로 생명보험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3) 법적 최소납입자본금의 상향
- 4)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보험회사 이사진과 선임 경영진의 적격성 강화
- 5) 보험 대리점의 교육요건을 상향
- 6)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국(Financial Mediation Bureau)의 설치
- 7)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기관이 원수 보험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8) 보험중개인, 보험회사, 타카풀 운용사 등의 활동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모범규준 Best Practices Framework(BPF) 적용

2) 보험규제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산업을 규제하는 법규는 1996년에 제정된 「보험업법(Act 553)」과 1984년에 제정된 「타카풀법(Act 312)」이다. 「보험업법」은 1997년 1월 1일 보험규제(Insurance Regulations 1996)와 함께 발효되어 전통적 보험산업에 적용되며, 「타카풀법」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해지는 이슬람 보험인 타카풀을 규제한다.

중앙은행에는 보험 및 타카풀 감독국⁷¹⁾이 있어 금융산업개발과(Financial Sector Development Department), 금융감시과(Financial Surveillance Department), 금융건전성정책과(Prudential Financial Policy Department), 소비자보험 및 영업행위과(Consumer and Market Conduct Department), 규제감독과(Regulation and

71) 2011년 3월 15일 현재 국장(director)은 Yap Lai Kuen이다.

Supervision Department)의 5개과(departments)를 두어 보험 및 타카풀 산업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규제와 관련된 법규는 통상 중앙은행(BNM)의 규제지침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말레이시아에서 보험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규제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생명보험사업의 모범규준(The Code of Good Practice for Life Insurance Business 1998)은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지침
- 2)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체계(The Prudential Framework of Corporate Governance for Insurers 2000)는 보험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침
- 3) 보험산업 내 모국어 사용지침(The Usage of National Language in the Insurance Sector 2002)은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국어인 Bahasa Malaysia를 모든 약관, 계약서, 보증서 등의 작성에 영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지침
- 4) 보험 및 금융보증보험 규제(The Insurance(Financial Guarantee Insurance) Regulations 2001)는 최소납입자본과 비상준비금 등에 관한 규제
- 5) 보험회사에 계약자의 민원사항을 다루기 위한 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며 소비자 민원의 공정하고 효율적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명시한 2003년의 민원부서 설치(Settling up of a Complaints Unit)에 관한 규제지침
- 6) 2004년 10월 4일자에 발표되어 같은 해 10월 31부터 발효된 생명보험회사의 동태적 지급여력 평가(DST: Dynamic Solvency Testing)의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JPI/GPI 최종지침
- 7) 2005년 1월에 발표된 생명보험산업의 민원과 관련한 금융중재사무국(Financial Mediation Bureau)에 관한 규제지침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규제로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87)」에 의해 버스와 택시를 포함한 공공교통수단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책임(passenger liability)

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개인승용차에는 임의보험으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외에 의무보험으로는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변호사, 보험중계사, 재무자문업자를 위한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외국인 노동자 보증이 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법」으로 보장되며, 변호사와 보험중계사는 MYR 500,000(USD 141,243)을 재무자문업자는 MYR 200,000(USD 56,497)와 deductibles를 제외한 최소한의 전문가 배상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고용인은 고용하는 각각의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증 또는 은행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보험은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예치 또는 은행 보증도 가능하다.

회계기준 규제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회계기준위원회(MASB: Malays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재무보고법(Financial Reporting Act 1997)」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말레이시아의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2005년 1월 개정으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회사는 MASB가 인정한 회계기준이나 MASB가 인정한 회계기준 공인기관에 의한 승인된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들 적용가능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거의 일치한다. 이 밖에도 보험 등 금융상품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자금세탁방지법(The Anti-Money Laundering Act 2001; Act 613)」이 200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나. 면허(조건, 요구서류, 절차)

1) 「보험업법」상의 면허관련 조항

말레이시아의 보험면허와 관련된 규정은 1996년 제정된 말레이시아 「보험업법」 제2편에서 다루고 있다. 보험업의 인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무부 장관이 간여하며 그 외 중계업의 인가 등은 중앙은행이 관장한다.

말레이시아 「보험법」은 보험사업의 종류를 크게 생명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

업의 둘로 나누어 규정하며 재보험도 각각의 영역에서의 보험사업으로 간주한다(4조). 하지만 고용자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피고용자의 퇴직 또는 미래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고용의 종료 시 사용할 목적의 재무적 준비는 보험사업으로 간주하지 않고, 1966년의 「사회법(Societies Act)」 2부(Part 2)2장에 따른 상호 부조사회가 운영하는 사업도 보험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수출 보증보험에 의한 신용보증보험 및 수출보증도 보험사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5조).

중앙은행은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의 사업과 보험산업의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하여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가 지정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링깃(ringgit)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6조).

중앙은행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과 지정된 조건의 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면허를 가진 보험회사도 확정형 연금이나 자산연계형 보험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링깃(ringgit)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7조).

동 법에 의한 면허 없이는 누구도 보험사업(insurance business), 보험중계업(insurance broking business), 손해사정업(adjusting business), 재무자문업(financial advisory business)을 할 수 없으며(9조), 각각에 대하여 그렇게 칭할 수도 없다(10조).

위반 시 보험회사는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 보험중계업자는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 손해사정업자는 1년의 징역 또는 백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 재무자문업자는 2년의 징역 또는 2백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면허소지자를 제외한 누구도 보험(insurance), 어슈어런스(assurance), 보험인수자(underwriter)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이 법의 재무자문을 위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는 재무자문업자(financial advisor)라는 명칭과 이와 유사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용어 및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외국어를 쓸 수 없다. 위반 시 50만 리깃의 벌금에 처한다(11조).

면허를 받은 전문 재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있는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를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면허가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조건이나 의무사항에 따라 질병에 대한 보장만을 하거나 의료비만 담보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유효한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12조). 재무부 장관은 보험사업 영위에 필요한 면허를 부여하며,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재무자문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면허를 부여한다(13조).

보험사업 면허는 공개기업(public company)만 신청할 수 있고,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재무자문업에 대한 면허는 기업(company)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재보험업 면허는 법인(body corporate)만 신청할 수 있다(14조). 또한 중앙은행이 지정한 소정의 양식과 형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15조).

보험사업을 하고자 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신청을 받은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관에 면허부여 여부 및 필요 시 면허부여에 대한 조건에 관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의 건전한 금융구조에 도움이 되고 면허부여로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지를 고려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재무부 장관의 결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16조).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과 재무자문업에 관한 면허 신청을 받은 중앙은행은 조건부로 또는 조건 없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면허에 중앙은행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17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중앙은행에 소정의 면허료를 납부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주된 사업소재지 이외의 말레이시아 내 사무소를 만들기 위한 36조에 제시된 대로 중앙은행의 승인을 얻을 때의 수수료와 매년 1월 31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면허와 주된 사업소재지 및 모든 사무소에 대한 연간 수수를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된 비율이나 액수에 따라 중앙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5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21조).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 보험중계업협회 및 손해사정업협회 등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정관(constituent document)을 가진 협회에 속하지 않고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 회원 명부는 중앙은행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고칠 수 없다. 위반 시 50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은행은 협회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거나 못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2조).

재무부 장관은 보험면허, 중앙은행은 보험중계면허, 손해사정면허, 재무자문면허에 어떤 때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면허에 부여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23조). 면허는 중앙은행이 정한 형태여야 하며, 보험면허는 재무부 장관이, 보험중계면허, 손해사정면허, 재무자문면허는 중앙은행 총재가 부여해야 한다(24조).

면허 소지자는 24조에 의한 면허의 사본을 주된 사업소재지에 잘 보이는 위치에 공시해야 하고, 중앙은행이 서면으로 면제하지 않은 한, 전자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사무소에도 공시해야 한다(25조).

또한 중앙은행이 서면으로 면제하지 않은 한 모든 면허소지업자는 사업소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읽을 수 있는 국가 공용어로 된 페인트나 간판으로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 이름과 'insurer berlesen', 'broker insurers berlesen', 'adjuster berlesen' 또는 'penasihat kewangan berlesen'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사업면허인지 명확히해야 한다(26조).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면허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주요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 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면허를 받은 사업을 시작하고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가 12개월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 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27조).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말레이시아 밖에서 면허받은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단, 동 법의 면허와 함께 「증권산업법(Securities Industry Act 1983; Act 280)」과 「선물산업법(Futures Industry Act 1993; Act 499)」에 의한 면허도 소지한 자문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28조).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된 수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사전 서면승인을 얻지 않고는 정관을 비롯한 면허의 세부사항을 개정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정관 개정 후 30일 이내에 이사 중 한 명의 법정 공시에 의해 확인된 개정 정관의 세부사항과 개정정관의 사본을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29조).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야 하며 중앙은행의 서면에 의한 범위와 기간을 정한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면허받은 사업의 일부라도 타인에게 맡길 수 없다.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동의된 비율의 사업지분을 가지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에 면허를 받은 사업을 위탁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거나,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보험을 인수할 수 있다(30조).

재부부 장관은 중앙은행의 권고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를, 중앙은행은 보험중계업자, 손해사정사, 재무자문업자의 면허를 다음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 (a) 보험회사가 면허를 취득한 사업에 대하여 더 이상 새로운 보험계약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 (b) 보험중계업자가 보험중계업을 중단한 경우
- (c)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을 중단한 경우
 - (c-a) 재무자문업자가 재무자문업을 중단한 경우
- (d)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 (e) 이 법 또는 면허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근거한 중앙은행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그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해도 취소)
- (f) 면허를 받은 회사 또는 그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되거나, 잘못 유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추거나 공시를 안 한 경우

- (g) 면허를 받은 회사 또는 그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다른 성문법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기망(dishonesty)과 관련
된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 (h) 면허를 받은 회사가 재무적 또는 다른 이유로 이 법에 의한 정한 의무사항
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
- (i) 채권자와 협정(composition or arrangement)을 체결하거나 제안한 경우
또는 청산에 들어가거나 해산을 명령 받은 경우
- (j) 면허를 받은 회사의 자산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 (k) 면허를 받은 회사의 자산소유가 부채의 변제를 위해 사채권자(debenture
holder)에 넘어간 경우
- (l) 면허취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중앙은행의 권고에 의해 재무부 장관은 사업영위에 적절한 재보험계약이 효
력이 없거나, 재보험계약에 대한 57조3항에 따른 중앙은행의 서면 지시를 지키
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가 제안된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담은 서면 통보를 면허소지 회사
에 보낸다. 면허소지 회사는 통보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그 입장을
표명한다. 14일 이내에 회사의 입장표명이 중앙은행에 가지 않으면, 사안에 따
라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은 서면통보로 면허를 취소한다.

회사의 입장표명이 전해지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중계업, 손
해사정업을, 재무자문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회사의 입장을 검토한 후에 서
면으로 그 결정을 통보한다. 면허소지 회사의 입장표명이 없는 경우의 면허취
소의 결정이나 입장표명이 있는 경우의 어떠한 결정도 통보로부터 14일 전에는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이 중계업, 손해사정업을, 그리고 재무자문
업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재
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은 서면통보의 내용에 따라 면허에 제약 또는 조건을

더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공보에 가능한 빨리 게재되어야 하며 공보게재의 지연 또는 실패가 면허취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1조).

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서면 면허취소를 받은 지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중계업자, 손해사정업자, 재무자문업자는 중앙은행의 서면 면허취소를 받은 지 14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32조).

면허취소가 효력을 발휘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위반 시 보험회사는 위반 시 10년의 징역, 1000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보험중계업자는 3년의 징역, 300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손해사정회사는 1년의 징역, 100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재무자문회사는 위반 시 2년의 징역, 200만 링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각각 받는다. 면허의 취소는 회사의 권리나 책임의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면허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중앙은행의 권고에 의한 재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중앙은행이 만족할 수준으로 채무를 청산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계속 행사하는 데 있어 계속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33조).

중앙은행은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의 명단을 매년 늦어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리스트에서 신규 또는 삭제되는 회사를 그 때 그 때 게재하여야 한다(34조).

2) 지점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3장 “면허소지자의 지점 및 사무소(Subsidiary and Office of Licensee)”는 보험관련 면허소지회사의 국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로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의 법인인 면허소지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지사를 만들거나 인수하지 못 하며, 위반 시 3백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35조). 또한 중앙은행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 말레이시아의 법인인 면

허소지회사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사무소를 두지 못하며, 면허소지 외국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위반 시 백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36조). 35조 및 36조의 승인을 위한 지원서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37조).

3) 최근 인가사례 및 현황

최근의 인가사례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0년에 1984년에 제정된 「타카풀법(Act 312)」에 의해 가정 타카풀(family Takaful) 산업의 육성을 위해 4개의 가정 타카풀을 인가하였으나, 향후 더 이상의 인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말레이시아 보험산업으로의 진출은 기존 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인수대상 보험회사와 인수희망자 모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중앙은행이 검토 후 원칙적인 승인을 할 경우 양자 사이의 인수관련 협상이 정해진 기간을 두고 시작된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된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46개의 보험회사와 14개의 타카풀 회사가 1996년 「보험업법」과 1984년 「타카풀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하여 각각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중 외국 보험회사는 18개이며 외국 타카풀 회사는 4개이다.

다. 재무건전성규제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1억 링깃(약 3천만 달러)의 최소납입자본⁷²⁾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면허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내에 항상 부채액수보다 1억 링깃을 초과하는 최소잉여자산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 링깃의 벌금이 부과된다.

72) 2004년 12월 31일부터는 타카풀 사업자에게도 100만 링깃의 최소납입자본을 요구한다.

면허를 받은 보험회사는 납입이 완결되지 않은 자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지나 광고 또는 공식적인 발간물을 낼 수 없다. 위반 시 십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

최소 솔벤시 마진(Solvency margin)은 면허소지 원수보험사와 지역법인인 전문재보험사의 경우는 5천만 링깃이며, 외국의 전문재보험사의 지점은 1천만 링깃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자산은 BNM이 지정하는 인정자산(admitted assets)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2003년에 개정된 「보험업법」 46조2항은 솔벤시 마진에 필요한 투자규제에 융통성 부여하였으며, 보험회사 RBC(Risk Based Capital) 체계⁷³⁾가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개별 보험회사의 규제적 요구자본(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과 노출된 위험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을 위한 완충자본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상이한 리스크 수준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현재 타카풀 보험회사에도 유사한 규제를 개발 중에 있다.

라. 지배구조

1) 소유

보험 및 보험관련 회사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규제로, 공개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Securities Berhad)의 주식분산 규제(적어도 25%의 총 상장주식은 최소한 1,000명의 주주에게 인당 100주 미만으로 소유)를 따라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에서는 제6장 “면허소지자 관리(Management of Licensee)”를 통해 5% 규제와 같은 지분소유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장관이, 보험중계회사, 손해사정회사 또는 재무자문회사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인(associate)의 지분을 합하여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이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73) 2007년 4월부터 지급여력(Solvency) 체계와 함께 병행하여 시행된다.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상기 서면승인을 받았거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재무부 장관 또는 중앙은행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해당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다. 상기 조항에 따른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은행에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은행은 (a)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지배주주가 신청한 경우 권고와 함께 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재무부 장관은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며, (b) 다른 모든 보험소지회사나 다른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의 징역이나 3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67조).

67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하면, 중앙은행은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다음의 제한과 금지사항을 부과하는 기초적 서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주식의 양도 및 양도계약을 금지 또는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도, 미발행 주식이 발행 시 생기는 권리의 양도를 금지, (b) 주식과 관련한 의결권의 제한, (c) 해당 주식과 그 소유인과 관련한 주식의 발행의 금지, (d) 청산을 제외하고, 면허소지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그 주식으로 하는 변제의 금지한다.

상기 조항에 따른 기초적 명령은 실행가능하면 위반 당사자에게 내려지고 중앙은행에서 게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중앙은행이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로 게재된다. 기초적 명령은 위반 당사자, 임시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명령이 적용되는 사람 및 명령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력을 지닌다(68조).

2) 이사의 자격

이사, 대표이사, 임원 등 보험회사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선임에 있어도 「보험업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중앙은행이 제안된 후보에 대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하지 않고서는 면허소지보험회사와 그 지배주주는 이어나 대표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며, 면허소지 재무자문회사는 그 대표를 임명하지 못한다.

또한 보험소지회사와 그 지배주주는 다음의 임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이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a) 71조에 따른 부적격자
- (b) 해당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 (c) 보험소지회사의 외국인 주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이외에 직무수행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자

위반 시 3년의 징역, 3백만 링깃 또는 둘 다의 처벌에 처한다. 또한 중앙은행은 면허소지회사 또는 그 지배주주가 이사, 대표이사, 대표의 지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청구하는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정보를 정할 수 있다(70조).

또한 이사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종업원의 부적격성에 대해 말레이시아 「보험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임직원의 자격을 규제하고 있다.

- (1) 보험면허소지회사 및 그 지배주주는 다음의 경우, 이사, 대표이사 임원 비서 또는 경영과 관련한 다른 종업원으로 임명해서도 안 되고, 이들은 임명을 수락해서도 안 된다.
 - (a)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파산결정을 받은 자, 채무유예 등을 받은 자
 - (b) 사기 또는 부정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범죄가 말레이시아 내외에서 증명된 경우
 - (c) 이 법에 대한 위반이 증명된 경우
 - (d) 구류, 감호, 거주제한, 추방된 적이 있거나, 범죄의 예방이나 마약운반과 관련하여 제한이나 감호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e)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의 경영에 관한 임원, 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경우
 -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법인으로서는 청산된 적이 있는 회사
 - 59조에 따른 명령으로 면허가 이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가 된 적이 있는 면허소지회사
 - 「은행 및 금융기관법(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 1989)」 73조에 따른 명령으로 면허가 취소된 면허소지기관

- (2) 해당인이 (e)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되거나 직위에 있는 면허소지회사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 (a) 면허소지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에게 (1)(e)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고, 이에 재무부 장관이 중앙은행의 권고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면책을 줄 수 있다.
- (b) 면허소지 보험중계회사, 손해사정회사, 재무자문회사는 중앙은행에 앞의 항 (1)(e)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이에 중앙은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면책을 줄 수 있다.
- (3) (1)(b) 또는 (1)(c)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중앙은행이 서면으로 직무의 범위 및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 (4) (3)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의 기소일로부터 확정판결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 (5) 이 조항에서 ‘면허소지기관(licensed institution)’이란 「은행 및 금융기관법(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 Act 1989)」에서의 뜻을 따른다(71조).

이사나 직원이 그 자격과 관련하여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보직해임 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회사 등은 이에 따른 직무정지 등의 사실을 중앙은행에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즉, 70조(2)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인은 (a) 보직을 즉시 상실하고, (b) 면허소지회사는 해당인의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하며, 해당인은 어떠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보직상실이나 지명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의 벌금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72조).

- (1) 면허소지회사는 해당인이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한 사실과 이유를 직무정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 시 5십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 (2) 면허소지 재무자문업자는 해당인이 대표로서의 직무를 정지한 사실과 이유를 직무정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73조).

3) 이사의 의무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4장 “보험펀드와 주주펀드(Insurance Fund and Shareholder's Fund)”에 따르면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또는 채권기관과의 업무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직간접적으로 채권기관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기관과의 관계와 그 이해의 정도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에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54조).

면허소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계회사의 이사는 직간접적으로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직위를 갖거나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사실, 성격, 정도를 이사가 되고난 후 또는 이러한 직위를 갖거나 자산을 소유하게 된 후 열리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의 징역 또는 3백만 린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을 받는다(55조).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6장 “면허소지자 관리(Management of Licensee)”에 따르면 서면통보에 의한 말레이시아 법인인 면허소지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통보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구성원이 수탁자(trustee) 또는 우호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험소지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b) 수탁자로 보유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이름이나 원소유자와 그의 이해관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다른 특정 사항을 표시할 것

보험소지회사가 앞 절이나 이 절에 나온 사람을 통해 제3자가 보험소지회사의 의결권 또는 보험소지회사의 의결권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결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된 경우 보험소지회사는 서면으로 그 제3자에게 적절한 시

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제3자가 수탁자(trustee) 또는 우호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로 보험소지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b) 수탁자로 보유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 원소유자의 이름이나 원소유자와 그의 이해관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다른 특정 사항을 표시할 것

이 조항이 적용되는 면허소지회사 또는 다른 회사는 서면통지로 그 구성원에게 적절한 시간 내에 통지에 상술된 내용대로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소지회사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에 의한 의결권이 제3자가 그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계약 아래 있는지의 여부와 그럴 경우, 그 계약 및 계약당사자에게 세부내용을 알려야 한다.

아래 면책이 되는 조건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a)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b) 이 조항에 대한 준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상당한 거짓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고지하는 경우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100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이미 (a)의 고지되어야 할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증명하는 경우나 고지할 내용이 사소한 경우에는 면책된다(66조).

마.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2009년 4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2001년에 발표된 금융산업 종합계획(Financial Sector Master Plan)에서의 보험산업의 점진적 개방과 보험회사의 외국인지분보유 규제의 완화 등과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기존 외국투자자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으면 현지 회사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2009년 4월 발표한 금융산업 진흥책을 통해 외국자본의 보험회사와 타카풀에 대한 주식보유를 70%까지 허용하고 사안에 따라 보험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 70%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말

레이시아 보험시장 진출에 대한 장벽을 낮추었다.

보험과 타카풀의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 법인화된 외국보험 및 타카풀 회사는 이전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제한 없이 국내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국내에 법인화된 외국보험 및 타카풀 회사에 대한 방카슈랑스/방카타카풀 규제도 없다. 또한 보험 및 타카풀 회사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에서 보험회사 소유에 대한 제한은 보험회사, 보험중계회사, 손해사정회사, 재무자문회사와 같은 말레이시아 면허가 필요한 보험관련회사의 지분 5% 이상 보유/처분 시 재무부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점이 유일하다. 또한 지주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모두 보유할 수 있으나, 은행의 보험회사 보유는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자본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험회사 내지는 타카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다.

- 1) 70% 한도 내에서 기존 말레이시아 보험회사의 주식 확보
- 2) Malaysia International Islamic Financial Center⁷⁴⁾ initiative 아래 100% 외국자본의 국제 타카풀 운용사(International Takaful Operator) 설립
- 3) Labuan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Center⁷⁵⁾에 외국 보험회사의 지사 또는 지점 설립

대체로 말레이시아는 인종, 종교 등이 다양한 다문화 사회로 외국인 및 해외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 다수의 해외 보험회사들이 이미 진출해 있으며,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진출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74) MIFC(<http://www.mifc.com>).

75)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http://www.labuanfsa.gov.my>).

바. 특별계정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4장 “보험펀드와 주주펀드(Insurance Fund and Shareholder's Fund)”에 따르면 면허소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말레이시아 보험계약과 해외 보험계약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면허소지 외국 재보험 전문회사는 말레이시아 생명보험계약과 말레이시아 손해보험계약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펀드와 연결된 보험계약 또는 청구가 있어 보험채무가 존재하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펀드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반 시 5년의 징역 또는 5백만 링깃 또는 둘 모두의 처벌에 처한다.

분리된 펀드에 관한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작은 수의 해외 보험계약의 경우 면허소지 보험회사가 말레이시아 계약 및 해외 계약을 포함하는 하나의 보험펀드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보험사업의 내용 및 종류에 대해 분리된 보험펀드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반 시 1년의 징역 또는 백만 링깃의 벌금에 처한다(38조).

사. 조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05년 예산안을 통해 다른 신흥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의 새로운 통합 서비스세(GST)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실행준비 미비와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시행이 유보되었다. 이후 2009년도에 GDP의 7.9%에 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1년 하반기 또는 3/4분기부터 4%의 GST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재정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정치일정 등에 따라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이 면제되지만, 5,000링깃(약 1,500달러) 이상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은 계약당 10링깃(약 2.85달러)의 인지대가 부과되며 법인 보험료에는 5%의 서비스세가 부과된다.

부실보험사의 보험계약의무 이행을 위한 보험보증펀드(IGSF: Insurance

Guarantee Scheme Fund)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연간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의 1%까지 걷을 수 있지만 현재 0.25%를 걷고 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원수보험료의 1%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율은 2008년 26%, 2009년에 25%까지 낮아졌다. 자본규모가 250만 링깃(약 74만 달러) 이하의 현지 중소기업(SME)의 경우에는 최초 50만 링깃(약 15만 달러)까지는 20%의 세율로 이후는 일반적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라부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당거래를 하는 회사는 감사대상 계좌당 세전이익의 3%만을 과세하며, 선택에 따라서는 2만 링깃(약 5,900달러)의 정액납부도 가능하다.

과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단일과세 시스템(STS: Single Tier tax System)도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의해 제안되어, 현재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전 제도와 함께 적용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개인세율은 2010년도의 경우 9,000링깃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소득이 2,500링깃까지는 면세이나, 이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율이 1%에서부터 26%까지 높아지는 누진세제이며, 비거주자의 개인세율은 최고구간 세율인 2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거주 및 비거주자는 1967년 「조세법」 7조에 따른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있다.

또한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 연간 6,000링깃(약 1,800달러)까지의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연간 3,000링깃(약 900달러)까지의 교육보험 및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연간 1,000링깃(약 300달러)까지의 근로자펀드(ETF: Employees Provident Fund)를 통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등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도입되어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표 IV-3〉 말레이시아 개인소득 과세율

(단위: 린깃, %)

소득구간(MYR)	세율
0~2,500	0
2,501~5,000	1
5,001~20,000	3
20,001~35,000	7
35,001~50,000	12
50,001~ 70,000	19
70,001~100,000	24
100,001 이상	26

아. 예금자보호제도

말레이시아 보험업은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법(Malaysi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t 2005)」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상의 보험보증펀드(Insurance Guarantee Scheme Fund)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말레이시아 「보험법」 제14장 “보험보증펀드(Insurance Guarantee Scheme Fun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험계약과 관련이 있는 한 중앙은행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위한 각각의 보험보증펀드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다음에서 얻어진 수입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보험보증펀드에 적립할 수 있다(173조).

- (a) 면허소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걷은 부담금
- (b) 투자수입과 보험보증펀드의 자산운용수입
- (c) 보험보증펀드의 자산투자의 이익 실현
- (d) 보험회사의 청산에서 나온 자금
- (e) 175조에서 벌린 자금

(f) 기부금

(g) 211조2항에서의 벌금

중앙은행은 당분간 이 조항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보험보증펀드의 자금을 투자수익이 전액 보험보증펀드에 귀속되고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투자처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174조). 중앙은행은 또한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출처 및 조건에 한하여 보험보증펀드를 위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175조).

보험면허가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보증펀드를 위한 부담금을 매년 6월 말까지 또는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다른 날까지 재무장관의 승인 아래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비율 및 할부 방식에 따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위반 시 백만 린깃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은행이 전항에 따라 정하는 부담금 비율은 바로 선행하는 회계연도에 말레이시아 보험계약으로부터의 보험회사 원수보험료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회계자료를 87조1항에 따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은 원수보험료에 따라 조정되는 임시부담액을 부과한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받는 한 보험보증펀드에 대한 부담금은 지속된다. 원수보험료가 마이너스라도 부담금에 대한 환불을 없다. 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은 보증보험펀드에 대한 부채이다(176조).

재무부 장관은 그 재량에 따라 보험보증펀드에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 중앙은행의 부담금 부과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과를 재개시킬 수 있다(177조).

3. 인도네시아

가. 감독체계

1) 입법규제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보험업을 규제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본법은 1992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보험법 No.2/1992(Law of Republic Indonesia No.2/1992 concerning Insurance)」⁷⁶⁾이다. 동 법의 적용대상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보험중개인 등이며, 보험범위, 지배구조,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인허가, 소유권, 감독, 해산 등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보험업 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Government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73/1992 Concerning Insurance Business Conduct)」가 시행령으로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험법 및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설립인가, 경영요건, 재정상황 등에 관한 기타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표 IV-4〉 참조).

「재무부규정(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421~426/KMK」은 2003년에 모두 제정되었으며,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cy)의 인가요건, 적격성테스트(fit & proper test)의 기준, 특약재보험, (재)보험자의 재무건전성, 보험회사에 대한 감사(audit), (재)보험자에 대한 인허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주무장관령 No.KEP 3603/LK/2004(Decis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 No.KEP 3603/LK/2004)」은 보험회사의 이사와

76) 동 법에서는 보험회사를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조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인, 재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회계사 컨설턴트, 보험대리인으로 정의하고 있다(AXCO, 「인도네시아보험법」 No.2/1992 1조).

〈표 IV-4〉 인도네시아의 보험업에 관한 기타규정

규정명	주요 규제 내용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2003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설립 인가증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1/KMK/2003	보험회사 경영 요건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2/KMK/2003	보험과 재보험 일반요건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보조 보험회사 인가증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보험과 재보험 재정상황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3/KMK/2003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조사
Regulation of Chairman of Capital Market supervisory Agent No.PER-02/BL/2008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의 해결능력 측정
Decision of the Director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 No.KEP3603/LK/2004	보험회사의 이사진에 대한 적격성 테스트
Government Regulation No.74/PMK 012/2006	보험상품 판매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 준수

경영진에 대한 적정성 테스트에 관한 규제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정부규정(regulation) NO.74/PMK 012/2006」은 보험모집인의 보험상품판매 권유 시 계약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의 원칙(know-your customer principal)’을 주요 규제사항으로 소개하고 있다.

2) 감독규제

보험업의 규제 및 감독과 관련된 행정기관은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감독청(CMFISA: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⁷⁷⁾ 내 보험국(The Insurance Bureau)이다.

77) CMFISA는 재무부(the 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이며, 정부출자(government funding)기관이다(AXCO(2010), p. 41).

보험국은 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영역을 감독하며, 국내에 보험제도부(insurance institution), 재무분석부(financial analysis), 사업실행분석부(business conduct analysis), 감독부(supervision), 샤리아(sharia) 이상 5개의 부서가 있다.

보험국의 주요역할은 ① 보험규제 관련 법률의 고안(drafting insurance legislation), ② 보험산업의 이해와 인식을 증가시킬 교육혁신(educational initiatives to increa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insurance industry), ③ 보험업 감독 및 집행(supervision and enforcement)으로 요약된다.

한편, 통합금융감독이라는 글로벌 금융감독 추세에 부응하고자 ‘인도네시아 「은행법」 NO.23/1999’에 의거하여 2010년 말까지 새로운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the Institutio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설립하기로 되어있었다. 동 기관을 통해 은행업(bank), 보험업(insurance), 연금펀드(pension fund), 자본시장(capital market),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여신업(leasing)에 관하여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⁷⁸⁾

나. 면허

기본적으로 공영보험 및 근로자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⁷⁹⁾ 허가주체기관은 CMFISA의 보험국(Insurance Bureau)이다.

1) 인허가 절차⁸⁰⁾

보험회사가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허가당국에 의한 최초승인과 사업승인으로 나누어진다.

78) 2010년 4월에 금융감독청의 설립을 연기한다는 발표가 있는 후, 2010년 말 현재까지 설립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AXCO(2010),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업』, p. 42).

79) 「보험법」 1992/No.2.

80) 「보험업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

최초승인을 위해서 보험회사는 ① 공증된 정관, ② 조직 구조,⁸¹⁾ ③ 전문기술, ④ 일반적인 업무계획, ⑤ 합작회사 협정서(합작회사만 해당), ⑥ 판매상품내역서 및 재보험플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승인신청 후 1년 안에 최초승인이 이루어진다.

또한 최초승인 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① 주식회사 정관, ② 조직구조, ③ 납입자본금, ④ 전문기술의 입증자료, ⑤ 근로프로그램, ⑥ 판매상품의 증권서류, ⑦ 반환동의서(재보험회사만 해당), ⑧ 보험자와 대리점간의 대리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보험회사가 사업승인을 받고 3달 안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으면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보험영업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신사업의 허가

보험업을 이미 취급하고 있는 회사가 새로운 종류의 보험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재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① 보험계약(insurance policy)⁸²⁾ 샘플, ② 보험료 계산, 현금흐름, 배당 및 책임준비금에 관한 전문가의견서, ③ 향후 3년간의 계약심사계획서, ④ 재보험납입에 관한 사항, ⑤ 상품판매 및 상품안내책자에 관한 설명, ⑥ 이윤테스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⁸³⁾

재무부가 사업승인에 관한 통보를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보험업을 취급할 수 있다.⁸⁴⁾

81)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직의 형태는 국유회사(state-owned),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무추열회사(mutual), 상호회사(co-operative)이며, 상호회사는 샤리아 보험자(sharia insurer)도 포함된다(AXCO(2010), p. 46).

82) 보험증권에는 ① 보험기간, ② 보험금지급에 관한 설명, ③ 납입보험료금액 및 납입시기, ④ 보험계약의 취소사유 등이 포함된다(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8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84) 「보험업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No.73/1992.

3)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요구되는 최소 납입자본금의 현황은 <표 IV-5>와 같다. 특기할 점으로서 재보험(타카풀)회사는 보험(타카풀)회사보다 2배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표 IV-5>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단위: 십억 루피아)

구분	2008	2009	2010
보험회사	40.0	70.0	100.0
재보험회사	100.0	150.0	200.0
보험 및 재보험회사 브로커	1.0	-	-
타카풀(takaful) 보험회사	5.0	12.5	25.0
타카풀(takaful) 재보험회사	12.5	25.0	50.0

자료: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다. 재무건전성규제

보험국(Insurance Bureau)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하여 지급여력비율, 유보금, 투자, 기술적 자원,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계약조항 등과 관련된 요건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⁸⁵⁾

1) 지급여력비율⁸⁶⁾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는 12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을 유지해야한다. 이러한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적어도 100%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로 기준비율(120%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5) 「보험법」 1992/No.2 11조(1)항을 참조한다.

86)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2~424/KMK/2003.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자산은 투자자산과 비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투자자산은 현금예치금, 상장 혹은 비상장주식, 뮤추얼펀드, A등급채권, 정부채권, 부동산, 담보물, 보험증권담보대출 등이며, 비투자자산은 현금예치금, 보험료, 투자수익, 부동산, 컴퓨터하드웨어 등이다.

또한, 재무부고시⁸⁷⁾에 따라 위험중심자본(RBC: Risk-Based Capital)이 지급여력비율의 산정과정에 도입되었는데,⁸⁸⁾ 위험중심자본의 계산과정에서 자산디폴트리스크(assert default risk), 현금흐름미스매치(cash flow mismatch), 예상손실악화리스크(risk of deterioration in anticipated loss experience), 재보험리스크(reinsurance risk), 보험리스크(risk of insufficient premium) 등이 고려된다.

2) 재보험

재무부고시⁸⁹⁾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특약재보험에 가입하여 비례특약한도의 10% 혹은 <표 IV-6>에서 규정된 특약재보험 납입금 중 적은 금액을 자동적으로 재보험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3) 투자제한

규제당국(CMFISA)은 보험회사가 자산에 대한 투자시의 제한사항을 <표 IV-6>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투자시의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리연계상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며 국내주식 및 채권보다 외국주식 및 채권의 투자를 더욱더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신용위험(credit risk)에 노출되기 쉬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8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81/KMK/017/1999.

88) 타카풀보험(takaful insurance)의 운영자에게도 적용된다(Swiss Re 2008).

89)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표 IV-6〉 인도네시아의 특약재보험 납입규정

(단위: 십억 루피아)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 납입금
재물	8.5
자동차	1.0
해상(적하)	5.0
해상(선박)	2.5
항공	2.5
인공위성	2.5
역내 에너지	2.5
역외 에너지	8.5
기술	7.5
책임	5.0
상해 및 질병	1.0
신용 및 보증	1.0
기타	5.0

자료: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2003.

〈표 IV-7〉 인도네시아 보험회사의 자산투자에 관한 제한사항

투자자산	투자제한
정기예금	각 은행의 20%
금리연계상품(은행판매)	제한 없음
국내주식	총투자 금액의 20%
국내채권	총투자 금액의 20%
외국주식	총투자 금액의 10%
외국채권	총투자 금액의 10%
펀드	총투자 금액의 20%
직접투자	총투자 금액의 10%
부동산	총투자 금액의 20%
파생상품	투자의 불허용
주택담보대출	총투자 금액의 20%
보험증권담보대부	담보 현금가치의 80%

자료: CMFISA(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

라. 영업규제

보험회사의 사업영역은 크게 생명보험, 재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재산보험, 차량보험, 항공보험, 위성보험, 육상에너지보험, 해상에너지보험, 기술보험, 책임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신용보증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생명보험회사는 오직 생명보험업(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오직 손해보험업만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재보험회사는 오직 재보험업만 영위할 수 있다.⁹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 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의 형태이며, 계리컨설팅회사와 보험대리점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⁹¹⁾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계리컨설팅회사는 생명보험회사 혹은 연금펀드회사를 위한 계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생명보험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회사는 1년 이내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마. 공시제도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financial soundness)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보조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solvency margin) 및 재무상태표(financial statement)를 보험국의 검사를 거쳐, 재무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⁹²⁾

지급여력비율은 분기별 보고서(3/31, 6/30, 9/30, 12/31)형태로 제출하며, 재무제표는 독립감사인(independent auditor)의 검토를 거쳐 연간 보고서(12/31) 형태로 제출한다.⁹³⁾ 만일 보고기한일보다 늦게 보고하면, 보험회사의 경우 1백

90) 「보험법」 시행령 4장 §4.

91) 「보험법」 No.2/1992 §7(1) 및 (2).

9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만 루피아(1일당), 보조보험회사인 경우 50만 루피아(1일당)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⁹⁴⁾

바. 지배구조

보험회사는 회사정관에 보험영업위의 목적을 밝히고, 회사 내 위험관리, 재무관리와 관련된 조직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는 회사 내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를 설치해야 하며, 적어도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독립적인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⁹⁵⁾

사.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사업자가 인도네시아 보험시장에 진출 시 회사의 형태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이며, 합작파트너(인도네시아 현지회사)는 반드시 보험회사이어야 한다.

합작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절차는 인도네시아 국내회사(domestic company)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주요 규제사항으로서 외국사업자는 회사지분의 8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또한, 납입자본금의 20%를 CMFISA에 담보금으로 예치해야 한다.⁹⁶⁾

아. 특별계정

투자연계보험상품(혹은, 변액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상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93)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2003.

94)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95)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96) 「Government Regulation」 No.73/2008 Article 6(3).

해야 하며, 계정에 포함되는 자산과 부채의 원천(source)은 ① 현금 및 예치금, ② 정기예금, ③ 주식, ④ 채권, ⑤ 펀드, ⑥ 정부채권 등이다.⁹⁷⁾ 또한 전통적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타카ful(takaful) 보험과 관련된 사업 부서를 둘 경우, 동 보험업과 관련된 회계는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자. 조세

인도네시아 국내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과세(taxation)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경우 10%, 보험자의 경우 2%, 재보험자의 경우 1%의 세율로 각각 원천징수(withholding tax)된다. 보험중개인(broker)이 보험회사로 납입하는 수수료(commission)에 대해서도 2%의 세율로 과세된다.⁹⁸⁾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평률세(flat rate tax)이며, 비율은 25%(2010년 기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연소득이 40억~500억 루피아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4%, 연소득이 40억 루피아 이하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0.75%의 세율로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은 세액공제(tax deduction)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 사업계속 중의 감독

1) 이사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테스트

CMFISA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회사경영진에 대한 적격성(fit & proper)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CMFISA의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가 담당하고 있다.⁹⁹⁾

9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4/KMK/06/2003.

98) AXCO(2010), p. 58.

적격성 테스트는 크게 경쟁력(competence)과 도덕성(integrity)의 평가로 나뉜다. 경쟁력은 보험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1) 회사 내 지위에 걸맞은 충분한 지식/경험/전문기술, 2) 보험업 취급과 연관된 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 3) 전략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도덕성은 보험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성실성 및 신의성으로 정의되며, 1) 보험 혹은 타금융권에서의 불명예행위, 2) 보험 및 경제권에서의 범죄행위, 3)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4) 규제당국의 감독에 대한 불순응, 5)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6) 신의성실 원칙 위배, 7) 위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2) 보험전문인 조사(insurance expert examination)

CMFISA는 보험회사가 보험에 관한 전문능력을 지닌 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¹⁰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AAIJ)의 자격,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AAAIK 및 AAIK¹⁰¹⁾의 자격을 취득한 보험전문인을 두어야 한다.

3) 보험대리점 자격증명(certificate)¹⁰²⁾

보험대리점은 해당 보험협회를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증명에 관한 조사 시 허위로 판명된다면 대리점 계약이 취소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¹⁰³⁾

99) 「Decision of Chairman of CMFISA」 No.PER-04/BL/2009.

100)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426/KMK/06/2003.

101) AAAIK와 AAIK는 local 면허이나 주관을 영국의 CII(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에서 담당하고 있다. AAAIK를 취득하기 위해선 6개의 자격시험을 거쳐야하며, AAIK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개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0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3) 2011년 6월까지 유효하다.

카. 모집

1) 생명보험

인도네시아에서 생명보험 상품은 주로 회사대리점(Tied agent)과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판매된다. 2008년에 회사대리점은 생명보험 모집채널에서 50%를 차지하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중개인(brokers)/독립대리점(independent agents), 직접판매(direct marketing)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명보험 모집채널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협회(AAJI)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지점마다 전문성 개발에 필수적인 보험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¹⁰⁴⁾

둘째, 상업은행은 스스로 보험업을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지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다.¹⁰⁵⁾ 그리고 보험자 역시 은행과 함께 방카슈랑스업을 취급하는 것이 허용된다.¹⁰⁶⁾

셋째, 중개인으로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협회정관, 전문기술증명서, 최소 1억 루피아 상당의 전문정보증보험증서가 제출서류로 요구된다.¹⁰⁷⁾

2) 손해보험

한편,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시장의 판매채널은 주로 대리점, 중개인, 직접판매로 구성된다.

2008년에 재물에서는 중개인, 대리점, 직접판매(direct sales) 순이며, 자동차/

10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5) 「Banking Law」 No.10/1998 Article 10b.

106)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Article 39.

107) 「Government Regulation」 No.63/1999 Article 9.

대인에서는 대리점과 직접판매의 시장점유율이 거의 동일하고 그 다음이 중개인의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손해보험모집채널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리점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인가받기 전에 전문성을 획득해야 하며,¹⁰⁸⁾ 손해보험협회(AAUI)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⁰⁹⁾ 또한, 대리점이 연간재무상태표와 독립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일 50만 루피아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¹¹⁰⁾

둘째,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스스로 보험업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다.¹¹¹⁾ 그리고 손해보험은 은행과 더불어 방카슈랑스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된다.¹¹²⁾

셋째, 중개인으로서 보험업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루피아 상당의 전문정보증보험증서, 최소 5년 이상의 중개인경험과 함께 경영이사회에 종사할 것,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요구된다.¹¹³⁾

3) 방카슈랑스¹¹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장관의 승인 아래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데, 판매상품의 종류 및 보험상품 판매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

108)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109)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110)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1) 「Banking Law」 No.10/1998 Article 10b.

11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5/KMK/06/2003 Article 39.

113) 「Government Regulation」 No.63/1999 Article 9.

11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426/KMK/06/2003.

장관의 승인을 받기위한 지원서에는 ① 판매상품내역, ② 보험료납입 및 보험금지급절차, ③ 보험금청구절차, ④ 보험회사와 은행 간의 상호협정문(초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관리자(bank officer)는 보험대리점자격증을 소유해야 하며, 상품판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타. 예금자보호제도

1) 보증기금조성

보험회사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기금(guarantee fund)을 조성해야 한다.

보증기금의 운영은 재무장관의 승인하에 이뤄지며, 공공은행(public bank)에 예치하거나, 정부국채 혹은 증권의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¹¹⁵⁾

보증기금은 최소납입자본금의 20% 이상 조성해야 하며, 순보험료 수입 증가분의 1% 비율로 기금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¹¹⁶⁾

2) 책임준비금 적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순보험료를 기반으로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을 적립해야 하며, 세부항목으로서 보험료준비금, 연금보험료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금청구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 산출 시 적용되는 비율은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서 책임준비금의 5%를 할당해야 한다.

115)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6) 「보험업법」 No.2/1992.

3) 예금자분쟁 조정시스템

보험계약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보험중재청(BMAI: Indonesian Insurance Mediation Body)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보험국(bureau of insurance)의 간섭을 받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변액보험(unit-linked insurance)은 투자연계 상품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납입의 형태가 일시납(single)인 경우 USD 1,500 혹은 보험료의 125%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연납(annual)인 경우 USD 750 혹은 보험료의 5배 이상의 보험금액을 설정해야 한다.¹¹⁷⁾

파. 타카ful(takaful) 보험규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법(muslim law)에 근거한 타카ful(takaful) 보험회사의 설립 혹은 전통적 보험회사 내 타카ful(takaful) 사업부서 설치를 통해 타카ful(takaful)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타카ful(takaful) 보험상품은 와칼라(Wakala) 혹은 무다라바(Mudaraba) 모델에 근거하여 판매되어야 한다.¹¹⁸⁾ 그리고 타카ful보험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가족타카ful인 경우에 개인/단체보험, 건강보험, 저당감소계약타카ful(MRTT), 투자연계상품(ILP), 직접판매/통신판매이며, 일반타카ful인 경우에는 재산, 자동차, 책임, 해상, 기술 등이다.¹¹⁹⁾

117) 「Decision of Chairman of CMFISA」 NO:KEP 104/BI/2006.

118) 「Government Regulation」 No.39/2008.

119) 「Swiss Re Takaful(2010)」를 참조한다.

타카풀(takaful) 보험업을 취급하는 회사는 기본원칙으로서 a) 참여자간의 상호 부조(mutually-supportive) 그리고 위험공유(burden-sharing)에 대한 합의, b) 타바루펀드(Tabarru Fund)¹²⁰⁾ 조성을 위한 참여자의 각출(contribution), c) 타바루펀드(Tabarru Fund)의 운영기관(회사), d) 신뢰성, 균형성, 유익성, 보편성의 원칙, e) 불확실성, 도박, 폭행, 뇌물수수 금지에 관한 동의 등을 준수해야 한다.¹²¹⁾

타바루펀드의 재무건전성규제와 관련하여 지급여력비율은 120%보다 낮게 유지해도 된다.¹²²⁾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타바루펀드의 자산과 부채는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관리해야 하며,¹²³⁾ 참여자의 투자펀드의 자산과 부채도 회사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¹²⁴⁾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건물, 자본재(무다라바 모델에만 해당) 등의 투자합계는 총 투자액의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¹²⁵⁾

타카풀(takaful)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는¹²⁶⁾ 타카풀(takaful) 일반총회에서 임명을 받은 3명 이상의 타카풀(takaful)전문가로 구성된 타카풀(takaful) 감독이사회를 회사 내에 설치해야 한다.¹²⁷⁾ 타카풀(takaful)감독이사회는 샤리아(sharia)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며, 감독결과를 CMFISA에 적어도 1년 마다 보고해야 한다.¹²⁸⁾

120) 타카풀보험료 혹은 재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조성한 기금이다.

121)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0/PMK/010/2010.

122)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123) 타카풀 보험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계정을 통해 별도 처리한다.

124)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0/PMK/010/2010.

125) 「CMFISA 감독규정」.

126) 타카풀(이슬람보험)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회사와 동일하다.

127)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128) 「Ministry of Finance Regulation」 NO.18/PMK/010/2010.

4. 태국

가. 감독체계

1) 입법체계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들로는 「생명보험법」, 「손해보험법」,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 「예금자보호기구법」,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법」, 「생산물배상책임법」, 「적립기금법」, 「증권거래법」 등이 있다. 이외에 생명보험의 경우는 금융투자업이나 금융업의 일부를 겸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법이나 「금융기관법」 등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가) 「생명보험법」·「손해보험법」

태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즉, 태국의 보험산업은 「손해보험법」(Non-life Insurance Act, 1992) 및 「생명보험법」(Life Insurance Act, 1992)과 이를 보완하는 보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국정부는 「생명보험법」, 「손해보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험관련 법률을 통합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보험산업은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이하 필요 시 두 법을 통칭하여 「보험법」이라고 함)¹²⁹⁾을 대폭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개정법률인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은 〈표 IV-8〉과 같이 동일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08년 개정 「보험법」은 태국에 있는 보험회사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큰 법

129) 또한 「보험법」이라는 통칭을 사용할 경우, 관련 법조문은 「생명보험법」(2008)의 법조문을 인용하고자 한다. 다만,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각각의 법명과 조문을 인용한다.

를이다. 동 법률의 핵심 개정사항으로는 외국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유권 자유화의 확대,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의 충실화 및 이하에서 서술하는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표 IV-8〉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구성

「손해보험법」(2008)		「생명보험법」(2008)	
구성	제목	구성	제목
Chapter 1	보험회사	Chapter 1	보험회사
Chapter 1/1	자본금과 유동자산의 유지	Chapter 1/1	자본금과 유동자산의 유지
Chapter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Chapter 2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Chapter 3	손해보험사업면허의 철회	Chapter 3	생명보험사업면허의 철회
Chapter 4	손해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	Chapter 4	생명보험 대리점 및 중개사
Chapter 4/1	보험계리사	Chapter 4/1	보험계리사
Chapter 5	손해보험기금	Chapter 5	생명보험기금
Chapter 6	벌칙규정	Chapter 6	벌칙규정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의 지침에 따라 태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한도가 25%에서 49%로 증대되고, 허용되는 외국인 이사의 수도 25%에서 50%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재무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보험위원회(OIC)의 자문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승인하에 완화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개정 「보험법」에 따라 2013년 2월까지의 상장(publicly listed)되어야만 한다. 해당 기간까지 상장되지 못한 보험회사는 이후 3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사업을 영위(write new business)할 수는 없다. 그리고 2016년 2월까지 상장하지 못한 회사는 보험업의 허가가 취소된다.

더불어 새로운 자본적정성 규정이 법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2월까지의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1992년 법률하에서 법정 최소 보유액은 5천만 바트(1.5백만 달러)를 최소 조건으로 한 2%이었다. 더불어

보험회사는 월별 및 분기별 요구자본 수준과 더불어 정기적인 재무보고서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보험법」은 보험위원회(OIC)에게 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상품, 판매, 보험료 지급, 상품설명서와 홍보자료, 수수료와 같은 보험비용, 회사의 위험관리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등을 감독할 법정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위원회(OIC)는 ‘경영, 대리점과 중개인 및 수수료의 제한에 대한 지침(licensing and competence guidelines)’과 방카슈랑스와 텔레마케팅을 포함한 ‘영업행위지침(selling guidelines)’을 제시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생명/손해보험기금(Life/Non-life Insurance Fund)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손해보험사업발전기금(Life/Non-life Business Development Fund)은 새로운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나) 기타 보험 관련 법률

기타 보험 관련 법률로는 무엇보다 먼저, 태국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을 언급할 수 있다. 태국 「민상법」 제861조부터 제888조는 보험손해의 정의, 보험금 청구권 및 제3자의 대위권 소멸시효 등과 같은 보험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2007)」이 있다. 동 법은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보험감독주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의 보험청(DOI: Department of Insurance)이 해체되어,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산하의 보험산업감독·개선위원회(Office of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and Promotion Committee)로 대체되었다. 신설된 규제당국은 보험위원회(OIC)로 불리고 있다.

또한 2008년의 「예금자보호기구법(Deposit Protection Institution Act 2008)」

에 따라 예금보호기구(Deposit Protection Agency)가 설립되었다. 동 기구는 금융기관별 총액 1백만 바트(30,859달러)를 한도로 하는 총괄은행예금보장제도(blanket bank deposit guarantee scheme)를 대신하는 기구이다.

2007년에 개정된 1987년 「준비금법(Provident Fund Act 1987)」은 자발적 준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준비금은 자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 리스크가 낮은 곳에 투자하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며, 동일 회사 주식의 매입한도는 전체의 5%로 제한되어 있다.

준비금과 관련된 가장 최근 개정 법률은 2007년 「준비금법(No.3)」으로 2008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안에 따라, 저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연금기금으로부터 준비금으로의 자산의 이전이 허용되었다. 또한 동 법은 준비금이 하나 이상의 투자정책(investment policy)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의무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곧 시행될 예정에 있다. 국민연금기금(National Pension Fund)은 2007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발적 협약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정된 시행이 연기되고, 2008년 8월 재정정책실(FPO)은 국민연금기금(NPF)이 '향후 2년 이내'에 의무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2010년 12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더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2월 20일에 「불안전 상품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Unsafe Goods Act, 약칭 '생산물배상책임법)」이 시행되었다. 동 법은 소비자(원고)가 '불안전 상품'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현행 국제적 관행에 벗어나지 않도록 생산자의 엄격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부분, 소비자(원고)에게 과실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던 태국의 과거 법률에서 탈피한 것이다. 2008년 「소비자소송절차법(CCPA: Consumer Case Procedures Act)」은 2008년 8월에 시행되었으며, 「생산물배상책임법」과 함께 태국 내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기반(legal terrain)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소송절차법(CCPA)」은 절차법으로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

고자 하는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의료 관련 법률은 1992년 「보험법」과 이후의 개정사항들의 적용을 받으며, 보험회사는 의료보험을 특약이나 독립증권의 형태로 인수하고 있다. 한편, 의료보험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주요법률로는 「국민의료보장법(National Health Security Act 2002)」, 「국민의료법(National Health Act 2007)」, 「의료장비법(Medical Device Act 2008)」, 「의료시설법(Medical Facilities Act 1998)」,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 2008)」, 「태국건강진흥재단법(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Act 2001)」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2002년 11월에 제정된 「국민의료보장법」으로서, 동 법에서는 '30바트 체계'¹³⁰⁾의 재무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2) 감독체계

태국에는 금융부문별로 독립된 감독기구가 존재한다. 은행업은 중앙은행인 태국은행(BoT: Bank of Thailand), 증권 및 금융투자업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보험산업은 재무부 산하의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Insurance Commission)의 감독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과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보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의 산하기관이다.

태국 국회는 「보험산업규제·개선위원회법(Insurance Business Regulation and Promotion Committee Act 2007)」을 제정하여 2007년 9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동 법은 보험감독주체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의 일부였던 보험청(DOI: Department of Insurance)은 전통적인 보험감독기관이었으나, 상기 법률에 따라, 재무부(Minister of Finance)

130) 태국정부는 낙후된 공공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8차 경제개발계획(1997~2001년)기간 중 '30바트(900원)로 모든 질환 치료'라는 슬로건하에 대대적인 의료부문 보장계획을 실시한 바 있다.

산하의 독립된 감독기관인 보험산업감독·개선위원회(Office of Insurance Business supervisory and Promotion Committee)로 대체되었다. 신설된 동 규제당국은 보험위원회(OIC: Office of the Insurance Committee)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취지는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선도적인 규제자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즉, 보험감독기관을 재무부의 영역 내로 옮기는 이유는 은행 등 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기관의 규제경험을 보험산업에 적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 분야 마스터플랜Ⅱ(Financial Sector Masterplan Phase Ⅱ)’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금융시장 내에서 규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과거 상무부 산하의 보험감독국은 중앙은행이나 증권선물위원회와는 달리 방콕 밖에 위치해 있었으며, 업무도 규정개정을 감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¹³¹⁾

보험청(DOI)이 상무부의 일부였던 반면, 보험위원회(OIC)는 재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위원회(OIC)의 운영기금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수입보험료의 0.27%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일시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0.15%, 정기납 보험료의 경우에는 초년도 보험료의 0.3%와 2차년도 이후의 보험료의 0.15%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위원회(OIC)의 직원은 500여명이고 그들의 대부분은 전국 75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법」상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위원회(OIC)의 조직은 ① 조사·감독실, ② 법제본부, ③ 손해보험실, ④ 생명보험실, ⑤ 기술·통계본부, ⑥ 보험홍보·정보본부, ⑦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실 및 자동차보험피보험자보호실 등과 같이 영역별로 구분되고 있다.¹³²⁾

1992년 「보험법」과 그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위원회(OIC)의 주요 업무는 ① 신설 상장 보험회사의 허가, ②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허가, ③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의 면허증 발급, ④ 보증예치금, 보험계약준비금, 자본금의 구성 및 총액 결정, ⑤ 보험회사 간

131) 「FOCUS: Thailand-Insurance」, Allens Arthur Robinson, p. 2.

132) 태국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합병의 허가, ⑥ 투자규정의 제정, ⑦ 보험회사의 부채가 자본을 초과, 법령의 위반, 영업의 정지, 보험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등의 경우의 허가 취소, 청산 또는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 ⑧ 보험증권과 보험요율의 승인, ⑨ 보험회사 자본증자에 대한 지시, ⑩ 수수료율의 결정, ⑪ 재보험협정의 승인 등이다. 여기에서 신설 상장 보험회사의 허가과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설치 허가는 각료회의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국의 보험산업은 보험위원회(OIC)의 창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태국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5%에서 49%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5년 이내에 모든 보험회사는 상장회사(public company)로 전환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보다 복잡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며, 보험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법정 지급준비금 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태국의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2%, 손해보험의 경우 경과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준비금(reserves equivalent)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험위원회(OIC)는 기업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허가 제도를 개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 제도를 강화하였다. 즉, 고객에게 상품, 회사의 재정상태, 계약자보호를 위한 산업기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보험대리점의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보험위원회(OIC)의 정책은 일반적으로 규정 그 자체보다는 그 영향력을 중시한다. 2008년 「생명보험법」 및 「손해보험법」을 통과시키는 가운데 보험시장이 자유화와 새로운 자본·허가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2008년 「보험법」은 보험위원회(OIC)에게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늦어도 2011년 2월까지 RBC 제도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감독절차는 월별 현장검사 및 현장외검사(off-site examinations)를 포함하고 있다. 검사절차의 초점은 투자자산의 평가, 보험금 청구건의 처리,

언더라이팅 비용, 수수료, 미경과 보험료 등에 있어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보험위원회(OIC)는 감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한편, 연금의 감독은 재무부의 재정정책청(Fiscal Policy Office)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준비금법(Provident Fund Act 1987)」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1992)」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준비금 담당기관과 규제기관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나. 진입규제

태국은 과거에 생·손보 겸영보험회사를 허용하였으나, 1992년 「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는 생·손보 겸영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그룹의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 면허는 생명보험사업, 손해보험사업, 재보험사업의 3가지로 구분되며, 더 세분되지는 않는다. 재보험사업의 면허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으며, 태국 내에서의 재보험의 인수에 대해서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인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보험(healthcare insurance)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증권의 특약 형태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권을 통해 인수가 가능하다.

태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관련 보험사업을 영위할 목적을 가진 태국 기업(thai companies incorporated)과 2) 외국 지점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 보험사업자의 두 가지 경우로 제한된다. 2008년 「보험법(No.2)」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상장회사나 외국기업의 지점의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다(「보험법」 제7조 및 제8조).¹³³⁾ 2008년 법

133) 전술한 대로 이하에서는 2008년 「생명보험법」을 기준으로 법 조항을 서술하기로 한다. 「생명보험법」 제7조 및 제8조와 동일한 규정이 「손해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

를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태국 「민상법」 규정 하의 유한책임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동법이 2008년 2월 개정된 이후, 보험회사는 「상장회사법(Public Companies Act 1952)」에 따라 2013년까지는 상장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보험회사들은 은행이나 태국사업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경영 복합기업들과 자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태국 정부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순환출자(cross-shareholding)에 대한 10%의 법정 상한선을 2001년 폐지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은행 직접 소유 상한선인 10%는 여전히 유효하다.

해외의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태국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법률이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설치를 예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험법」이 제정된 1992년 이후 생명보험 지점을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는 없다. 새로운 지점의 설립허가가 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회사들은 기존 회사의 인수를 통해서 태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재무부에서 발급한 고시(notifications)’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실무상 면허 신청건마다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의 고시가 발급될 때까지 새로운 허가신청절차는 개시되지 못한다.¹³⁴⁾

허가신청서는 40만 바트(11,934달러)의 수수료(fee)와 함께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 장관과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회사 출자자들은 상장회사를 결성하고 보험위원회(OIC)에 예탁보증금을 납입한 후 규정에 맞춰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외국 보험회사에 의한 영업지점의 설치에는 8만 바트(2,387달러)의 수수료와 더불어 동일한 승인절차가 요구된다. 운영자산은 보험위원회(OIC)규정에 따라 태국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보험사업에 대한 면

정되어 있다.

134) Allens Arthur Robinson(2003, 12), 「Thai Insurance Market, Focus: Insurance & Reinsurance Asia」(<http://www.aar.com.au>), p. 3.

허를 얻기 위해서는 4백만 바트(119,343달러)가 지급되어야 한다.

더불어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5억 바트(14.9백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registered capital)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 설립자가 주식의 25%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을 판매하거나 전환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사는 다른 현존 보험회사와 관련된 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인수 및 합병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보험회사 설립허가는 1997년에 승인된 13개의 손해보험회사의 설립허가이다. 생명보험회사와 관련하여서는 1995년 12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설립허가가 가장 최근의 것이고, 그 이전에는 1983년에 설립허가가 있었다. 한편, 보험위원회(OIC)는 향후 몇 년 내에 보험산업 내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태국 보험시장의 진입은 태국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주식인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무건전성규제

1) 지급능력규제(Insolvency Regulation)

2008년 「보험법」은 연차보고서 외에 월말보고서와 분기말보고서의 제출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보고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보고요건의 강화는 곧 시행될 엄격한 자본 및 지급능력 요건과 2013년까지의 상장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보험회사의 지급불능 위험을 경감시키고 공공의 인식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2008년 「보험법」 제53조 내지 제63조는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회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

한을 보험위원회(OIC)에게 부여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면 보험위원회(OIC)는 「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보험회사에게는 자본상태를 회복할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경영진을 다른 지정인으로 교체하거나 회사를 완전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관리위원회(Control Committee)는 사업을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생존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것이다. 재무부 장관은 「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① 보험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또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여 일반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② 동 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보험사업의 영위를 중단하였을 경우, ④ 보험금 청구나 보험만기에 따른 지급을 지연시킬 경우, ⑤ 사업의 지속이 보험계약자나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008년 법률은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금으로서 ‘생명보험기금 및 손해보험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법률에 따라 도입된 기존의 보험사업 발전기금은 새로운 기금에 편입되었다.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자들이 현행법 정지급준비금 제도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의 설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2010년 3월 파이낸사생명(Finansa Life)의 재정난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5년 내지 7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재무부의 자료에 의해 밝혀지면서 이러한 반대가 많이 줄어들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2008년 「보험법」 제26조에 따라 채권자들은 규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탁보증금(secure deposit)이 설정된 자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한다. 이 우선권은 현금이나 채권 등과 같은 유동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최소지급준비금의 25%까지 적용된다.

2009년 3월 재무부는 피보험손해의 보상과 회생에 실패한 자동차보험회사인 삼판보험(Sampanh Insurance)에 대해 사업을 폐쇄할 것을 명령하였다. 보험위원

회(OIC)에 의하면, 동 회사는 법정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산가액보다 큰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1년 8개월의 요구 기간 내에 회생에 실패하였다.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경찰 및 특별조사국과 함께 횡령과 문서 위조를 이유로 삼판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타의 일부 보험회사들도 기술적인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요구자본(Capital Requirements)

신설 생명보험회사는 1995년 이래 5억 바트(14.9백만 달러)의 최소자본금(minimum capital)을 납입해오고 있다. 더불어, 동 보험회사들은 5천만 바트(1.5백만 달러)를 최저한도로 하여, 모든 준비금의 2% 이상 해당하는 자본금(capital fund)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사주 매입 분은 자본금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보험법」 제27조제4항).

손해보험회의 최소납입자본금은 3억 바트(8.95백만 달러)이다. 그러나 1997년 이전에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의 최소납입자본금은 3천만 바트(895,074달러)이고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1997년 이전에 설립된 결과, 3억 바트의 자본금을 가진 손해보험회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회사는 유동자산을 보험위원회(OIC)가 정한 자산, 부채, 준비금의 일정비율에 맞춰 유지할 의무를 진다(「보험법」 제27조의1). 보험회사는 매달 자본금유지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관(Registrar)¹³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법」 제27조의5). 또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2천만 바트(596,716달러), 손해보험회사는 3.5백만 바트(1,044,252달러)의 예탁보증금이 보험위원회(OIC)에 예치되어야 한다.

135) 「보험법」상 등록관은 보험위원회(OIC)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지급여력(Solvency Margins)

지급여력은 전통적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최저 여분인 회사의 최소 자본(3천만 바트(895,074달러) 또는 3억 바트(8.95백만 달러)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하여, 전년도 총 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의 10%를 필요로 한다.

RBC 제도는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부채를 초과하도록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제도와는 핵심적인 차이는 요구자본이 단순히 사업의 크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 제도는 자산과 부채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위험관리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본할당(allocation of capital)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구자본의 산출을 위한 공식은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다. 이것은 리스크요구자본(RCR: Risk Capital Requirement)으로 분할된 총가용자본(TAC: Total Available Capital)과 동일하며, RBC 제도의 목표는 RBC 비율이 100%가 되는 것이다. 인정된 TAC 자산과 RCR 부채는 공정가치에 의해 기재되어야 한다. RCR 설정의 기준점(benchmark)은 향후 12개월 동안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99.5%이다.

자본은 기본자본(Tier one capital)과 보완자본(Tier two capital)으로 분류된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공정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 규모와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기타의 모든 자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RBC의 모든 세부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보험회사는 최소한 요구자본의 150%의 수준으로 지급여력비율(solvency ratio)을 유지하여야 한다.

RBC 제도가 수립되면, 최소 지급준비금(reserve requirement)제도도 재검토될 것이다. 동 제도의 기본 골격은 EU Solvency II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의 체계를 참고한 국제적 모범규준의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책임준비금제도(Reserve Requirements)

책임준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정 「보험법(No.2)」과 보험위원회(OIC)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reserves)은 해약환급금이나 준비금(reserve) 총액 중 큰 값의 50%에 직전 증권연도의 말일 기준 연간 순 조정보험료의 50%를 더한 값이 되어야 한다. 「생명보험법」 제24조는 재무부장관에게 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의 25%를 현금, 태국 채권 또는 기타 재산으로 보험위원회(OIC)에 예탁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적립금에 대한 접근은 RBC의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보험위원회(OIC)의 의지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법」에 따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Unearned premium reserves)과 지급준비금(loss reserves)을 적립하여야 한다(「손해보험법」 제23조).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등에 적용되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일반적으로 ‘24분의 1 방식’에 따라 산출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365분의 1 방식’이나 단순한 ‘연간 수입보험료의 40%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에는 마지막 90일 동안의 보험료 전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보험위원회(OIC)는 ‘365분의 1 방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여건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발생손해액 기준(incurred basis)의 보수적인 방식에 따라 준비금이 적립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최소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은 매월마다 직전 12개월간의 순 수입보험료의 2.5%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이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도 허용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을 포함한 모든 수재보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마련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적립금은 쌓아야 한다. 출재보험의 경우 첫해에는 출재보험료의 40%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고, 이후에는 직전 12개월 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연동형방식(rolling basis)으로 경감된다. 항공보험이나 에너지보험 등

과 같은 특정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보험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은 RBC 제도의 도입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위원회(OIC)의 입장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적립률이 상당부분 재보험 요율에 의존하게 되는 특정 보험종목의 경우에는 적립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법정준비금으로서 매년 순 수입의 최소 5%를 평준화적립금(equalization reserve)으로 적립하되, 동 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의 10%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라. 공시제도

태국 「보험법」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태국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원칙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공시를 통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공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구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부수 기준 1개 이상의 주요 신문지상에 3일 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본점과 지점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1개월 이상에 걸쳐 비치하여야 한다(「보험법」 제46조).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보험법」 제46조의1).

여기서 보험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는 재무제표, 자본현황, 주요 금융지표를 말하고, 영업실적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의 비율을 말하며,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인

수보험금 지급·보험회사의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3¹³⁶⁾ 제3조).

보험회사는 회계감사의 감사를 받은 연간 재무상태 자료를 직전년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3 제4조). 또한 보험회사는 분기별 재무상태 자료를 연간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마.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2008년 「보험법」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회사에 의한 직접적 주식소유의 허용비율은 25%에서 49%로, 외국인 이사의 수는 25%에서 절반으로 증가되었다(「보험법」 제10조).

한편, 재무부 장관은 보험위원회(OIC)의 권고에 따라 현행 회사의 운영으로 피보험 당사자나 일반 국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이 더 많은 소유권을 가지게 하거나 과반수의 외국인 이사를 두도록 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승인은 특정 조건에 따라 또는 기간의 제한을 위하여 허용될 수 있다.

외국인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동 규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지급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보험법」 제11조). 보험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3개월 이전에 주주명부를 조사하고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규정의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3개월 전에 등록관에게 통지하고, 해당 주주에게는 발견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주는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제한을 초과한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보험법」 제12조).

136) Notification of Insurance Commission(4.13) Subject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Disclosure of Financial Standing and Operating Results of Life Insurance Companies B.E. 2551(A.D. 2008)”.

그러나 2008년 「보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국가협의회는 태국 기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판매된 주식 총수(total shares sold)의 75% 이상과 회사 의결권의 75%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내에 태국에 있는 보험회사의 주식보유에,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안에 관해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voting shares sold’의 용어해석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14일 정부의 법률자문기구인 국가협의회 결정이 있었다. 2008년에 개정된 「생명보험법」과 「손해보험법」의 새로운 주식소유 요건에 있어 해당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동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므로, 다양한 해석과 자국 내 보험회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¹³⁷⁾ 개정 법률하에서, 태국인 주주들은 판매된 의결권 주식 총수(total number of voting shares sold)의 75%보다 많은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는 25% 미만이어야 한다. ‘태국 국민’에 의한 소유권에 초점을 맞춰볼 때, 입법초안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태국 국민들(즉, 개인들)에 의해 소유되지는 않았으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나 법인들에 의해 소유된 일부 태국 기관들을 간과하였다. 태국인 소유권을 밝혀내기 위한 해당 자격요건은 비록 기업 주주들의 2층 구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궁극적인 소유권은 분명히 태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태국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일한 이유로 지분을 각자 상호 소유하고 있는 태국인 회사들의 경우 “순환출자구조(cross shareholding structure)”에 있는 주주들은 2008년 「개정법」상의 태국인 주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 “태국인 주주들(Thai shareholders)”라는 용어 또한 ‘voting shares sold’의 의미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험위원회(OIC)는 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국가협회에 문의를 하였다. 국가협의회는 ‘voting shares sold’는 ‘voting right(의결권)’과 유사한 뜻을 갖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태국인 회사로 추정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판매한

137) 이하의 내용은 AXCO(2010), pp. 38~39를 참조하였다.

총주식의 75% 이상 또는 총의결권의 75%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보험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비태국인이 주주들이 태국인의 의결권보다 많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비태국인 기업으로 간주될 것이다.

새로운 자격요건에 맞추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5년의 전환기간(2013년 2월 종료)을 규정한 개정법률의 영향을 받는 보험회사들은 그때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까지 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현재 외국인의 주식소유분이 49%인 보험회사는 전환기간 동안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위원회(OIC)의 승인을 받아 2013년 2월 이후 새로운 자격요건에 맞추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위원회(OIC)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 있는 회사(grandfathered company, 외국인 지분이 25%를 초과한 회사로서 1992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 또한 「개정법」하에서 새로운 주식소유 요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수 없다.

바. 예금자보호제도

1) 생명보험기금 및 손해보험기금

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금융기관), 증권 및 보험부문이 각각 별도의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은 예금보호기금,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발전기금, 보험회사는 생명/손해보험발전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각각의 금융 분야에 있어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시 금융계약자의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생명/손해보험발전기금은 생명/손해보험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태국에 있어 대표적인 예금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은 적용 대상인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을 「금융기관사업법(Financial Institution

Business Act)상의 상업은행, 파이낸스회사(Finance company), 신용토지금융(Credit Foncier Company) 또는 금융활동 및 서비스의 운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예금보호기구법」 제3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업과 증권업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보험기금 및 손해보험기금(이하 ‘보험기금’이라고 함)을 살펴보면, 2008년 「보험법」 제84조는 보험회사들에게 회사가 파산하거나 보험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보험을 구입함으로써 발생한 부채의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생명/손해보험기금’을 법인으로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기금의 재원은 ① 보험사업의 발전을 위한 보험위원회(OIC)의 기금(생명/손해보험발전기금)으로부터 이관된 금전(money)과 자산, ② 휴면보험금, ③ 보험회사의 분담금, ④ 보험기금의 금전과 자산에서 나온 수익과 수입, ⑤ 「보험법」 위반에 따른 벌금, ⑥ 다른 개인들에 의하여 제공된 금전 또는 여타의 자산, ⑦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

또한 보험기금은 ① 회사가 파산되거나 보험사업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자들을 돕기 위한 준비 활동과 ②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2). 보험회사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기금에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동 비율은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 6개월 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거수한 보험료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총 수입보험료의 0.1% 범위 내에서 보험위원회(OIC)가 결정한다. 한편,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운용할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동 비율을 낮추거나 분담금의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 3).

회사가 파산 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제26조(예탁보증금)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불충분할 경우, 보험가입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

채권자들(보험금청구권을 갖는 보험가입자들)은 기금으로부터 상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제26조 하의 상환금과 더불어 기금으로부터 각 채권자가 수령할 수 있는 총액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액이 1백만 바트를 초과할 경우, 채권자는 1백만 바트까지만 상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보험법」 제85조의5). 한편,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재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상환금에 대한 권리를 갖는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모든 또는 특정 형태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상기의 1백만 바트보다 더 큰 금액이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보험법」 제85조의6).

보험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보험법」 제86조). 기금관리위원회는 재무부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인 의장과 보험위원회(OIC)의 사무총장인 부의장, 태국은행의 대표자, 태국보험협회의 대표자(2명),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격을 갖춘 자(4명 까지)로 구성된다. 기금관리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총무(secretary)로 한다.

2) 태국의 예금자보호제도

참고로 이하에서는 태국 「예금보험기구법」상의 예금보호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태국은 1997년 8월 아시아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동일한 위기에 처한 아시아 3개국과 함께 전액 예금보호제도를 도입¹³⁸⁾하였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기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금유출을 막아 은행 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¹³⁹⁾ 따라서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회복된 이후에는 부분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규율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138) 이전에는 1985년 중앙은행 산하에 설치되었던 금융기관발전기금(FIDF: 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에 의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였다(함준호·신인석 1998, p. 20).

139) 高安健-(2008. 4), p. 40(pp. 33~47).

〈표 IV-9〉 태국 예금자 보호한도의 단계적 축소 계획

기간	보호한도	
	기존계획	수정계획
제1차 회계연도(2008. 8. 11~2009. 8. 10)	예금 전액 보호	예금 전액 보호
제2차 회계연도(2009. 8. 11~2010. 8. 10)	1억 바트	예금 전액 보호
제3차 회계연도(2010. 8. 11~2011. 8. 10)	5천만 바트	예금 전액 보호
제4차 회계연도(2011. 8. 11~2012. 8. 10)	1천만 바트	5천만 바트
제5차 회계연도(2012. 8. 11 이후)	1백만 바트	1백만 바트

자료: 기존계획-예금보험공사(2009. 4), p. 11.

수정계획-태국 예금보호기구(<http://www.dpa.or.th/Main.aspx>), (2010. 12. 1).

이후 한국(2001년), 말레이시아(2005년) 및 인도네시아(2005년)는 모두 예금 보험공사를 설치하고 부분 예금보호제도를 실시하였으나, 태국은 2007년 말까지 전액 예금보호제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전반에 소규모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현안 사항에 집착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태국에서는 2008년에 「예금보험기구법」에 의해 예금보호기구(DIA)설립된 후 비로소 부분 예금보호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다만, 단일 금융기관의 단일 계좌에 대해 100만 바트를 상한으로 하여 예금이 보호되는 최종 단계의 이행은 2012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통해 은행예금을 2009년 8월 10일까지 전액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2009년 7월 28일 각료회의에서 동 기간을 2011년 8월 10일까지로 연장하였다.¹⁴⁰⁾

140) 연합뉴스(2009. 7. 28).

사. 사업계속 중의 감독

1) 법정 보고서의 제출

2008년 「보험법」 제43조 및 제47조는 보험회사에게 ① 회계감사를 받은 분기별 재무제표, ② 회계감사를 받은 전년도 재무제표(회계감사의 의견서 첨부), ③ 회사의 경영실적을 보여 줄 수 있는 연차보고서, ④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규정된 양식, 규칙, 절차 및 조건하에서 보험계리사에 의해 적절하게 확인된 증권별 보상책임액의 계산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①, ②, ④의 자료를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외국 본사의 회계연도 말로부터 5개월 이내에 외국 본사의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법」 제43조).

이를 보고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회사는 연도 말(역년기준) 이후 5개월 내에 보험위원회(OIC)에 상세한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제출기한은 2011년부터 4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OIC 고시」 4.11 제6조제2항)¹⁴¹⁾ 2008년 「보험법」에서 연차보고서는 연간 재무제표, 사업운용과 경영실적이 포함된 자세한 연간 영업보고서를 포함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회계사나 회계전문가가 FAP(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4조). 필요한 정보에는 대차대조표, 자본상황표(capital status), 주요 재무비율,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구분된 보험료 수입과 클레임 등이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인수에 따른 책임액을 계산한 연차보고서를 회계전문가(보험계리사)의 확인을 받아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법」 제47조). 보험회사는 연간 손익이 20%

141) Notification of Insurance Commission(4.11) Subject "Rules, Procedures, Conditions, and Periods for Preparing and Submitting Financial Statements and Reports on the Operations for the Life Insurance Business B.E. 2552(A.D. 2009)".

이상 차이가 나도록 보고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서술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9조).

또한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 1월부터는 재정상태와 보험영업에 관한 월별 세부자료가 추가되었다. 분기별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60일이다. 나아가 2012년부터는 동 기간이 45일로 단축될 예정이다(「OIC 고시」 4.11 제6조제1항).

월별보고서의 경우에는 늦게 제출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대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다. 보험위원회(OIC)는 제출 지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5만 바트(1,492달러)에서 10만 바트(2,984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보고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위원회(OIC)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장요청은 원래의 기간 내에 하되, 보고서의 복사본과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OIC 고시」 4.11 제7조).

또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으며, 이를 위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법 §48). 그 권한은 ① 보험회사 사무소의 출입 및 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문서 기타의 증거서류의 요청, ② 보험회사 영업장소에서의 출입 및 회사의 재산에 대한 조사 및 평가, ③ 보험회사나 관계자의 보험영업 관련 자료 기타 증거서류의 제출요구, ④ 진술 청위를 위한 관계자의 출석요구 등이다. 보험위원회(OIC)의 등록관 또는 업무위임자는 상기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 보여주어야 한다(「보험법」 제49조). 또한 이해관계자는 보험위원회(OIC)가 보관하고 있는 등록부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 자료들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보험법」 제50조). 보험위원회(OIC)가 매년 발행하는 태국보험보고서는 그 발간이 상당히 늦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월말보고서는 분석 후 보험위원회

(OIC) 웹사이트에 공시된다.

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하고 있으며, FAP에 의해 작성되었다. 최근 태국의 많은 GAAP들은 현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개정되어 왔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와 FAP는 태국 자본시장 내의 회사들에게 IFRS의 회계제도를 전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공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태국 기업들에게는 아직 IFRS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태국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에서 SET 50 index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2011부터 IFRS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2015년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IFRS의 이행은 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2) 투자규제

보험위원회(OIC)는 보험회사에게 자산분류와 가중치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투자지침을 제정하였다. 주요 범주와 제한은 〈표 IV-10〉와 같다. 그러나 향후 RBC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투자지침은 RBC 제도가 반영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평가된 투자위험에 근거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태국은행(BOT)은 외국환의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외국 주식에 5천만 달러까지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포함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적용되었다. 동 제한은 태국 증권거래소(SET)에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010년 2월 1일부터 2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보험위원회(OIC)는 국내 및 외국의 가용자산에 관한 투자지침을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 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자금잉여금(fund surplus)을 투자할 수 있다. 해외정부채권이나 S&P의 BB+ 등급의 채무증권(debt instruments)에 대한 투자가 허용된다.

〈표 IV-10〉 태국 보험회사의 투자유형별 투자한도

구분		단일한도	총한도
태국 내 투자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	10	20
	다른 회사의 주식	15	20
	다른 회사의 채무증서(debenture)	20	20
	유한책임회사의 단위형 투자신탁(unit trust)	10	20
	환어음, 약속어음	파이낸스회사 발행	10
		토지신용금고 발행	10
		은행 발행	20
		태국산업금융공사 발행	10
		국영기업 발행	5
	주택담보대출	10	25
	기타담보대출	5	20
	일반 대출	한도 다양	한도 다양
	은행 예금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태국 외 투자	ASEAN · ESCAP 기업의 주식 · 채무증서(재보험용)	n.a.	10
	사전허가를 받은 기타 투자	n.a.	10

주: 1) 표 안의 수치의 단위는 %이며, 회사의 자산 대비 비율의 한도임.

2) 다른 보험회사에 대한 10%의 상호출자한도는 폐지되었음.

자료: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3) 요율규제

생명보험에 적용되는 법정 협정요율(statutory tariffs)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위원회(OIC)는 보험요율 산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험생명표(experience life table)”를 명시하고 있다. 2002년 1월 3일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1997년 경험생명표를 의무적으로 채택하여야 하며, 동 경험생명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기대수명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되어 왔다. 상품가격의 산출을 위한 최소 예정이자율은 2002년에 2%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최소 2%에서 최대 6%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위원회(OIC)는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태국은 규제와 보호가 강한 시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 종목(classes)들

은 권고요율이나 범위요율이기는 하지만 협정요율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종목을 위한 경쟁적 시장요율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현행 화재보험 협정요율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특별요율의 적용을 원하는 보험회사들은 보험위원회(OIC)로부터 사전인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가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정요율 체계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종합보험(IAR: Industrial All Risks insurance)의 경우 협정요율의 일부로서 간주되고 있지 않으며 최소 권고요율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가액이 20억 바트(59.7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물보험은 보험위원회(OIC)의 인가요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액이 3억 바트(8.9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재물보험은 사실상 자유요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물종합보험계약(IAR contracts)의 확산에 기인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최소 권고요율과 더불어 3억 바트 제한 또한 무시되고 있다. 자동차의무보험의 협정요율은 보험위원회(OIC)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요율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임의보험담보에는 보다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있다.

보험위원회(OIC)의 전신인 보험청(DOI)은 보험료와 보험금 수준의 형평성을 감시하고 보험데이터의 계리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보험요율산출기구(IPRB: Insurance Premium Rating Bureau)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 기구는 모든 보험회사가 그들의 보험료 수준에 기초가 되는 적절한 데이터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 영업규제

태국 「보험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공식적인 모집채널로 인정하고 있다(「보험법」 제4장).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는 보험위원회(OIC)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면허는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보험법」 제68조).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그를 보험대리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향서와 보험위원회(OIC)가 마련한 연수과정 또는 보험위원회가 정한 절차나 프로그램에 따른 여타의 연수과정을 통과하였다는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보험회사 소속 보험대리점은 동일 보험업에 한하여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에는 신청인이 소속 보험회사의 동의서와 새로운 보험회사의 의견이 기록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확인서에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보험회사의 대리점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면허가 발급된 경우 등록관 또는 감독관은 관련 회사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보험법」 제70조).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면허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전에 갱신신청서를 등록관(registra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보험위원회(OIC)가 주최한 추가적인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을 통과하였거나 보험위원회(OIC)가 정한 과목(course)과 절차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보험위원회(OIC)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면허소지자가 면허증을 연속하여 2번 갱신하고 3번째로 갱신 신청을 할 경우 새로 발급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보험법」 제77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를 갖으며, 보험회사의 위임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와 금전 수령의 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종업원은 보험회사의 위임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다(「보험법」 제71조).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할 때마다 면허를 제시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와 보험회사의 종업원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때마다 보험회사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법」은 보험중개사에게 사무소의 보유 및 변

동사항 통지의무, 등록부·회계장부 등의 문서 작성 및 5년 이상 비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보험법」은 보험회사가 소속 대리점의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점의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5.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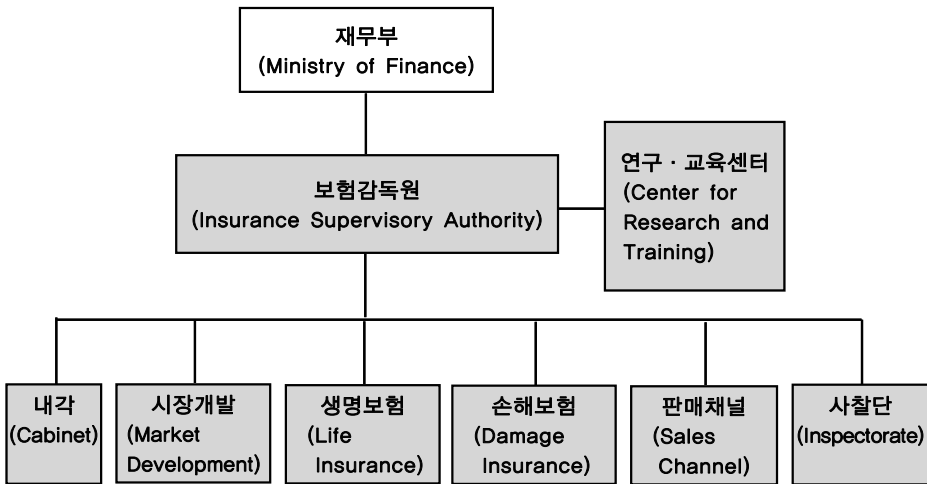
가. 규제 및 감독체계

1) 감독체계

보험감독기구인 베트남 재무부이며, 재무부가 「보험업법」과 관련 법안들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한 설립과 사업면허 허가의 권한을 가진다.¹⁴²⁾ 2003년 Decree No.77-2003-ND-CP에서 재무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면서 보험국(Insurance Department)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보험국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이 있으며, 각 부위원장은 생명보험팀, 손해보험팀, 법규제도팀을 총괄하는 방식이었다. 2008년 보험국이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이 되면서 보험회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조직의 구성도 〈그림 IV-2〉과 같이 바뀌게 되었다.

142) 재무부는 은행 및 비은행, 금융서비스의 감독을 책임지며, 모든 사업면허 신청을 검토한다(Decree No.100-CP, 1993).

〈그림 IV-2〉 보험감독원 구성



자료: Hoan, Pham Xuan(2010), 「Vietnamese Insurance Market」,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 OECD.

재무부는 보험업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보험영업, 보험중개업, 외국보험호사의 대표사무소나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에 대한 사업면허를 발행하고 취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¹⁴³⁾ 또한 보험 관련 법령, 조항, 보험료 및 수수료의 규모의 이행을 공포, 비준, 안내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재무요건을 만족하고 보험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보험시장 상황과 시장 예측에 대한 정보제공의 관리, 보험회사와 보험중개회사의 해외 영업에 대한 승인, 해외 보험회사의 대표사무소와 해외 보험중개회사의 영업 감독, 보험감독인원과 보험전문인력의 조직 및 훈련, 보험영업 검사, 민원 및 「보험업법」 위반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적연금은 베트남사회보장기구(The Vietnam Social Security Organization)가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 No.71-2006-QH 11)」에 따라 관리·감독하며, 현재 사적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재무부 보험감독원(Insurance Regulatory and Supervisory Administration)이 감독하며, 건강보험만을 감독하는 독립된 감독기관은 없다.

143) Decree No.45-2007-ND-CP, 5장.

2) 「보험업법」 개정 내용

2010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1년 4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보험업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⁴⁾ 첫째, 베트남의 WTO 양허안(Commitment)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보험회사나 해외 보험중개회사가 베트남 내에서 국경을 넘는 보험 영업(Cross-border Insurance Business)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경 간 보험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보험업법」과 타 법률 간의 조화를 위해 이전에 국유회사(Stated Owned), 주식회사(Shareholding), 상호회사, 합자회사(Joint Venture), 100% 외자회사 등으로 분류되던 보험회사 형태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상호회사 3개의 분류로 개정하였다. 또한 보험영업에 있어서의 협조와 경쟁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인 규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보험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면허 허가 조건에 재무역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나 베트남보험협회(Vietnam Association of Insurers)에서 보험교육 증명서를 보유해야 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전문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재무부는 설계사교육 내용을 규제할 것이며, 설계사의 교육과 전문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베트남보험협회와 협조할 것이다.

나. 면허(조건, 요구서류, 절차)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회사의 설립 및 영업과 관련 법령 및 규정들에는 「보험업법」(제58조~제69조)과 시행령 등이 있다.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형태는 크게 국영보험회사, 합자보험회사(Joint Stock Insurance Company), 상호보험단체(Mutual Support Insurance Organization), 합작투자보험회사(Joint Venture Insurance Enterprise), 100% 해

144) OECD(2010)를 참조한다.

외지분 보험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보험업법」 제59조).

일반적으로 사업면허는 생명보험 또는 모든 손해보험 종목에 대한 사업면허를 부여하나, 감동당국은 회사의 재무능력에 따라 일부 종목의 면허만을 부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 관련 면허에는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 양로보험(Endowment Insurance), 정기보험(Term Insurance), 종합보험(Combined Insurance), 연금보험(Annuity),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다른 보험 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손해보험 관련 면허에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및 상해보험(Human Accident Insurance), 재산보험 및 손해보험(Damage Insurance), 운수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화재 및 폭발보험, 선박해상보험 및 선주의 민사책임보험(Ship-owners' Civil Liability Insurance), 일반책임보험, 신용보험 및 재무위험보험(Financial Risks Insurance), 사업손해보험(Business Loss Insurance), 농업보험 그리고 정부에서 규정하는 다른 보험 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으나, 손해보험의 종목으로 간주되는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생명보험 부분에서 특약으로 판매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63조는 보험회사의 설립과 사업면허를 허가 받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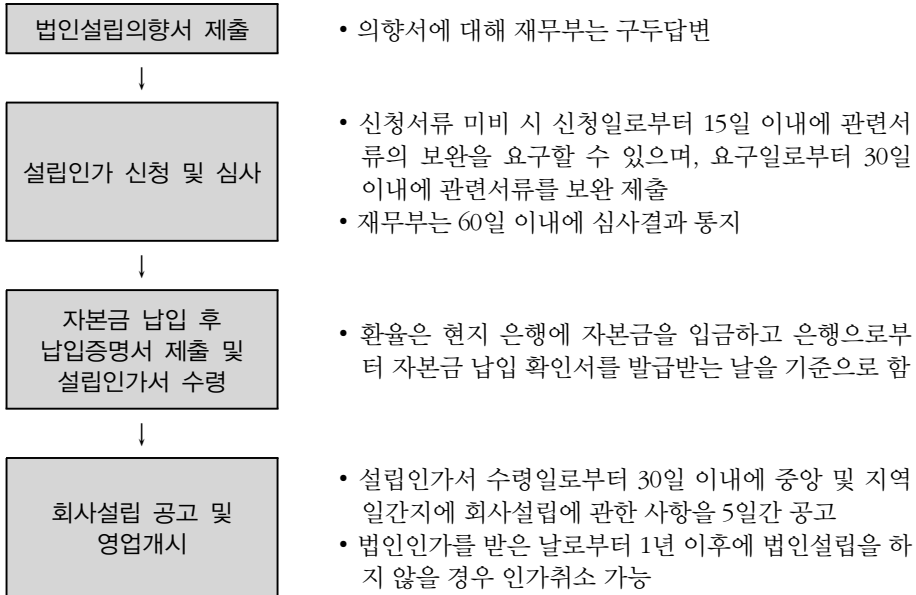
- 정부에서 규정하는 법적 자본요구량 이상의 법정납입자본(Contributed Legal Capital)을 가져야 한다.
- 「보험업법」 제64조에 따라 준비된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보험업법」과 관련법 조항들에 부합하는 기업 및 정관 형태를 가져야 한다.
- 회사의 관리 및 경영자들은 경영관리, 보험 영업에 대한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 서류는 「보험업법」 제6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서
- 기업정관 초안
- 최초 5년간 운영에 대한 계획: 준비금(Professional Reserves)을 산출하기 위한 추정방식, 재보험 프로그램, 자본투자, 사업 효율성, 보험회사의 지불능력, 사업체의 설립이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을 포함
- 회사의 관리자 및 경영진의 명단과 그들의 능력과 전문적 자질을 증명하는 이력서와 학위증
- 조달된 자본 수준과 자본 조달 방법: 조달자본의 10%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개인,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과 개인들과 관련된 재무적 상황 및 기타 정보
- 보험계약 조건, 보험료, 사업비 계획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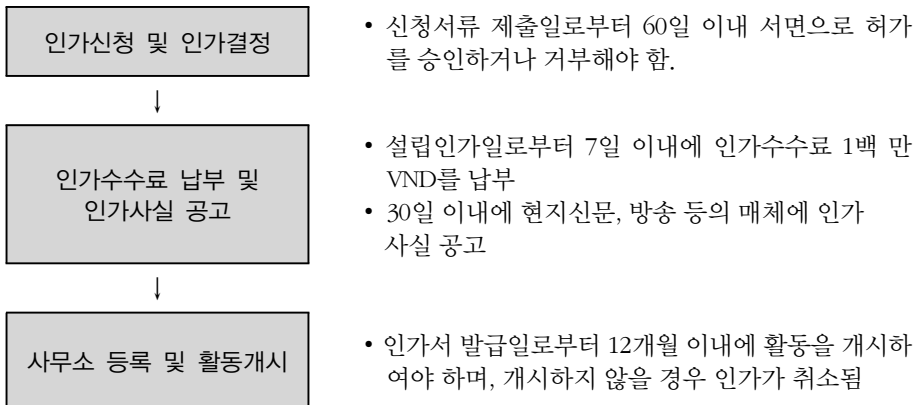
위와 같은 설립 및 사업면허 신청 서류를 재무부에 제출하면, 재무부는 60일 내에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가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회사나 보험 중개회사는 중앙신문(Central Newspaper)와 지역신문에 5회 연속으로 본사와 지점 위치, 법정대리인, 자본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면허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인가자본을 채워야 하며, 면허인가 후 12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림 IV-3〉 보험회사 설립인가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2009).

〈그림 IV-4〉 보험회사 사무소 설립인가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2009).

다. 재무건전성규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규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은 「보험업법」 제3편제4장, Decree No. 46-2007-ND-CP, Circular No. 156-2007-TT-BTC, Circular No. 86-2009-TT-BTC 등에서 다루고 있다.

1)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가 만족해야 하는 최소 법정자본 요구량은 다음과 같다.¹⁴⁵⁾

- 생명보험회사가 모든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6천 억 VND(USD 31.7m)이 필요함.
- 보험중개인의 경우 40억 VND(USD 211,640)이 필요하며, 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40억 VND의 자본이 필요함.
- Decree No. 46-2007-ND-CP 시행일 이전에 영업하고 있었던 회사 중 법안에서 규정하는 자본량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3년 이내에 새로운 수준으로 자본량을 늘려야 함.
- 지급여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법정자본량의 2%는 담보로서 재무부의 승인하에 지역은행에 예치하여야 함.
- 인가 자본은 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채워져야 함.
- 유니버설 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7천 억 VND, 변액보험상품 판매 시에는 8천 억 VND이 필요함.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에 대해서는 Circular No. 156-2007-TT-BTC(Section V)에서 규정하고 있다. 5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가진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준비금(Insurance Reserves)의 4%와 위험을 지닌 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의 0.1%의 합을 최소 지급여력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5년을 초과하는 계

145) Decree No. 46-2007-ND-CP, Circular No. 156-2007-TT-BTC.

약기간을 가진 생명보험의 경우 준비금의 4%와 위험을 지닌 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의 0.3%의 합을 최소 지급여력으로 정한다. 여기서 위험보험가입금액(the sums insured carry risks)이란 실효계약의 보험가입금액과 총준비금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준비금 요건은 Decree No.46-2007-ND-CP(제9조)과 Circular No.156-2007-TT-BTC (Section III 제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명보험회사들이 마련해야 하는 준비금에는 크게 계리적 준비금(Actuarial Reserve),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 지급준비금(Indemnity Reserve), 이익배당 준비금(Profit Distribution Reserve), 잔고 준비금(Balance Reserve) 등이 있다. 여기서 계리적 준비금은 보험가입금액 3%의 Zillmmer계수로 조정된 미래 부채의 현재가치와 미래에 징수할 수 있는 순보험료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계산된다.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은 손해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된 재보험 공제 후 총보유보험료의 50%로 계산하거나, 1/8법, 1/24법, 1/365법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잔고 준비금(Balance Reserve)은 사망률이나 준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의 주요한 증가에서 발생된 보험금(Insurance Proceeds) 지불을 충당하기 위한 비상적립금을 말한다.

유니버설보험(Universal Life) 계약에 요구되는 준비금은 Decision No. 96-2007-QD-BTC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급준비금과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험보험적립금(Risk Insurance Reserve), 유니버설보험 펀드(Universal Life Fund)에 대한 준비금, 투자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경우 회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준비금(Resilience Reserve)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서 위험보험적립금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 계산 방법과 현금유동성방법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Decision No.102-2007-QD-BTC에 따르면 투자연계변액보험(ULIP: Unit-linked Insurance) 계약에 요구되는 준비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험보험적립금이며, 위험적립금(Risk Insurance Reserve)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계산 방법과 현금

흐름(Cash Flow) 방법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된다. 둘째, 지급준비금, 셋째, 가치평가일의 계약자의 투자계좌(unit) 가치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합에서 계좌(unit)에 투자되지 않은 비용을 뺀 것으로 계산된 변액보험(unit-linked) 요소에 대한 준비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경우 회사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Resilience Reserve)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손해보험

Decree No.46-2007-ND-CP와 Circular No.156-2007-TT-BTC에서는 최소 법정 자본 요구량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항공보험, 석유보험, 인공위성보험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는 3천 억 VND(USD 15.9mn)
- 항공보험, 석유보험, 인공위험보험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1천 억 VND(USD 5.3mn)을 납부해야 함.
- 보험중개인의 경우에는 40억 VND(USD 211,640)을, 일반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취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의 40억 VND 자본이 필요함.
- 법정 최소자본량의 2%는 재무부의 승인하에 지역은행에 예치해야 함.
- 인가 자본은 인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채워져야 함.

지급여력에 대한 규정은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V)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최소 지급여력은 1) 계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총수입보험료의 25%와 2) 계산 시점에 총원수보험료와 재보험료 합 12.5% 중 큰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계산을 위해서는 유동 자산만이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 지급여력은 언제나 만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Circular No.86-2009-TT-BTC는 새로운 조항(Paragraph 4)을 추가하였다.

이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을 계산을 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 전문가는 재무부와 손해보험회사에 의해 등록된 자여야 하며, 자격에 대한 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준비금 요건은 Decree No.46-2007-ND-CP(Section II, 제8조)과 Circular No. 156-2007-TT-BTC(Section III, 제2조제4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미경과보험료 준비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은 크게 총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준비금으로 조성하는 방법, 1/8법, 1/24법 등에 따라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일별로 준비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금(Indemnity Reserve)을 보유해야 하며, 지급준비금 계산은 각 청구건(Claim File)에 따라 설정하는 방법과 발생하는 배상의 계수(the Coefficient of Arising Indemnity)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비상위험준비금(Large Loss Fluctuations Reserve)을 조성해야 한다.

라. 투자

자본의 투자에 대한 사항은 Decree No.46-2007-ND-CP와 Circular No. 156-2007-TT-BTC에 규정되어 있다. 최소법정자본금(최소요구자본량)은 재무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고 유동성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야 한다. 최소자본요구량이나 최소지급준비금 이외의 자본은 역외투자가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역외투자는 현 역외투자규제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투자 전에 재무부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와 준비금 이상의 잉여자본(Idle Capital from Insurance Reserves)을 이용한 투자 계정을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투자자본 원천은 크게 자기자본, 준비금 이상의 잉여자본, 법에 규정된 기타 법적 원천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회사는 법적자본요구량이나 최소지급여력 중 많은 양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일부를 법에 따라 역외투자할 수 있다(Decree No.46-2007-ND-CP 제12항).

준비금의 경우 기간 중 일반 지급에 필요한 금액¹⁴⁶⁾(the sums necessary for regular payments of claims in a period)은 베트남 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위 금액 이상의 잉여자본은 반드시 베트남 내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1) 국채, 보증사채, 신용기관 예금 등은 제한이 없으며, 2) 주식, 무보증사채,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기여 등은 최대 35%까지 가능하고, 3) 부동산과 대출에는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1) 국채, 보증사채, 신용기관 예금 등은 제한이 없으며, 2) 주식, 무보증사채, 다른 기업에 대한 자본기여 등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며, 3) 부동산과 대출에는 최대 40%까지 가능하다(Decree No.46-2007-ND-CP 제13항~제14항).

아울러 생명보험에 해당되는 투자연계형보험의 경우에는 연계된 펀드의 투자에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¹⁴⁷⁾

- 펀드(unit fund)는 동일한 발행인의 주식에 15% 이상 투자할 수 없다(국채 제외).
- 펀드는 동일한 발행인의 주식에 총자산가치의 20% 이상 투자할 수 없다(국채 제외).
- 펀드는 부동산에 총자산가치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 펀드는 한 기업집단의 회사들이나 상호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3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펀드(unit fund)의 투자구조는 투자자산가치의 등락과 펀드에 대한 법적 지불금 등에 의해 위의 제한에 최대 15%까지 변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변동을 발생시킨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는 3개월 내에 규정 준수를 위해 투자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

146) 본 금액은 총준비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147) 유니버설보험에 대한 구별된 투자규제는 없다.

마. 소비자보호제도

소비자는 민원을 직접 보험회사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재무부의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보험감독원이 관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분쟁 당사자들이 보험감독원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베트남에는 소비자 단체에 해당하는 VINASTAS(the Vietnam Standards and Consumers Association)이 존재하나, 「소비자보험법」이나 옴부즈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 영업규제

「보험업법」(No.24-2000-QH10) 제120조~제129조는 영업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Decree No.45-2007-ND-CP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 영업활동에 대한 검사에 대한 내용은 제12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업법」 제124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보험영업 관련 법률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설립 및 사업면허 없이 보험영업을 행하거나, 설립 및 사업면허 항목의 위배하에 보험영업을 행하는 것
- 국가결정기구들(Competent State Bodies)에 의한 설립 및 사업면허 허가, 검사, 조사 및 감독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 불법적인 경쟁
- 보험계약 체결의 강제
- 의무보험에 대한 규제 위반
- 보험소비자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위반
- 거짓 정보, 거짓 데이터 또는 거짓 보고를 제공하는 것

- 재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설립을 위한 법적 요구자본량, 준비금, 담보물, 추정, 준비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반한 상태에서 영업을 행하는 것
-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 위반
- 기타 보험영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보험업법」 조항들을 위반한 자들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 조사를 받게 되며,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남용하고 설립 및 사업면허 취득에 대한 규정, 정부의 보험영업에 대한 관리, 「보험법」의 다른 조항들을 위반한 자는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책임 조사를 받게 되며,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행정위반 처벌에 대한 처분을 당한 조직과 개인들은 결정에 대해 법에 따라 상부 정부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소송기간 중 행정위반에 대한 처분을 당한 조직이나 개인들은 행정위반처분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

사. 공시제도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XIII)에 따르면,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의 재무제표 항목 중 연차보고서(Form 1-CBTT)와 요약재무제표(Form 2-CBTT)는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본 항목들의 공시는 독립된 회계감사관의 의견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는 회사의 본부가 있는 지역의 지역신문과 중앙신문(Central Newspaper)에 3회 연속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무부에 공시원본이나 공증된 공시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발표된 정보의 내용을 수정하는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는 Circular No.156-2007-TT-BTC(Section XIII, 제1조~제3조)에서 명시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수정의 사유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사업계속 중의 감독

재무검사(Financial Inspection)는 각 회사당 1년에 1회 이하로 실시된다. 최대 검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상부기관(Competent Superior Bodies)의 결정하에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비정규 검사는 회사에 의한 위법 근거가 존재할 때 한하여 행해질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결정권자들(Competent Persons)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검사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검사를 마감하는 (concluding)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검사팀의 장은 기록의 내용과 검사에 대한 판단에 대해 책임진다. 불법적인 검사를 행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검사를 이용하여 회사의 활동을 괴롭히는 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징계되거나 형사처벌에 고려될 수 있다.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회사는 재무부에 매분기 및 매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매분기, 매년 통계보고(Statistics Report)와 전문보고서(Professional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¹⁴⁸⁾

자. 외국인보험회사 규제

외국 회사가 베트남 보험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크게 베트남 주주들과의 합작투자, 100% 해외자본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 대표사무소 등이

¹⁴⁸⁾ Circular No.156-2007-TT-BTC, Section IX.

있다. 외국 보험회사가 100% 해외소유 회사나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보험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자국 내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문에서의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으로 영업해왔어야 한다.
- 전연도 총자산이 적어도 2억 USD를 초과했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보험법」이나 다른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외국 보험중개회사가 100% 해외소유 회사나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보험중개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국 내에서 베트남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문에서의 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최소한 10년 동안 법적으로 영업해왔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행하여왔어야 한다.
- 최근 3년간 「보험중개법」이나 다른 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외국 보험회사나 보험중개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대표사무소를 여는 경우, 「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면허 지원에는 지원서, 자국 내 사업면허 사본, 최근 3년간의 회계 감사된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 사업계획서, 대표사무소의 대표로 추천된 자의 이름과 이력서를 제출하여 한다. 재무부는 지원서 제출 30일 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주게 된다.¹⁴⁹⁾

생명보험사 현지법인 인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¹⁵⁰⁾ 회사경영자는 재직 중에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선임계리사는 회사

149) Section III, Paragraph 3, Circular No.155-2007-TT-BTC.

의 경영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또한 선임계리사는 생명보험 부문 5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정식 직원이어야 한다. 아울러 선임계리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하는데,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계리사 자격증이 이에 해당된다.

차. 영업규제

「보험업법」 제19조는 보험모집 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을 시작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험약관(Conditions and Terms)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기밀로 해야 한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성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의 실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허위정보 유포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미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의 판매채널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상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agent)에 의해 판매되며, 보험중개인(broker)은 주로 단체생명보험상품이나 의료사업(Healthcare Business)을 담당하고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주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 채널이며, 보험중개인 채널을 통한 원수보험료의 비중도 17.1%(2008년 기준)로 주요한 채널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베트남 보험산업의 주 판매채널인 보험설계사 수는 2008년 말 기준으로 122,917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생명보험 설계사가 87,762명, 손해보험 설계사가 35,15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규정은 「보험업법」(제84조~제88조), Decree No.45-2007-ND-CP 제28조~제33조, Circular No.155-2007-TT-BTC(Section VII)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문서화된 설계사 동의서를 가져야 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50)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원센터(2009).

- 베트남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 중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
- 보험회사에서 마련한 보험교육과정이나 그러한 과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진 주체의 보험교육과정을 마친 자
- 보험회사나 보험회사들과 설계사 계약을 한 자

유니버설보험(Universal Life)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은행 또는 보험부문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은행 또는 보험 부문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전문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자
- 상품을 판매하기 전 유니버설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24시간 이상 받은 자

또한 변액보험(ULIP)을 취급하는 설계사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보험설계사로서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보험설계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전문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자
- 상품을 판매하기 전 변액보험에 대한 교육을 최소 45시간 이상 받은 자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

-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 보험회사, 보험유관기관, 또는 피보험회사의 직원이거나 임원인 경우
- 개별적인 설계사동의 서류를 가지고 다른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한 개 이상의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임명하며 설계사의 활동에 책임을 지며, 보험설계사에게 법에 따라 설계사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Circular No.86-2009-TC-BTC는 보험설계사 교육 기관, 설계사 자격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보험중개인은 주로 대형 기업성 보험,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해외투자 회사들에 대한 보험을 다루며, 2008년 말 기준으로 10개의 등록된 보험중개회사가 존재한다. 이 중 Aon Vietnam, Gras Savoye willis, Jardine Lloyd Thompson Ltd, Marsh 등 4개사는 외국계 보험중개회사이며, Viet Quoc, A Dong, Dai Viet, Pacific Joint Stock Insurance Broker, Cimeico, Sao Viet Broking 등 6개사는 국내 보험중개회사이다. 보험중개인의 임명 및 영업에 대한 규정은 「보험업법」(제89조~제93조), Decree No.45-2007-ND-CP, Circular No.155-2007-TT-BTC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고 수수료율은 손해보험의 경우 Circular No.86-2009-TT-BTC에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수수료 이외에 설계사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카. 공정거래법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회사는 협조(cooperation) 및 「보험업법」에 의한 합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엄하게 금지한다(「보험업법」 제10조).

- 보험회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해하는 보험내용, 운영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한 허위 정보나 광고를 제공하는 일
- 타 보험회사의 고용인이나 고객을 방해, 유도, 매수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쟁하는 일
- 불법적인 판촉을 하는 일, 그리고 이밖에 불법적인 경쟁을 행하는 것

타. 개인정보보호

베트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구체적 법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05년 통과된 「민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1조에서는 초상권을 제38조에서는 사생활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2005년 승인된 「전자상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과 2006년 승인된 「정보통신법(Law on Information Technology)」이 있다. 이 밖에도 Circular No.09-2008-TT-BCT 전자상거래 웹페이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파. 공제규제

「보험업법」(제70조~제73조)에서는 상호보험조직(Mutual Support Insurance Organizations)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호보험조직을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험영업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상호보험조직의 구성원은 소유주인 동시에 보험 구매자가 된다.

상호보험조직은 부채와 다른 재산상 의무에 대해 조직의 재산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 또한 상호보험조직의 설립, 조직, 운영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노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계리적인 데이터와 인문사회적인 정보가 많이 요구되는 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접근할 경우 요구되는 정보와 평가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 주요국에 비교해서 유·무형 자산 소유(Ownership)의 우위(advantage)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총 자산 규모가 생명보험의 경우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328,575백 만 USD, 손해보험의 경우 75,453백 만 USD인 것과 비교해 보면 인디아 생명보험이 2009년 215,919백 만 USD, 손해보험이 2007년 16,950백 만 USD(우리나라 58,025백 만 USD)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대상국의 자산 규모도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소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료 규모가 조사대상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유의 우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가 919.6억 USD이고, 그 다음이 인디아 650.8억 USD, 태국 104.6억 USD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보험밀도나 침투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소유의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우리나라 보험밀도가 1,890 USD이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321.8 USD, 태국 154.4 USD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 2009년 우리나라 보험 침투도가 10.4%이고, 그 다음이 인디아 5.2%, 말레이시아 4.4%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다. 매몰비용의 감내능력과 보험전문성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아세안 주요국에 진출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들 국가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 유·무형 자산의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V-1〉 아세안 주요국의 진입매력도 평가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진입매력도: 상 - 규모 급성장 - 높은 잠재성 - 국영보험 대비 MS확대 - 높은 외국기업 자산 규모 증가율 - 경쟁도 증가 추세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주춤 - 낮은 잠재성 - 국영보험 종목별 분리과정에서 마찰 - 경쟁도 증가 추세	- 다양한 문화와 언어 - 낮은 기업환경지수 등급 - 전문가. 통계부족 - 외국사 투자제한: 26%
말레이시아	- 진입매력도: 하 - 낮은 규모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강화	- 진입매력도: 중 - 낮은 성장세 - 낮은 잠재성장성 - 시장경쟁도 하강	- 다양한 인종과 종교 - 세제혜택 - 외국 투자제한 완화: 70% -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
인도네시아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성장성 - 높은 해외합작회사 자산규모 증가율 - 해외합작회사가 주도	- 진입매력도: 하 - 규모성장세 하락 - 낮은 잠재성장성 - 생명보험보다 자산비중 감소 - 국내회사가 주도	- 외국기업의 생명보험에 대한 활발한 투자 - 외국기업은 보험사와 합작형태만 가능 - 외국기업 지분한도: 80%
태국	- 진입매력도: 상 - 미국, 일본의 투자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9% - 활발한 상품개발 - 보험료 세제혜택 - 보험마스터플랜추진	- 진입매력도: 상 - 경제성장 - 신상품 개발 활발 - 자동차 산업 발전	- 해외기업유치에 적극적 - 해외기업의 지분소유한도 25%에서 49%로 확대 - 방카슈랑스 확대
베트남	- 진입매력도: 중 - 규모성장세 변동 심함 - 생명보험 저변 확대 - 경제에서의 비중 감소	- 진입매력도: 상 - 높은 규모성장세 - 높은 잠재력	- 환경변화에 민감한 사정 - 비합작 외국기업 진입가능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소유의 우위가 있더라도 해당국가가 직접투자의 매력에 없다면 진출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조사대상국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잠재성장성을 평가하여 진입 매력도를 평가해 보면 국가별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진출의 매력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1〉 참조).

보험산업은 수출의 형태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의해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를 확보하면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따라서 직접투자 방식에 있어서 지점 또는 자회사 형식의 직접투자에 의한 직영(in-house) 방식이 적절한지, 현지법인 인수합병(cross-border M&A) 혹은 합작투자 방식이 적절한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각국의 진입규제 현황을 조사하여 어느 형태의 직접투자 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출대상국 내의 외국보험회사의 특징과 투자형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직접투자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가마다 외국회사의 자국투자에 대해서 각각 다른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인디아의 경우 외국사의 단독 투자는 가능하지가 않고 합작투자만이 가능하며 투자지분의 소유한도도 26%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의 경우에도 합작투자만이 가능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한도를 규제하고 있었다.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는 투자의 형태에 제한이 없었고 투자지분한도를 규제하고 있지 않았다(〈표 V-2〉 참조).

그리고 보험영업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제 내용을 조사하였다. 각국은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었고,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RBC(Risk-based Capital)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 중에 있었다. 또한 세제혜택을 준다든가, 투자지분한도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통해 해외기업의 자국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 문화와 역사가 다르다는 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각 국가의 컨트리 리스크가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 V-2〉 아세안 주요국의 진입 현황

지역/국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요 특징
인디아	• 1개의 국영생명보험 • 22개의 회사 중 20개가 해외합작회사 • 인디아 회사는 은행, 자동차, 자산관리, 상호펀드, 증권업, 철강, 화학, 통신 등 다양한 업종 회사가 보험에 진출 • 은행의 보험영업조건이 까다로움	• 6개의 국영손해보험사 • 18개의 회사 중 17개가 해외합작회사 • 인디아의 다양한 업종회사가 보험산업에 진출	• 1999년 민영보험사 허용 • 모두 주식회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외국기업의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투자한도 완화를 추진 중
말레이시아	• 8개 외국사 • 미쓰이, 프루덴셜, AIG, AmLife 등 진출	• 15개 외국사 • 일본계회사가 3개사 • 미국계회사가 3개사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 해외회사의 투자제한 완화에 따라 진입 증가 추세 • 재보험사도 해외합작회사 형태로 진입 • Swiss Re는 재타카폴 진입
인도네시아	• 45개사 중 18개사가 해외합작사 • 해외합작사가 50.1% 시장점유	• 5개사 • 일본계가 2개사	• 글로벌 보험사가 진출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태국	• 24개사 중 13개가 해외합작사 • 10위 내 해외합작사가 7개	• 5개 해외보험사 지점 • 13개의 해외합작회사 • 25개 해외기업 간접 참여	• 해외기업유치에 적극적 • 외국기업 합작투자만이 가능
베트남	• 삼성생명, 대한생명(현지법인) • 해외합작사가 우세 • 100% 해외지분사가 9개사	• 삼성화재(현지법인), LG, 현대해상이 진출 • 내국사가 우세	• 민영화 추세 • 100% 해외기업의 투자허용 • 서울보증보험이 진출

2. 향후 과제

아세안 주요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규제, 정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지만,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성문화된 규제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산업은 상품개발에 필요한 계리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장개척의 선결 조건이다.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계리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합작의 형태로 진입하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내국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다. 데이터의 확보 방안 및 축적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리스크의 관리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세안 리스크에는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 사업 리스크(Business Risk), 구조적 리스크(structural Risk) 등이 있을 수 있다.

컨트리 리스크는 진출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리스크이다. 외화부족 상태에 빠진 진출국 정부가 국외송금을 제한하거나 비정상적인 정권교체로 투자자산을 강제 국유화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 리스크는 진출 이후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보험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의 축소 또는 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리스크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변경에 대한 정보부족 및 대응지연 등으로 사업소 폐쇄를 요구당할 리스크 등을 말한다.

구조적 리스크는 외부 경제, 사회로부터의 충격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리스크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선진국이 투자를 축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아세안 국가는 급속한 외화의 유출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충격이 크게 나타날 리스크이다. 이러한 아세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09), 『베트남 인허가 진출 업무편람』, 금융지원센터.
- 복득규 외 6인(2010), 『신흥국 소비시장의 부상과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Buch, Claudia M. and Alexander Lipponer(2004), “FDI vs Cross-border Financial Services: The Globalization of German Banks”, Discussion Paper, Deutsche Bundesbank.
- Dunning, John H.,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N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in Ohlin, B., Hesselborn, P-O., Wijkman, P. M., eds, The International Al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London, Macmillan.
- Goldberg, Linda(2004), “Financial Sect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ost Countries: New and Old Lessons”, Staff Report no.183,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Helpman, E., Melitz, M. J. and Yeaple, S. R.(2004), “Export versus FDI with heterogeneous firm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 Vol. 94.
- Neary, J. Peter, “Cross-border Mergers as Instruments of Comparative Advantage”, Review of Economic Studies, 74(4).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인디아]

- Axco(2010), Global Statistics.
- Government Notification 8/2009-ST.
- India(1983), 「Insurance Act 1983」 of India.

- _____(2002. 10. 16), Further requirements were provided under the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Amendment) Regulations 2002 of 16 October 2002.
- _____(2008), 「Unorganized Sector Workers Social Security Bill 2008」 of India.
- _____(2010),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 IRDA(1999),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1999」.
- _____(2008. 8. 25), Circular No.011/IRDA/Brok-Comm/Aug-08 of 25 August 2008.
- _____(2008. 12. 17), Circular No.25/IRDA/ACTL/RSM/2008-09 of 17 December 2008.
- _____(2009), Circular No,IRDA/TAC/ORDER/Admn/042/10/2009.
- _____(2009. 1. 1), Circular No.029/IRDA/ACTL/RSM/2008-09 of 1 January 2009.
- _____(2009. 7. 22), Circular No.20/IRDA/Actl/ULIP/09-10 of 22 July 2009.
- _____(2009. 8. 20), Circular No.29/IRDA/Actl/ULIPs/2009-10 of 20 August 2009.
- _____(2009. 9. 2), Circular No.31/IRDA/CA/CIR/Sep-09 of 2 September 2009.
- _____(2010), Circular No,IRDA/LIFE/CIR/129/08/2010.
- _____(2010. 1. 28), Circular No,IRDA/F&I/CIR/F&A/012/01/2010 of 28 January 2010.
- _____(2010. 1. 29), Circular No,IRDA/F&I/CIR/F&A/014/01/2010 of 29 January 2010.
- _____(2010. 3. 2), Circular No,IRDA/CAGTS/CIR/LCE/039/03/2010 of 2 March 2010.
- _____(2010. 3. 10), Circular No,IRDA/CAGTS/CIR/LCE/48/03/2010 of 10 March 2010.
- _____(2010. 5. 3), Circular No,IRDA/ACTL/CIR/ULIP/071/05/2010 of 3 May 2010.
- _____(2010. 6. 7), Circular IRDA/CAGTS/CIR/LCE/092/06/2010 of 7 June 2010.
- _____(2010. 6. 28), Circular IRDA/ACT/CIR/ULIP/102/06/2010 of 28 June 2010.
- _____(2010. 8. 25), Circular IRDA/CAD/CIR/AGN/137/08/2010 of 25 August 2010.
-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Assets, Liabilities, and Solvency Margin of Insurers) Regulations 2000.
- _____(Actuarial Report and Abstract) Regulations 2000.

_____(Investment) Regulations
2000.

_____(Licensing of Insurance
Agents) Regulations 2000.

_____(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or's Report of Insurance Companies) Regulations.

_____(Manner of Receipt of
Premium) Regulations 2002.

_____(Protection of policyholder's
Interests) Regulations 2002.

_____(Investment)(Fourth Amendment)
Regulations 2008 of 30 July 2008.

_____(Insurance Advertisements
and Disclosure) (Amendment) Regulations 2010.

_____(Treatment of Discontinued
Linked Insurance Policies) Regulations 2010 of 1 July 2010.

Order Ref 56/IRDA/Legal/ULIP-MF

Resolution F No, 1(6)2007-PR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IRDA(<http://www.irda.gov.in>)

IRDA India(<http://www.irdaindia.org/regulations.htm>)

PFRDA(<http://pfrda.org.in>)

[말레이시아]

Axco(2010), 「Malaysia—Insurance Market Overview」, Axco Insurance Market Overview.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Lim Hong Eng, Norfaidah Daud, Julie Yeap Siew Kuan and Marliza Mohamed(2008. 2. 27), 「Technical Department」, Inland Revenue Board of Malaysia.

Bank Negara Malaysia(<http://www.bnm.gov.my>)

Labuan Financial Services Authority(<http://www.labuanfsa.gov.my>)

MIFC(<http://www.mifc.com>)

[인도네시아]

손기태 · 김민희(2010), 「인도네시아 최근 5년의 경제성과와 시사점」, 『KIEP』 Vol.3, No.26.

손기태 · 백유진 · 김민희(2010),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KIEP 연구자료』 10-6.

손민선(1997), 「떠오르는 거대시장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연구보고서』 98-09, LG경제연구원.

AXCO(2010. 7), Indonesia - Life & Benefits.

_____(2010. 7), Indonesia - Non-Life(P&C).

BAFEPAM-LK(2009. 12), 「Laporan Tahunan 2009 Annual Report」, CMFSA.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World Bank(2010. 6), 「Indonesia Economic Monitor」(<http://www-wds.worldbank.org>).

동남아시아 연합(<http://www.aseansec.org>)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www.indonesiaseoul.org>)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청(<http://www.bapepam.go.id>)

[태국]

예금보험공사(2009. 4), 『태국 예금보험원(DPA of Thailand) 지원을 위한 국제 세미나 참석 출장보고서』.

이재호 · 정재완 · 이성훈(2008. 12. 30), 「태국의 주요산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유망국가 산업연구』 08-01.

정재완(2008. 11), 「태국 금융 및 보험산업 현황과 전망」, 『생명보험』 vol.357.

증권업협회(2008. 12), 『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현황』.

태국예금보험기구(2009), 「태국경제현황」, 『예금보호기구 연차보고서』.

함준호 · 신인석(1998), 「태국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정책함의」,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6.

高安健一(2008. 4), 「タイにおける金融改革の評価と政策課題」, 『アジア研究』 Vol.54(2).

今泉 慎也(2007a), 「第9章 タイ」, 『金融の安定と金融部門の監督 - 過去10年の教養と今後の對應』, 日本 金融庁(<http://www.fsa.go.jp>), (2007. 7. 8).

今泉 慎也(2007b), 「第13章 タイ」, 『アジア金融セクターの規制緩和に関する法律制度研究』, 日本 金融庁(<http://www.fsa.go.jp>), (2007. 7. 11).

Allens Arthur Robinson(2003. 12), “‘Thai Insurance Market’, Focus: Insurance & Reinsurance Asia”,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

_____ (2008), 「FOCUS: Thailand-Insurance」,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ltd(<http://www.aar.com.au>).

Asia Insurance Review(2010. 8), Thailand: Insurance Sector to Show Healthy Growth(<http://www.asiainsurancereview.com>).

AXCO(2010. tn), Thailand - Non-Life(P&C), (2010. 6).

_____ (2010. tl), Thailand - Life & Benefits, (2010. 8).

- Bank of Thailand(2010), Thailand's Financial Sector Master Plan Handbook(<http://www.bot.or.th>).
- Bao Ling Chan·Tim Lawson(2005. 4. 21), Thai Non-Life Insurance: Growth, Consolidation and Volatility, Swiss Re Group(<http://www.thaire.co.th>).
- eStandardsForum(2009. 6), Insurance Core Principles: Thailand, Financial Standards Report(<http://www.estandardsforum.org>).
- Fiscal Policy Office(2010. 4. 29), FPO Monthly Report, Bank of Thailand.
- PWC(2009. 1. 29), Thailand: Enhancing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Risk Based Capital - Conceptual Framework Paper.
-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 World Bank(2010. 6), Thailand Economic Monitor(<http://www-wds.worldbank.org>).
- 동남아시아 연합(<http://www.aseansec.org>)
-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 태국 대한민국대사관(<http://tha.mofat.go.kr>)
- 태국법(<http://www.thailaws.com>)
- 태국 법률포럼(<http://www.thailawforum.com>)
- 태국 보험요율산출기구(<http://www.iprbthai.org>)
- 태국 보험위원회(<http://www.oic.or.th>)
- 태국 생명보험협회(<http://www.tlaa.org>)
- 태국 손해보험협회(<http://www.thaigia.com>)
- 태국 예금보호기구(<http://www.dpa.or.th>)
- 태국 은행(<http://www.bot.or.th>)
- 태국 재무부(<http://www2.mof.go.th>)
- 태국 정부(<http://www.eppo.go.th>)
- 태국 주한 대사관(<http://www.thaiembassy.or.kr>)
- 한국태국학회(<http://www.k-thaistudies.or.kr>)
- 한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thai.com>)

[베트남]

금융감독원(2009), 『베트남 진출 인허가 업무편람』, 금융중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0. 4. 28), 「FY'09년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_____ (2010. 6. 9), 「FY'09년 손보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현황」.

포보스(<http://forbes.com>)(2010. 5. 5), 「Research and Markets: Vietnam Insurance Report Q2 2010」.

Government,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07), Decree on Financial Regime for Insurers and Insurance Brokers, No. 46-2007-ND-CP.

_____ (2007), Decree Providing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Law on Insurance Business, No. 45-2007-ND-CP.

Hoan, Pham Xuan(2010), 「Vietnamese Insurance Market」,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Committee, OECD.

Swiss Re(2010), 「World Insurance in 2009」, sigma, No.2/2010.

The Ministry of Financ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2007), Circular on Financial Regime Applicable to Insurers and Insurance Brokers, No. 156-2007-TT-BTC.

_____ (2007), Decision on Issuing Regulations on Underwriting Unit Linked Insurance, No. 102-2007-QD-BTC.

The National Assembly,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Law on Insurance Business, No.24-2000-QH10, 2000.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창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 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 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 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 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 10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중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 6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 5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 7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 8

■ 영문발간물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1.9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로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만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조 용 운

The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ywcho@kiri.or.kr)

변 해 원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hw.byun@kiri.or.kr)

이 승 준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sjlee@kiri.or.kr)

김 경 환

숭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khkim@kiri.or.kr)

오 병 국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bkfive@kiri.or.kr)

조사보고서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발행일 2011년 11월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 판 및
인 쇄 KM 고려문화사

ISBN 978-89-5710-140-7

정가 10,000원